

〈제 2017 - 05〉

가정폭력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



2017년 경기남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통합 워크숍 자료집



주관

 (사)씨울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기남부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사단법인
시흥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경기남부 폭력예방교육 컨소시엄기관

주최

 여성가족부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GENDER
EQUALITY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2017년 경기남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제3·4차 전문강사 통합 워크숍

- 일시 : 2017. 5. 16.(화) 오후 1시~오후 5시 / 2017. 6. 9.(금) 오후 1시~오후 5시
- 대상 : 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경기남부지역 전문강사 및 실무자
 -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가정·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 21개 시·군 가정·성폭력 상담소 실무자
 -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일반강사
- 장소 :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대회의실(3층)
- 주관 : (사)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기남부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사)시흥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주최 : 여성가족부, 경기도, 한국양성평등진흥원 폭력예방교육 중앙지원기관

• 프로그램 내용

5월 16일(화)	프로그램 내용	소속	비고
12:50~ 13:00	접수 및 등록		
13:00~ 15:00	지역사회 여성 안전정책의 쟁점과 사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 선임연구위원
15:00~ 17:00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
17:00	폐회		
6월 9일(금)	프로그램 내용	소속	비고
12:50~ 13:00	접수 및 등록		
13:00~ 15:00	인권의 이해와 인권달성의 조건	성공회대학교	조효제 교수
15:00~ 17:00			
17:00	폐회		

※ 프로그램 내용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contents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개요 및 운영방침	07
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적보고 및 추진계획	25
심고은 사업담당 경기남부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언론홍보 보도자료	31
박미정 사업담당 경기남부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한국 이주여성 인권과 현황	41
허오영숙 상임대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이렇게 합시다	63
송인자 부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역사회 여성 안전정책의 쟁점과 사례	93
강은영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	117
배복주 대표 장애여성공감	
인권의 이해와 인권달성의 조건	131
조효제 교수 성공회대학교	
부록	155
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각종 양식	
2017년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추천콘텐츠 리스트(총 216종)	
폭력예방교육 컨소시엄·협력기관 현황	
경기지역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일반강사 현황	
전국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현황	

가정폭력·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

2017년 경기남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통합 워크숍 자료집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개요 및 운영방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I.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개요

1 | 사업목적

-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국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2 | 법적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은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은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3 | 추진경과

- '13년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 전담기관을 설치·운영
- '14년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법적근거 신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15.12.1. 개정)
- '15년 지역 교육지원기관의 전국 확대 및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전환
 - '13년 권역별 10개 기관 → '17개 시·도별 18개 기관
- '16년 도서벽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시범운영 실시

4 | 사업규모 및 지원예산

- 사업기간 : 2013년도~
- 사업규모 :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 총 19개 기관('16.12월 기준)
 - 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1), 지역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18)
 - * 이하 "중앙 교육지원기관", ** 이하 "지역 교육지원기관"
- 사업 예산 : 총 2,197,000천원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시도) : 1,440,0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 17개 시도(18개 기관) 지역 교육지원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 경비, 강사지원비
 -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교육 운영 사업 : 152,000천원(국비 100%)
 - 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 605,000천원(국비 100%)
- 유형별 예산지원
 - 유형별 시도 구분(도서벽지 3개, 일반형 4개)

구분	유형	해당 시도
도서벽지	a	강원도
	b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c	경기도(북부, 남부), 전라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성폭력·가정폭력	가	서울특별시, 경기도(남부)
	나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구분	유형	해당 시도
	다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북부),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라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경기도는 관할 범위 등을 고려 2개 권역 구분(가급 1, 다급 1)

- 등급별 예산 지원액(단위 : 개소, 천원, 회)

구분	유형	교육목표횟수		국비 (A)	지방비 (B)	총 지원액 (A+B)
		신청형	지정형			
도서벽지 (자치단체 경상보조)	a (1)	-	70	12,956	12,956	25,912
	b (3)	-	50	9,266	9,266	18,532
	c (6)	-	15	2,809	2,809	5,618
일반/ 성폭력 (자치단체 경상보조)	가 (2)	320	100	63,140	63,140	126,280
	나 (6)	230	60	42,730	42,730	85,460
	다 (8)	130	50	29,660	29,660	59,320
	라 (2)	70	20	19,380	19,380	38,760
일반/ 가정폭력 (민간경상 보조)	가(2)	50	-	11,000	-	11,000
	나(3)	40	-	8,800	-	8,800
	다(7)	35	-	7,700	-	7,700
	라(2)	30~25	-	6,600~5,500	-	6,600~5,500
	a·b(4)*	20	-	3,300	-	3,300

* 도서벽지, 가정폭력예방교육 사업량은 하반기 추가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 추가예산 배정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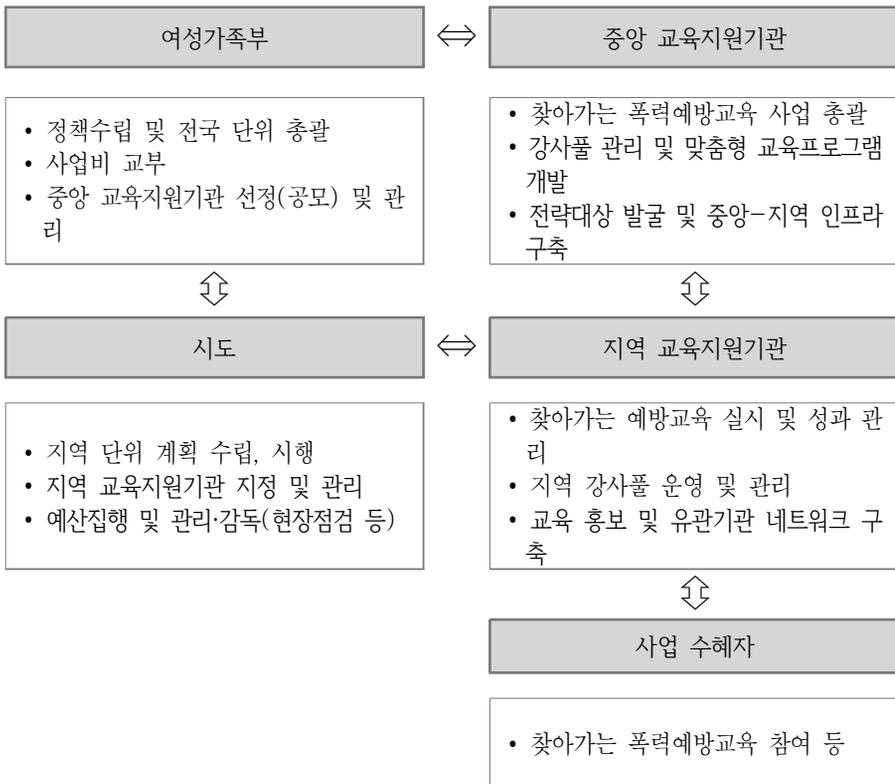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서벽지 포함) : 여성가족부 → 지자체 → 지역 교육지원기관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교육 : 여성가족부 → 중앙 교육지원기관 → 지역 교육지원기관

5 성과목표

성과지표	내 용	'17년 목표치
교육실적	교육 횟수	(성 폭 력) 4,530회 이상 (가정폭력) 600회 이상
만족도조사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측정	(교육만족도) 86.2점 이상
교육결과	교육수료 후 인식개선 정도 측정	(인식개선 점수) 84점 이상

6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추진체계도





나. 사업 주체별 역할

○ 여성가족부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
-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관련 법규 제정 및 정비
-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의 관리 감독 및 지도
- 사업비의 교부 및 정산, 평가

○ 지방자치단체(시·도)

- 지역 단위 계획 수립 자체 지원 계획 수립
- 여성가족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단위 자체 기본계획* 수립
- 지역 교육지원기관 공모 및 선정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의 협력 강화(우선 교육지역 지정 등)
- 예산 집행 등 사업수행기관 관리·감독(현장점검 및 결과보고)

○ 중앙 교육지원기관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총괄 및 성과관리
- 맞춤형 폭력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 다양한 직군의 강사 역량강화 지원 및 매뉴얼 개발
- 사업성과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 수시 환류 기반 구축
- 사업 관계자(시·도, 지역지원기관 등)간 정보 교류의 구심점
- 전국 단위 효율적 폭력예방교육 확대 방안 마련

○ 지역 교육지원기관

- 찾아가는 예방교육 운영 및 성과 관리
- 유형별 교육 목표에 따른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 지역별 강사풀 구축·운영 및 워크숍 실시
- 교육 모니터링 및 교육만족도 조사 실시 등 사업 성과관리
- 폭력예방교육 지역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II.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1 |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지정

가. 지정절차

- ‘중앙 교육지원기관’의 사업수행기관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2에 따라 위탁자 선정
 - 최종 선정된 ‘중앙 교육지원기관’의 사업수행기관은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교육(민간 경상보조)’의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됨
 - ※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과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교육’ 사업은 동일한 사업임
- 시·도에서는 ‘지역 교육지원기관’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① 공개모집 또는 ② 여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등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지정 기간은 사업의 연속성 등 고려하여 2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음
 - ※ ‘사업 운영 및 보조금 사용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 시·도의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지정대상

-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운영 등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해 허가받거나 여성·아동 권익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운영 중인 단체 및 기관
 - ※ ‘권소사업 구성(공동 수급) 사업 수행 가능
 - ※ ‘부정수급, 정부의 유사사업 수행 시 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는 기관은 신청 불가



다. 심사방법 및 기준

- 시·도에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되, 서류 심사, 실사 및 프리젠테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 ※ 기존 협의체 활용 가능
- 사업 수행 능력,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 수행 방법 및 내용의 합리성, 지역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
 - 여성폭력예방교육 관련 사업수행경력
 - 여성폭력예방교육 관련 전문인력 확보 수준
 - 운영계획서의 충실성, 지역연계성 등 실행가능성 종합평가
 - ※ 평가 점수 60점 미만인 기관은 지원 선정에서 제외

라. 지정취소 기준

-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함
 - 필요시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의(기관 의견 청취 포함)를 거쳐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지정 취소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력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유용하여 사업비가 환수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및 위탁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지정·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가. 명칭 및 현판 설치, 대표번호 사용

- 명칭은 “여성가족부 지정 또는 지원 ○○(중앙 및 시·도)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으로 함
 - 여성가족부 지정 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 여성가족부 지원 ○○(시·도)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 각 기관에서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전국 대표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현판, 현수막, 책자 등 홍보물 제작 시에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명칭을 반드시 포함하여 사용하여야 함
 - ※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대표번호 및 공용 CI는 중앙 교육지원기관에서 추후 통보
- 중앙 및 지역 교육지원기관은 이용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현판 설치(운영비로 제작 가능)
 - ※ 현판 설치 시 중앙 교육지원기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함

나. 운영인력 관리

- 기관장(총괄책임자) 1인 및 교육관리 전담인력* 1인이 필수 참여하여야 하며, 이 중 1인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사업수행기관 대표자 및 전담인력 자격기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여성학, 사회학, 상담심리학, 아동학, 법학 등 관련 분야 전공 또는 관련 자격증·수료증(사회복지사, 성폭력전문상담원,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상담사 등)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관련 기관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담인력은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와 겸임할 수 없음. 다만,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기관장과 그 밖의 인력은 겸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장은 직원 간 업무가 균형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관장, 전담인력 등 내부 직원에 의한 강의는 ‘시도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량의 10% 이내에서 가능함. 단, 전담인력은 업무시간(9~18시) 중에는 내부 강사로 활동할 수 없으며, 기관장 등은 사업 관리 및 자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 강사로 활동 가능함

다. 사업 관리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작성·제출

- 각 지역 교육지원기관장은 전년도 사업 실적 및 당해 연도 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 교육지원기관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18.1.10일까지)

※ '지역 교육지원기관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중앙 교육지원기관의 컨설팅을 적극 활용

- 중앙 교육지원기관장은 각 지역 교육지원기관의 자료를 종합 평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매년 1월말까지 제출

○ 기관장은 교육지원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2년간 비치해야 함.

단 여성가족부 지원 사업비 예산 집행(재무 회계장부 등)과 관련한 사항은 5년간 보존

관리·사업에 관한 장부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① 종사자 관리 대장 (채용 및 자격 관련 서류 등)	① 총계정원장 및 사업별 수입·지출부
② 문서철 (보고서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문서철)	②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③ 문서접수·발송대장	③ 예산서 및 결산서
④ 사업운영 관련 문서 (교육실시대장, 강의안 등)	④ 비품수불대장, 비품관리대장(필요시)
⑤ 사업 착수·중간·결과보고서	⑤ 각종 증빙서류 및 그밖에 필요한 서류

라. 변경사항 등의 보고

○ 기관장은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제출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후 승인 받아야 함

- 지역 기관장은 중앙기관장 및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교육지원기관의 변경된 자료를 검토·승인 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중앙 기관장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제출 후 승인받아야 함

○ 기관장은 인력* 및 시설, 소재지 등에 변동사항 발생 시 시도지사 및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인력 변경 시에는 새로 채용하는 인력 관련 경력사항 등을 공문으로 제출



Ⅲ. 세부 사업 운영

1 기본방향

- 도서벽지, 읍면동 연계 등 지역사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 성 평등 관점에서의 맞춤형 예방교육으로 국민의 안전체감도 향상
 - 지역사회 내 교수, 전문가 등 다양한 직군의 강사풀 확충
 - 강사 워크숍, 교육 모니터링 확대 등으로 강사 질 관리 강화
- ※ ('17년 목표) 총 5,130회 (성폭력예방교육 4,530회, 가정폭력예방교육 600회)

< 2017년 시도별 폭력예방교육 사업목표 >*

구 분	성폭력 예방교육 소 계(A)	신청형 (일반)	지정형		가정폭력 예방교육 소 계(B)	2017년 목표횟수 (A+B)
			도서벽지	읍면동**		
1 서울시 (가)	420	320		100	50	470
2 부산시 (나)	290	230		60	40	330
3 대구시 (나)	290	230		60	40	330
4 인천시 (나b)	340	230	50	60	20	360
5 광주시 (다)	180	130		50	35	215
6 대전시 (다)	180	130		50	35	215
7 울산시 (다)	180	130		50	35	215
8 경기남부 (가c)	435	320	15	100	50	485
9 경기북부 (다c)	195	130	15	50	35	230
10 강원도 (다a)	250	130	70	50	20	270
11 충청북도 (나c)	305	230	15	60	40	345
12 충청남도 (다c)	195	130	15	50	35	230
13 전라북도 (다c)	195	130	15	50	35	230
14 전라남도 (나b)	340	230	50	60	20	360
15 경상북도 (나b)	340	230	50	60	20	360
16 경상남도 (다c)	195	130	15	50	35	230
17 제주도 (라)	90	70		20	25	115
18 세종시 (라)	90	70		20	30	120
도서벽지 추가**			20			20
총 계	4,510	3,200	330	1,000	600	5,130

*** '읍면동' 지정의 경우, 필요시 '안전취약지역 정보' 등을 활용(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협력)
 * 세부내용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도서벽지 추가 20회는 지역의 교육수요에 따라 배정



2 | 교육대상

가. 교육대상 선정

○ 폭력예방교육 비의무 일반국민(신청 + 지정) 등

- 시·도에서는 도서벽지·산간오지, 읍면동 등 우선 교육 필요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

신 청		지 정	
비의무 일반국민	의무대상 기관	도서벽지(330회)	읍면동(600곳, 120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반장, 학부모 • 소상공인, 민간사업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OT 연계 등) • 군대 (핵심계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벽지, 산간오지 (9개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교육지역 지정 - 반기별 1회 이상 (이동여성안전지역연대 협력 등)

○ 폭력 예방 파수꾼 역할 수행이 기대되는 지역 성원 등 전략 대상 발굴

※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은 원칙적으로 제외. 단, 전략집단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

- * 성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각 급 학교,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학생, 보육아동 및 원생 포함)
- * 가정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각 급 학교,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된 사람(학생 포함)

나. 전략집단 및 특별지원 대상

○ 예방교육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접근성 제고 및 교육 활성화가 필요한 대상

※ 특별 교육의 경우 중앙 교육지원기관에서 별도 교육계획 수립 후 지원

군인 (핵심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각 1시간, 총 2시간) 연속 강의 • (규모) 50명 미만 • (강사) 별도 강사풀 활용 • (내용) 영관급 이상 군 지휘관 대상 소규모 토의식 성폭력예방교육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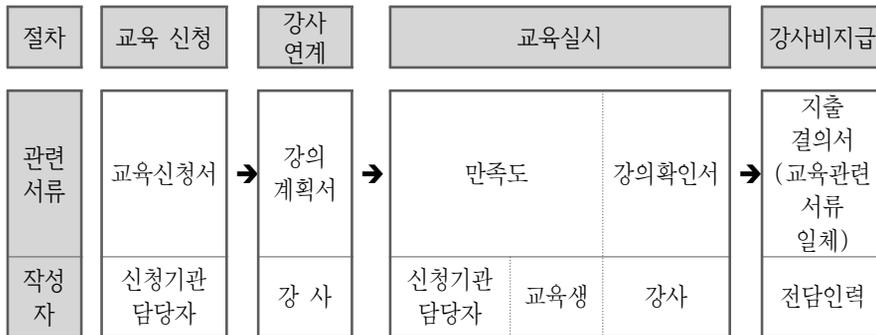
고3 예비사회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성) 입시 및 취업 등으로 교육기회가 제한적이며, 예비사회인으로서 폭력예방에 대한 맞춤형 교육 필요 • (내용) 청소년의 인지 발달 정도에 맞춰,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된 성문화 의식 개선에 초점을 두고 교육
학교 밖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성) 고등교육과정에 소속되지 않아 교육 접근성이 낮은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통합적 예방 교육 지원 • (규모) 20명 미만 • (내용) 성 인지적 관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등을 통합하여 실시

○ 다회차 교육이 필요한 대상 (최대 3회기)

장애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 교육대상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 (규모) 20명 미만 / 소규모 다회차 교육(1~3회기) ※ 다회차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회차 교육의 필요성, 교육 내용, 시간, 강사활동 등의 교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실시(중앙 교육지원기관 승인)
-------	--

3 | 교육 운영

가. 교육 운영 절차



- 교육 신청이 들어오면 대상 및 지역을 고려하여 강사 연계
- 강사에게 강의계획서 작성 및 강의안 제출 독려
 - 강의안 제출 시 원고료 지급 가능(표준강의안 및 기존 강의안 활용 시 제외)
- 교육 실시 후 관련서류(만족도 2종, 강의확인서 등)수합 및 내용 확인 후 강사비지급 등 행정처리

나. 교육 신청

○ 규모 : 20명 ~ 100명 내외

※ 노인, 장애인, 그룹홈, 아동보호시설, 청소년 쉼터 등 교육 효과성 및 교육집단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규모 조정(20명 미만)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 교육지원기관과 협의 후 교육 실시 가능

○ 기간 : '17년 1월 ~ '17년 12월

○ 내용 : 강사*에 의한 1시간 무료교육 지원(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 지역 교육지원기관은 '시도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사풀' 을 별도로 구성해야 함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중복 지원하는 경우

- * 교육시간은 총 2시간(성폭력, 가정폭력 각 1시간) 엄수
- * 교육만족도 조사는 별도 조사양식(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용) 활용

❖ 성폭력예방교육을 중심으로 교육 수요자 및 대상자 특성에 따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교육 가능

다. 교육 콘텐츠 활용

□ 기본방향

○ 성폭력·가정폭력의 사례 및 발생 원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에서 기인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일상에서의 실천을 통해 성 평등한 관계에 기반한 사회 환경 조성

○ 성인지 관점에서 폭력을 인지하고 피해·가해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인 통합의 관점에서 폭력상황에 대한 구조적 인식 및 지역사회의 안전 문화 조성의 적극적 행위자로서 역할 부여

□ 분야별 주요내용의 구성

○ 관련법률 상 교육목표 및 주요 내용

영역	교육목표 및 내용	관련법률
성폭력 예방교육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2.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역	교육목표 및 내용	관련법률
가정폭력 예방교육	1.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성인지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예방에 필요한 사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교육 통합 시 성 평등 관점에서 총론 교육을 실시하고, 각 폭력의 특수성을 살린 각론 교육은 세부내용으로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실시

4 | 강사풀 구성 및 운영

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사풀 구성

- 지역 교육지원기관에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 외에도 교수, 전문가 등 역량 있는 일반강사를 포함한 강사풀을 시도시자와 협의하여 구성해야 함
- 각 지역 교육지원기관장은 강사풀 구성 현황을 중앙 교육지원기관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최종 승인한 강사 명단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1분기)

나. 강사 자격기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

- 성폭력 및 통합교육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폭력예방교육 분야 전문강사
- 가정폭력예방교육 : 가정폭력, 양성평등교육 분야 전문강사

- 다수의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강의 경험이 있는 일반 강사 중 아래 ①~⑤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일반 강사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사풀’에 포함할 경우 자체 점검 1회 이상 실시(필수)

①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7호(제7호의 경우 같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의 입학학력으로 인정되는 학교만 해당한다)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포함



한다)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의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③ 성폭력·가정폭력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④ 상담소·보호시설·긴급전화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① ~ ⑤]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중 2.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준용

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사 관리

- 중앙 및 지역 교육지원기관 강사 워크숍 개최(각 기관별 연 2회 이상)
 - 지역 교육지원기관장은 사업 착수 1~2개월 이내 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시도별 사업추진계획 공유 및 '17년 강사 활동 방향 안내
 - 지역 교육지원기관 및 강사 간 네트워킹, 우수 교육 사례 공유 등
 -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강사는 반드시 중앙 및 지역 교육지원기관의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해야 함
- 효과적 교육수행을 위한 강사 지원·관리
 - 지역 교육지원기관과 강사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확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 파트너로서 상호존중 및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해 상호 노력하여야 함
 - 교육 실시 전 교육 대상에 대한 기본 정보를 포함한 강의 준비에 필요한 제반 사항(교육신청서 등)을 해당 강사에게 전달하여 대상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강사의 내실 있는 교육준비를 위하여 강의계획서 작성 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의 매뉴얼」 준수하여야 함
 - 강사는 교육대상자의 현황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추천콘텐츠 등을 활용한 강의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만족도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 적극적 성과관리 필요
- 지역 교육지원기관에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의 의뢰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강사풀에서 해당 강사를 제외 할 수 있음

5 | 교육 만족도 조사

- 교육 만족도 조사 및 자체 점검
 -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사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으로 교육 효과성 평가 및 품질 제고
 - 강사의 교육내용 뿐 아니라 교육현장에 대한 평가결과 수시 환류를 통해 폭력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 교육만족도 조사 및 다각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사업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 도출

< 교육 만족도조사 및 자체 점검 개요 >

구분	조사자	대상
교육만족도 조사	교육생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교육신청기관 담당자	
교육지원기관 자체 점검	시·도 담당자	
	지역 교육지원기관 대표 및 담당자	

- 환류
 - 지역 교육지원기관은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강사에게 환류하고 확인서를 구비해야 함
 - 집중 관리가 필요한 강사를 대상으로 강의 역량강화를 위한 2차 모니터링 실시 및 (필요시) 해당 강사의 재교육 기회 부여
 - 교육만족도 및 자체 점검 정성평가 분석결과를 교육콘텐츠 개발 등에 반영함으로써 현장과 교육의 연계성 강화
 - 폭력예방교육 대상별 표준강의안 개발 및 기존강의안 수정·보완

가정폭력·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

2017년 경기남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통합 워크숍 자료집

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적보고 및 추진계획

| 심고은 사업담당 | 경기남부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실적보고 및 추진계획

(17.4.28 기준)

I. 실적보고

1. 교육진행상황

① 성폭력(435건): 107건 진행 >> 328건 남음

(4월 기준 신청건수)

민간 기업 종사 자	지역 사회 성원	학부 모	다문 화	장애 인	노인	사회 복지 종사 자	군인	학교 밖 청소년	대학 생	기타	총 (건)
8	6	20	1	35	2	14	2	5	4	10	107

② 가정폭력(50건): 20건 진행 >> 30건 남음

학부모	다문화	장애인	노인	사회복지 종사자	기타	총 (건)
10	2	2	1	1	4	20

③ 자체점검 성폭력(125회): 26회 진행 >> 99회 남음

민간기 업 종사자	지역사회 성원	학부모	장애인	노인	사회복지 종사자	대학생	기타	총 (회)
1	2	2	13	1	3	2	2	26

④ 자체점검 가정폭력(30회): 3회 진행 >> 27회 남음

학부모	노인	기타	총 (회)
1	1	1	3

=> 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의 모든 교육은 9월 30일까지로 신청을 마감함.

2. 대상자 발굴 및 홍보

- ① 지정형(100건): 경기도청과 21개 시·군 지자체의 협력을 통하여 안전파수꾼 역할이 가능한 주민자치위원, 이장, 반장, 통장,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대상자모집 홍보활동을 하여 안산, 여주, 양평, 오산 지역에 교육을 진행함. 지속적으로 각 지자체에 팩스와 전화홍보를 통하여 대상자모집을 진행할 예정임
- ② 도서벽지(15건): 경기도청과 도서벽지로 지정된 지역상당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안산 대부동, 양평군 고송리, 여주시 북내면 지역 교육을 진행하였고, 앞으로 안산시, 김포시, 양평군의 교육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임
- ③ 아동안전지킴이&어머니폴리스: 경기남부 경찰청의 협력 하에 21개 시·군 경찰서에 홍보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아동안전지킴이와 어머니폴리스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함
- ④ 민간기업 종사자, 다문화 교육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21개 시·군 내 각 지역의 민간기업과 다문화가족지원기관에 매달 홍보물을 배포하고 전화작업을 통하여 홍보작업을 하고 있음

3. 업무협약체결

- * 도서벽지지역: 안산시 대부동 주민센터,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와 MOU체결
- * 지역상담소: 안산가정폭력상담소, (사)정해복지부설하남행복한가정상담소, (사)양평가정상담소, (사)광명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군포둘이하나가정사랑훈련학교와의 MOU체결
- * 지역아동센터: 26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인 디딤돌과 MOU를 체결

4. 자체점검

대상자에 맞는 강사리스트를 구축하기 위한 점검으로 점검횟수를 125회로 늘리고, 강사 모니터링을 통하여 강사의 강점과 보완점을 교육지원기관에서 알고 강사에게 점검내용을 환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둠

- ① 교육지원기관은 강사에게 사전안내를 하지 않고 불시에 점검 有
- ② 교육지원기관의 점검을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 有
- ③ 강사는 교육지원기관의 점검환류내용에 따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 필요함
- ④ 교육지원기관은 강사에게 교육신청기관의 교육만족도와 자체점검내용을 환류의무 有



=> 자체점검대상자 중 장애인이 가장 많은 건수(총 26건 중 13건)를 차지하였고 교육신청기관과 교육지원기관의 만족점수가 가장 높은 대상자와 가장 낮은 대상자 또한 장애인이었음

* 장애인대상으로 교육을 한 경우, 교육신청기관과 교육지원기관은 시설의 특성이나 대상자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부분과 자극을 줄 수 있는 단어 선택이나 동영상 활용에서 보완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강점으로는 대상자에 맞는 눈높이 교육과 이해를 돕기 위한 교구사용을 꼽았음

II. 추진계획

1. 대상자 발굴 및 홍보

- * 21개 시군의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 MOU체결
- * 사각지대의 교육대상자를 발굴하고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다문화나 노인, 장애인 및 기타 특수 대상자에 대하여 더 많은 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과 21개 시군의 지자체와 지역기관에 지속적으로 홍보 예정
- * 폭력사건의 발생이 잦은 지역을 선별하여 안전파수꾼 역할이 가능한 지역사회성원과 폭력에 취약한 대상에게 집중교육 실시예정

2. 교육지원기관만의 자체적인 강사리스트 구축

① 강사

강사는 가장 선호하는 대상자와 지역을 선별하여 강사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함

ex) 선호대상자: 1순위- 장애인/ 2순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순위- 학부모

선호지역: 광명, 안양, 부천

② 교육지원기관

교육지원기관은 강사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강사의 강점과 보완점을 찾아 대상자별로 분류함. 자체점검점수와 교육신청기관의 교육생 만족도 점수를 기준으로 강사의 최적대상자를 선별하여 대상자별 맞춤 교육을 연계하도록 하며,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강사에게 보수 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여 대상자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

가정폭력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

2017년 경기남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통합 워크숍 자료집

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언론홍보 보도자료

| 박미정 사업담당 | 경기남부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 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언론홍보 보도자료

2017년 가정폭력·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7. 2. 1.(수)	담당부서	폭력예방교육 사업담당
상담소장	류복연(031-797-7031)	담당자	심고은(031-797-7188)

2017년 경기남부지역 찾아가는 폭력예방 무료 교육

- 교육기회가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교육” 실시 -

- 여성가족부와 경기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 부터 위탁을 받아 실시되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경기남부지역 21개 시·군에 거주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필요성은 높으나 기회가 적은 일반국민에게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법적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성폭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의무 교육대상자, 성인(만19세 이상)이며, 교육인원은 20~100명입니다.
- 신청기간은 2017년 1월 1일 ~ 201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 교육기회가 적은 경기도민 누구나 가정폭력·성폭력예방교육을 받아 행복한 경기도, 살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에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교육을 신청하고 싶은 기관 또는 신청하고 싶은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씨을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 경기남부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붙임 1】 경기남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안내문

“ 경기남부지역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2017년 성인대상 무료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접수안내

1.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17. 1. 1 ~ 9. 30
- 교육시간 : 1~2시간(기관요청 시 조율가능)
- 교육장소 : 찾아가는 교육 또는 내방 가능
- 교육비용 : 무료
- 교육인원 : 20~100명
- 교육강사 : 여성가족부 위촉 성폭력·가정폭력 전문 강사
- 교육대상 : 경기남부 21개 시·군에 거주, 성폭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의무 교육대상자인 성인(만19세 이상)
 - 동반장, 소상공인, 운소업체 종사자, 민간기업, 시민단체, 종교단체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부모, 여성단체, 부녀회, 다문화 가정 부모
 - 농어촌 주민,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교 밖 청소년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관련시설·단체종사자, 지역아동센터 교사
 - 대학생
- 주 최 : 여성가족부 / 경기도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주 관 : (사)씨올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 (총괄) 경기남부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컨소) (사)시흥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7년 1월 1일 ~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
- 접수방법 : 이메일 / 팩스 / 유선 접수문의
 - 이 메 일 : thesafe02@naver.com
 - 팩 스 : 031-797-7037
 - 홈페이지 : <http://www.kigepe.or.kr/>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문 의 처 : 경기남부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 (사)씨올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 사업담당자 : 심고은, 박미정 ☎ 031-797-7188
 - ※ 교육내용 및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언론홍보 보도자료: MOU체결

2017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
상호협력을 위한 MOU체결

2017. 3. 21.

경기도로부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사)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3월 17일 안양YWCA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21가정사랑훈련학교, 광명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양평가정상담소와 상호협력을 위한 MOU협약을 체결 하였다.



상호협력을 위한 MOU체결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서벽지 지역 대상자발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017년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무료교육에 교육의 질실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가정폭력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지역에 폭력예방무료교육이 진행되어지길 바란다.

경기도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사)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가정폭력의 상호협력을 위한 MOU체결을 21개 시군으로 확대해 도서벽지 및 기타 폭력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성폭력·가정폭력무료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폭력예방교육에 관한 문의는 경기남부 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797-7188로 문의하면 된다.

□ 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언론홍보 보도자료: MOU체결

2017년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
상호협력을 위한 MOU체결

2017. 3. 24.

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사업’
경기도 위탁지정기관 (사)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3월 20일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주민센터, 안산YWCA여성과 성상담소와 상호업무협력을 위한 MOU협약을 체결 하였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사업’의 상호업무협력 MOU 체결은 안산시 대부도, 선감도, 탄도 등 도서벽지 섬지역의 주민대상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안산시 대부동 주민센터는 대부도를 중심으로 인접 섬지역의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주민을 모집할 뿐 만 아니라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홍보 캠페인 활동할 예정이다. 그리고 안산YWCA 여성과 성상담소는 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가정폭력,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주민들이 가정폭력, 성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교육을 진행할 것이다

윤중섭 대부동 주민센터 동장과 안산YWCA여성과 성상담소 최승희 소장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경기도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사)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도 성폭력·가정폭력의 상호업무협력을 위한 MOU 체결에 감사드리며, 위 사업이 잘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폭력예방교육에 관한 문의는 경기남부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797-7188로 문의하면 된다.



□ 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언론홍보 보도자료: 도서벽지교육

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도서벽지 지역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2017. 3. 30.

경기도 위탁 지정기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사업’을 수행하는 (사)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양평군청과 양평가정상담소의 협력으로 3월 21일 양평군 소재 도서벽지 지역 주민대상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2017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사업’을 통해 교육의 기회가 적은 도서벽지 주민에게 여성가족부 위촉 전문강사를 파견하고 있다. 양평군에서 활동하는 양평가정상담소 이미정 소장이 ‘양평군 양동면 고송1리에서 지역을 위해 일하는 부녀회원에게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여한 부녀회원은 고령의 어르신을 비롯하여 30대부터 50~60대의 평균 연령층이 교육을 받았다.

교육에 참여한 80대 어르신은 “이런 교육은 처음 받았다. 요즘 세상에 꼭 필요한 교육이네”라고 했다. 또한 고송1리 부녀회장은 “내 자녀와 우리 마을이 안전하려면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양평군 도서벽지 주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 수행하기까지 양평군 여성복지과장과 양평가정상담소 이미정소장, 경기도청의 긴밀한 협력으로 진행되었다. 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031)797-7188로 문의하면 된다.

□ 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언론홍보 보도자료: 대학교 교육

성폭력상담소, 찾아가는 교육 실시
입학기간 맞아 대학교 순회 방문

광주뉴스 승인 2017.03.15 16:36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사업 기관인 (사)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경기도내 신입 대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정부 지원 사업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2월~3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경기남부지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성희롱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 강사로 파견됐다.

이 기간 동안 약 3,500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서울장신대학교 경우 대학교 총장과 모든 교수가 강의를 끝까지 참여,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한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797-7188)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뉴스 webmaster@gjnews.net

<저작권자 © 광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언론홍보 보도자료: 지역아동센터연합회 MOU체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사업 기관인 (사)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0일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6개 지역아동센터 소속 700명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정폭력·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길수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은 “이번 찾아가는 예방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으며,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폭력예방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남부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797-7188)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뉴스 webmaster@gjnews.net

<저작권자 © 광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정폭력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

2017년 경기남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통합 워크숍 자료집

한국 이주여성 인권과 현황

| 허오영숙 상임대표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 인권과 현황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이주여성을 위한 민간 대사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2001년 이주여성쉼터 최초 운영
- 이주여성을 단일 주제로 다루는 민간단체
- 6개 지부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경남)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 (6개월 / 최대 2년)
전국 5곳 (서울, 대구, 전남 목포, 전북 익산, 충북 청주)
※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용쉼터 2015년 기준 25곳
- 단기 이주여성 쉼터(3개월) : 서울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운영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어(영어), 한국어)

지구화, 이주의 여성화

- 지구화 globalization : 전지구적 자본, 노동의 유연화, 이주 급증
1970년 8,200만명 → 2015년 3억명
- '지구화와 이주' 파생 논의 : 국민국가의 쇠퇴, 탈영토화 등
-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 여성 이주 49%
(인신매매 등 법에 준하지 않는 이주를 고려할 경우, 여성 비율이 더 높아질 것)

이주 및 이주자에 대한 정의

이주는 21세기 메가 트렌드...전 세계 인구 7명 중 1명이 이주자

이주 (Migration)

국경을 넘었거나 혹은 특정 국가 내에서 사람이나 집단이 이동하는 것. 그 기간과 구성, 원인에 상관없이 어떤 형태의 인구이동이든 포괄하는 개념으로 난민, 이재민, 경제적 이주자 그리고 가족재결합 등의 목적을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이주자 (Mig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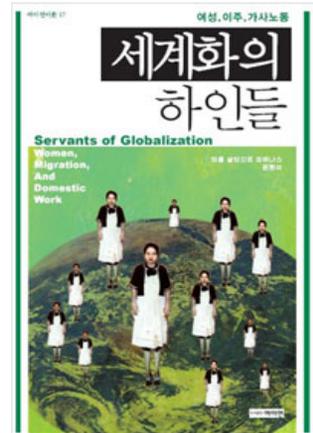
IOM이 정의하는 이주자란 (1) 대상의 법적 지위; (2) 이동의 자발성 여부; (3) 이동의 원인; 또는 (4) 해당 국가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국경을 넘는 중이거나, 국경을 이미 넘은 자, 또는 국내에서 거주지를 떠나 이동 중이거나 이동한 자를 의미한다.

출처: IOM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아시아 여성 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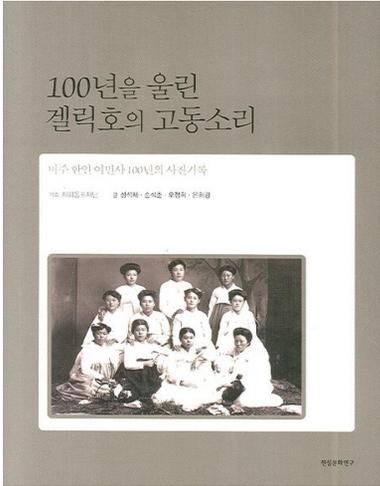
- 세계 여성 이주자의 72%가 아시아에 집중
- 아시아의 여성이주 : 가사노동과 성 산업 (결혼이주는 아시아적 현상이라기 보다 대만, 한국, 일본 등의 특수한 현상에 가까움)
- 세계화 확산에 따라 이주는 성별에 따라(젠더화) 다른 형태를 보임
- 아시아 여성이주의 특성은 아시아 여성에 대한 고착화된 이미지 형성에 기여



평균 수명과 GDP, 이주

<http://www.gapminder.org/world>

사진 신부



“그곳에는 수년 전부터 한인 청년들이 옮겨가 큰 돈을 벌고 있는데 참한 규수를 찾아 혼인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그곳은 조선땅에 비할 바 없이 넓고 자유로워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 울산이 넘쳐나고 생활이 풍족하여 남녀가 평등하고 출생의 천함과 귀함이 없으며, 누구나 노력하는 만큼 뜻하는 바를 이루리라. 돈을 많이 벌여 조선의 가난한 가족들을 걱정 없이 살게 할 수 있으리라” (<사진신부 박보배>)

한인 노동자들과 사진 교환으로 결혼하여 이주한 사진 신부는 1910년부터 1924년 5월까지 하와이 951건, 미국 본토 115건 등 총 1,066건이 성사되었다(강진구, 2011:214)

한국의 이주 송출국 경험: 서독

<자료 2> 연도별·직종별 파독 현황

연도	계	광부	간호요원	기능공
1963	247	247		-
1964	806	806	1,043	-
1965	1,198	1,180		-
1966	1,513	280	1,227	-
1967	428	7	421	-
1968	94	3	91	-
1969	847	10	837	-
1970	3,022	1,305	1,717	-
1971	2,731	982	1,363	476
1972	1,728	71	1,449	208
1973	2,176	842	1,182	152
1974	2,386	1,088	1,206	92
1975	462	-	459	3
1976	376	314	62	-
1977	795	795	-	-
계	18,899	7,936	11,057	931

* 출처: 『독일병원협회』(생산연도 미상): 주독대사관 『업무현황』, 1981.

* 박재영(2013) “파독 간호사· 광부의 독일 정착과 삼각이민 연구”에서 재인용



한국의 이주 송출국 경험: 베트남 전쟁

[연도별 참전병력 현황(1964.9~1972.12)]

* 연도별 참전 병력 현황

구분	총계	정규군					기타
		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	
1964	140	140	140				
1965	20,541	20,541	15,973	261	21	4,286	
1966	45,605	45,605	40,534	722	54	4,295	
1967	48,839	48,839	41,877	735	83	6,144	
1968	49,869	49,838	42,745	785	93	6,215	31
1969	49,755	49,720	98	2,558	31		
1972	37,438	37,405	36,871	411	95	28	33
참전연병력		325,517	288,656	5,105	615	31,141	97

1964년 9월 한국군 이동 병원 및 태권도 교관이 베트남에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1973년 3월 철수할 때 까지 9년 동안 베트남 전쟁에 연인원 32만5천명의 한국 군인 파병(박태균, 2015)

한국 청년들의 해외 취업, 워킹홀리데이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② '탈조선'...29살 청년은 호주서 '농장을 탄다'

등록 :2016-01-03 21:14 수정 :2016-01-18 10:55

f t ↗ ★ 📄

+ -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스탠스포드의 에스에스아르 농장에서 한국 청년들이 딸기 모종 관리를 위해 대형 트랙터에 연결된 베드머신에 얹드려 감초를 제거하고 있는 모습. 에스에스아르 농장 한국인 워홀러 제공

사회 많이 보는 기사

1. [단독] 이병우 교수, 나경원 말 위해 성적 변경·관리까지 했다
2. 한국인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첫 발생'
3. '카톡 노동' 퇴근이 없다
4. '나경원 말 입학비리' 의혹에 주류언론들 침묵
5. 민속촌 설립자 "박정희 처 조사사위가 민속촌 강탈"



외국인 체류 추세

2015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1,899,519명으로 2014년 대비 5.7% (101,901명)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매년 8.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2011년 2.75%에서 2015년 3.69%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적·지역별로는 중국이 955,871명(50.3%)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38,660명(7.3%), 베트남 136,758명(7.2%), 태국 93,348명(4.9%) 등의 순이었습니다.

표 2-1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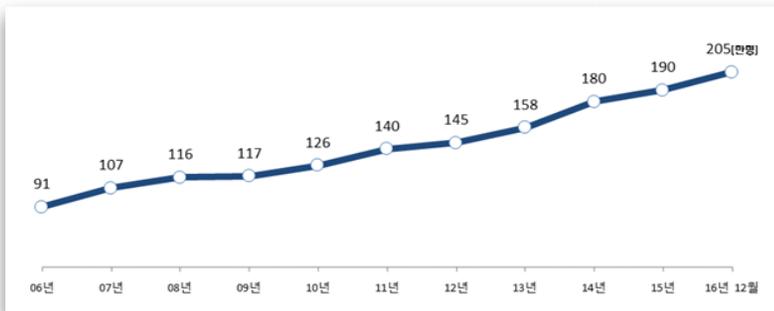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체류외국인		1,395,077	1,445,103	1,576,034	1,797,618	1,899,519
인구		50,734,284	50,948,272	51,141,463	51,327,916	51,529,338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비율		2.75%	2.84%	3.08%	3.50%	3.69%

※ 인구는 통계청(KOSIS)의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인용하였음.

출처: 2015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연보

외국인 주민 현황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년 12월호)



○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2016.12.31. 현재, 단위: 명)

체류 자격별	계	재외동포 (F-4)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영주 (F-5)	유학 (D-2)	거주 (F-2)	기타
인원	2,049,441	372,533	279,187	254,950	130,237	76,040	39,681	896,813
비율	100%	12.4%	18.2%	13.6%	6.4%	3.7%	1.9%	43.8%



주요 비자 제도

- E-9 고용허가제: 2004년 도입, 산업 연수제 대체 도입
- H-2 특례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2007년 도입, 25세 이상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
- E-6 예술홍행: 엔터테이너 비자
- F-1 방문동거
- F-2 거주
- F-2-1 거주 (국민의 배우자) -> F6 비자(결혼이민)로 변경
- F-2-2 거주 (난민)
- F-4 재외동포
- F-5 영주권

※ 체류 자격에 따른 성별 쏠림 현상은 왜 나타나는가?

외국인의 법적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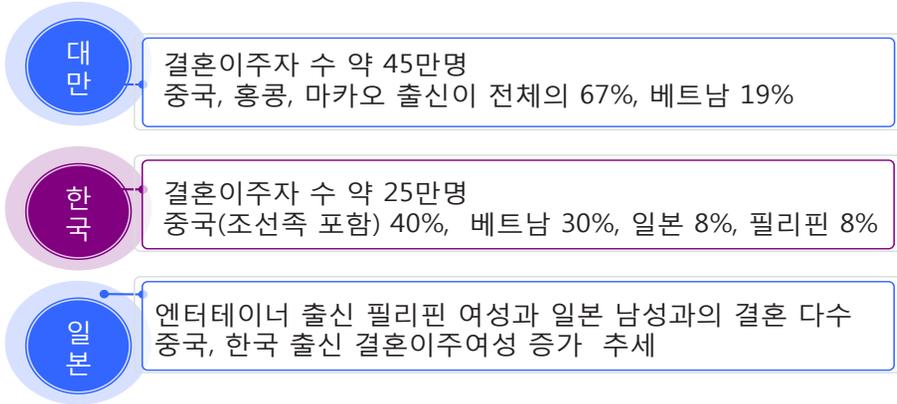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7 제정) 제2조 1항

“재한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실존하는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는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서, 배재의 대상 발생

아시아 결혼이주 목적국 현황



다문화 가족 / 결혼이민자 법적 정의

*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 제정)

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2조~제4조: 출생, 인지,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 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결혼이민자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법률로서 이민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가 법적 차원에서 '이민'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결혼형식으로 유입된 외국국적 여성에게 혼인과 동시에 우리나라 국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이민'이라는 용어 대신에 '이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표명환, 2009)



한국 국제결혼의 특징

- 1990년 국제결혼 통계
- 1992년 한중 수교 : 농촌총각+조선족여성
- 종교적 결혼: 통일교 선교가 이루어지는 18개국에서
1980s - 일본여성 / 1988- 6,500쌍
1990s- 필리핀, 중앙아시아 / 1992-30,000쌍
- 결혼중개업 등장
- 초국적 산업으로서의 국제결혼 사업: 국제결혼 중개업 시장의 확산에 따라 최근 미얀마, 라오스 등 전통적으로 결혼이주가 통제되었던 국가들에서도 한국과의 국제결혼이 나타나기 시작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표 10] 외국인과의 혼인, 2005-2015

(단위 : 천 건,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년대비 증감률	
													구성비
총 혼인 건수	314.3	330.6	343.6	327.7	309.8	326.1	329.1	327.1	322.8	305.5	302.8	100.0	-0.9
외국인과의 혼인	42.4	38.8	37.6	36.2	33.3	34.2	29.8	28.3	26.0	23.3	21.3	7.0	-8.8
한국남자+외국여자	30.7	29.7	28.6	28.2	25.1	26.3	22.3	20.6	18.3	16.2	14.7	4.8	-9.1
한국여자+외국남자	11.6	9.1	9.0	8.0	8.2	8.0	7.5	7.7	7.7	7.2	6.6	2.2	-7.9

출처: 통계청, 2016 <2015년 혼인이혼 통계>

결혼이주민 추이

○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5년12월	'16년12월
인 원	144,681	148,498	150,865	150,994	151,608	151,608	152,374
전 년 대 비 증 감 륜	2.1%	2.6%	1.6%	0.1%	0.2%	-	0.5%

○ 국적·지역별 및 성별 현황

(2016.12.31. 현재, 단위 : 명)

국적 구분	계	국적								
		중국 ¹⁾	한국계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타이	몽골	기타
전체	152,374 (100%)	56,930 (37.4%)	21,328	41,803 (27.4%)	13,110 (8.6%)	11,606 (7.6%)	4,473 (2.9%)	3,182 (2.1%)	2,381 (1.6%)	18,889 (12.4%)
남자	23,856 (15.7%)	11,629	6,889	1,324	1,218	334	61	77	117	9,096
여자	128,518 (84.3%)	45,301	14,439	40,479	11,892	11,272	4,412	3,105	2,264	9,793

출처: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 <2016년 12월 통계월보>

결혼이주민 (혼인귀화자 포함) 추이

○ 거주 지역별 분포현황¹²⁾

(2016.12.31. 현재,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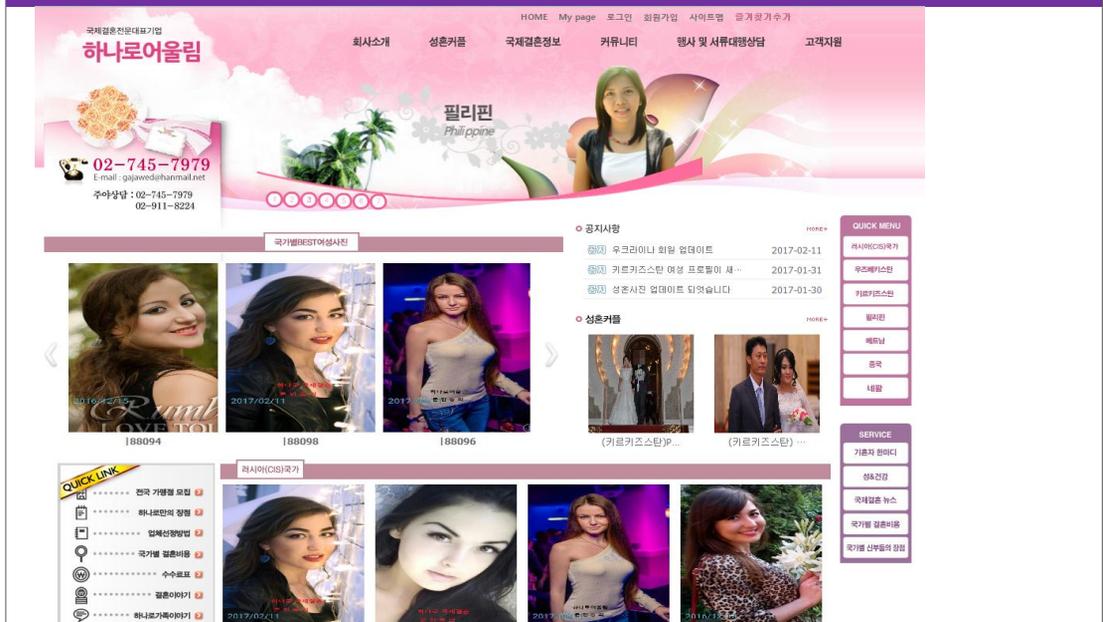
계	경기	서울	경남	인천	충남 ¹³⁾	경북	부산	전남
150,605	41,828	27,473	10,003	9,294	8,569	7,689	7,041	6,809
	전북	대구	충북	강원	대전	광주	울산	제주
	5,957	5,010	4,817	3,619	3,429	3,379	3,358	2,330

○ 혼인귀화자(누계)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년 12월
혼인귀화자 (전체누계)	66,474	77,203	84,933	93,953	101,560	108,526	114,901

출처: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 <2016년 12월 통계월보>

성차별, 인종차별의 중개업 광고



상업적 중개업을 통한 국제 결혼 진행 과정

국가별행사일정표 HOME > 국제결혼행사비용 > 국가별행사일정표

■ 베트남 (하노이 지역) 행사일정표

일자	시간	내용	
1월	14:30	하노이 공항 도착	지사장 마중
		호텔도착	신부와 데이트 및 가족인사
		아침식사	현지식
2월		결혼식	예물교환(18kg금반지)/계약절단(3단)/비디오촬영/웨딩제작/피로연
		결혼식후 신혼여행	하롱베이 고급호텔 투숙
3월		저녁식사후 바닷가산책	베트남 해산물 사브사브
		아침식사	호텔부페식(한식/양식)
		선상유람(4시간소요)	등골탐사, 선상만찬
4월			처갓집 방문 or 쇼핑
			처갓집에서 개인시간 (주로 친척집 방문)
5월	05:30	공항으로 출발	신부 축 배웅
		하노이 공항 도착	23:00시 비행기 탑승
5월		인천공항 도착	귀가

★ 상기 일정은 현지에서 지사장과 상의 후 조절가능하며 조정시 추가금액이 발생 가능합니다.

<출처: 하나로 어울림>

□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26.3% 차지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주요 피해유형	건수	비율
①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청구	55	26.3
② 계약내용과 상이한 상대방 소개 및 신상정보 미제공	36	17.2
③ 배우자 입국 지연·거부	31	14.8
④ 배우자 입국 후 가솔	25	12.0
⑤ 추가비용 요구	20	9.6
⑥ 비자 미발급·지연	17	8.1
⑦ 배우자 입국 전 행방불명	9	4.3
⑧ 소개지연 및 계약 불이행	8	3.9
⑨ 사업자 폐업	4	1.9
⑩ 기타	4	1.9
계	209	100.0

2010년 1월 - 2016년 상반기
'국제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3,786건,
피해구제 신청 209건

□ 국제결혼 중개서비스 비용 건당 평균 1,100만원 넘어

< 중개서비스 비용 현황 >

(단위 : 건, %)

비용	500만원 이하	500만원초과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1.5천만원이하	1.5천만원 초과 2천만원이하	2천만원 초과	합계
건수	8	79	90	8	5	190
비율	4.2	41.6	47.4	4.2	2.6	100.0

□ 소비자 연령별로는 40대가 54.9%를 차지

< 연령별 현황 >

(단위 : 건, %)

연령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합계
건수	4	43	95	23	8	173
비율	2.3	24.9	54.9	13.3	4.6	100.0

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
(2016.9.26)

결혼이민 비자 체류와 귀화

외국인 등록증 발급	한국 입국 90일 이내 발급 한국인 배우자 신원보증
결혼비자 체류 연장	F6 비자, 1 - 3년 기한 비자 체류만료 2개월부터 체류 연장 신청 가능
국적(영주권) 취득	한국 거주 2년, 결혼 3년 한국 거주 1년 3천만원 이상의 재산 증빙 등 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인터뷰 / 국적 심사 기간의 장기화



결혼이민 비자 이혼과 체류

이 혼	결혼에 의한 입국이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본국 귀국
협의 이혼	자녀가 없을 경우 본국 귀국 자녀의 양육권(면접교섭권)을 가질 경우 체류 가능
재판 이혼	유책 책임이 없이 이혼한다는 내용의 판결문 위자료 판결을 받을 경우 유리

국적 허가 여부 심사 기간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

2017년 2월 현재

유형별	심사 중 (年.月)	내 용	소요 기간
혼인귀화 (유자녀)	2016. 4. 이전 접수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한 자 (당사자 사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10개월 이상
혼인귀화 (무자녀)	2015. 8. 이전 접수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한 자 (당사자 사이 출생한 자녀가 없는 경우)	18개월 이상
특별귀화 (독립유공자 후손)	후손확인위원회 심사 후 약 1개월	■ 독립유공자의 후손	-
특별 귀화	면접 대상 2015. 5. 이전 접수건	■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 미성년양자	21개월 이상

출처: 출입국의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

국제 결혼 가정의 경제적 상황

- 2005년 조사 52.9%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
- 월평균 가구소득 (2015년 3/4분기 월평균 가구 소득 441만 5천원)
 2009년 조사 200만원 미만 59.7%
 2012년 조사 200만원 미만 41.9%
 2015년 조사 200만원 미만 32.6%
- 주거 유형 (한국 전체 자가 비율 55.6%)
 2009년 조사
 본인, 배우자 소유 33.0%, 전세, 월세 42.2%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

[표 25] 외국인과의 이혼, 2005-2015

(단위 : 천 건,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총 이혼 건수	128.0	124.5	124.1	116.5	124.0	116.9	114.3	114.3	115.3	115.5	109.2	100.0
외국인과의 이혼	4.2	6.1	8.3	11.0	11.5	11.1	11.5	10.9	10.5	9.8	8.2	7.5	-15.6
한국남자+외국여자	2.4	3.9	5.6	7.9	8.2	7.9	8.3	7.9	7.6	7.0	5.7	5.3	-17.9
한국여자+외국남자	1.8	2.2	2.7	3.1	3.2	3.2	3.1	3.0	2.9	2.8	2.5	2.3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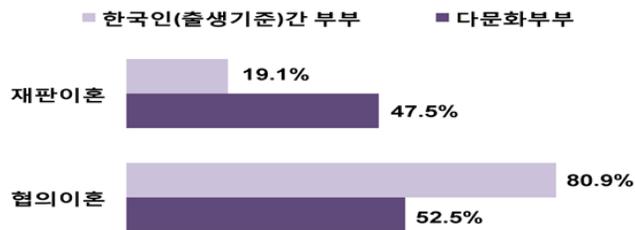
출처: 2015년 혼인이혼통계



국제결혼 이혼 종류별 비중

협의 이혼 52.5%, 재판 이혼 47.5% 차지
재판이혼 비중이 높은 것은 체류 문제와 연동되기 때문

[그림11] 이혼종류별 비중, 2014



출처: 2014년 다문화인구 동태

재판 이혼 증가 이유

- '배우자(남편)에게 혼인해소 귀책사유'가 있음이 판결문에 명시될 경우에 한 해 합법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다.
- 이는 국제결혼 부부가 협의이혼 할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한국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체류와 이혼을 동시에 원할 경우 협의가 가능하더라도 반드시 재판이혼을 해야 한다.
-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중 재판 이혼이 급증하는 것은 체류자격 확보를 위해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이선외 2010:102).

결혼비자 발급 심사 강화 정책 시행 (2014년 4월 1일)

보도자료

배포일 : 2014. 2. 5.(수)

대변인실 02) 2110-3717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3매

주책임자	차용호 과장	02) 2110-4140
담 당 자	나현용 사무관	02) 2110-4144

**제목 : 법무부, 비정상적 국제결혼의 정상화를 위한 결혼비자 발급심사 강화
- 14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 시 ①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심사하고, ②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가 최소한의 가족부양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등 강화된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의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14. 2. 6.(목) 고시하였다.

※ 심사기준 개선 상세 추진배경,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고시내용 등은 붙임 참조

결혼비자 발급 심사 강화 정책 시행 (2014년 4월 1일)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

1. 교제경위 및 혼인 의사 여부
2.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3.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5.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6.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 확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 여부. 이 경우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곳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초청인이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 별표 1 28의3. 영주(F-5) 나목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부부강간 인정

부산지방법원 2009. 1.16. 선고 2008고합80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6. 11:00경 부산 OO구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필리핀 국적의 외국인)가 생리기간 중이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위협한 물건인 가스분사기와 과도(칼날길이 12cm)를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에 겨누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유두와 음부를 자르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

판시사항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한 사안에서,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한 사례

성폭력 · 가정폭력의 공존



현지 사전교육과 귀환 여성 상담의 공존



국제결혼 피해 남성과 그 주장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상담 통계

116,039		계	가족	일반폭력	성폭력	성매매	부부갈등	가족갈등	심리·정서	이혼문제	일반법률	체류및국적	취업및노동	성력	의료
총계	144,616	15,399	945	1,434	173	17,094	4,559	2,702	16,159	7,851	13,959	5,350	7,722	8,391	
비율	100	10.6	0.7	1.0	0.1	11.8	3.2	1.9	11.2	5.4	9.7	3.7	5.3	5.8	
중앙	85,118	6,549	616	383	54	11,352	2,597	1,541	5,943	3,527	7,226	3,199	3,740	5,715	
비율	100	7.7	0.7	0.4	0.1	13.3	3.1	1.8	7.0	4.1	8.6	3.8	4.4	6.7	
지역	69,498	8,860	329	1,061	119	5,742	1,962	1,161	10,216	4,324	6,733	2,161	3,982	2,676	
비율	100	14.9	0.6	1.8	0.2	9.7	3.3	2.0	17.2	7.3	11.3	3.6	6.7	4.6	
1 수원	16,331	2,670	127	495	75	903	284	333	4,216	1,197	1,828	662	394	422	
2 대전	10,766	1,443	36	162	3	1,260	642	64	1,688	679	919	344	668	229	
3 광주	8,161	1,605	83	148	27	877	79	344	1,332	1,020	727	241	662	375	
4 부산	9,373	1,996	64	80	10	647	387	60	1,395	399	786	187	1,166	813	
5 전주	7,149	740	7	95	0	1,357	397	227	811	318	767	278	671	313	
6 구미	8,728	396	12	71	4	698	173	133	774	711	1,706	439	421	524	
상담내역(성폭력·성매매 제외)	상황														
	총계	한국어교육					국제결혼 피해			기타	통역	법력			
		한국어교육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문화가족지원센터관련	자녀관련	기타상황	국제결혼경제입원관련피해	배우자관련피해	기타피해						
		2,440	7,205	2,868	4,807	22,823	388	190	206	1,951				30,453	1,204
	비율	1.7	5.0	2.0	3.3	15.8	0.3	0.1	0.1	1.3					
	중앙	2,010	5,533	2,658	3,475	17,435	348	176	195	846				24,946	480
	비율	2.4	6.6	3.1	4.1	20.6	0.4	0.2	0.2	1.0					
	지역	430	1,672	210	1,332	6,388	40	14	11	1,106				6,507	724
	비율	0.7	2.8	0.4	2.2	9.1	0.1	0.0	0.0	1.9					
	1 수원	67	164	19	172	1,088	0	0	0	216				895	184
2 대전	116	126	40	474	1,624	12	0	2	227				1,651	91	
3 광주	37	80	27	80	328	9	2	1	77				103	73	
4 부산	47	384	40	172	618	11	4	4	203				1,266	147	
5 전주	89	69	26	188	641	8	2	4	141				468	113	
6 구미	75	650	58	246	1,189	0	6	0	242				1,124	116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상담 통계

	계	베트남	중국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크	태국	라오스	네팔	일본	한국	기타
총계	116,039	44,675	18,498	3,580	9,813	11,942	4,755	5,917	3,911	851	643	2,178	5,365	3,911
비율	100	38.5	15.9	3.1	8.5	10.3	4.1	5.1	3.4	0.7	0.6	1.9	4.6	3.4
중앙	72,834	33,769	10,407	1,984	4,069	5,019	2,292	3,342	2,296	818	394	933	4,803	2,708
비율	100	46.4	14.3	2.7	5.6	6.9	3.1	4.6	3.2	1.1	0.5	1.3	6.6	3.7
지역	43,205	10,906	8,091	1,596	5,744	6,923	2,483	2,575	1,615	33	249	1,245	562	1,203
비율	100	25.2	18.7	3.7	13.3	16.0	5.7	6.0	3.7	0.1	0.6	2.9	1.3	2.8
1 수원	10,446	1,622	1,835	121	1,523	1,998	978	487	1,215	9	5	5	2	646
2 대전	7,409	2,244	1,441	42	1,179	1,364	60	135	220	9	3	337	85	290
3 광주	6,025	1,228	1,359	747	103	1,366	66	851	89	9	20	55	54	78
4 부산	7,093	1,883	1,143	31	957	1,598	443	359	43	3	202	9	285	137
5 전주	5,625	2,154	1,085	211	1,082	533	20	453	21	3	14	13	17	19
6 구미	6,607	1,775	1,228	444	900	64	896	290	27	0	5	826	119	33

이주민 지원 기관

-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6개 지역센터)
- 국제결혼 피해 전화 (내국인 피해) 02-333-1311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구, 시, 군 단위 (전국 217개소)
- 외국인력지원센터 (외국인 이주 노동자 콜센터)
- 1345 / 출입국관리사무소 콜센터
- 120 + 9 / 다산콜센터 서울지역에 관한 모든 정보제공
- 02-733-0120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상담, 법률지원, 쉼터운영, 통·번역, 한국어교육 등
- 이주민건강협회 : 무료 진료, 외국인 의료 공제회

가정폭력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

2017년 경기남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통합 워크숍 자료집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이렇게 합시다

| 송인자 부장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이렇게 합시다

송인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폭력예방교육 도입 현황

구분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도입	1999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2004 (초중고)	2010 (초중고)	2006 (초중고)
확대	2003 (공공단체)	2008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2013 (보육시설, 유치원, '11.10)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2014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일반국민	-	2014 교육지원	2013 교육지원	2014 교육지원

- 성평등 관점의 통합적 접근(지속 가능한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으로 4유형 교육을 종합적으로 정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젠더기반 폭력으로서의 여성폭력

성인지 관점의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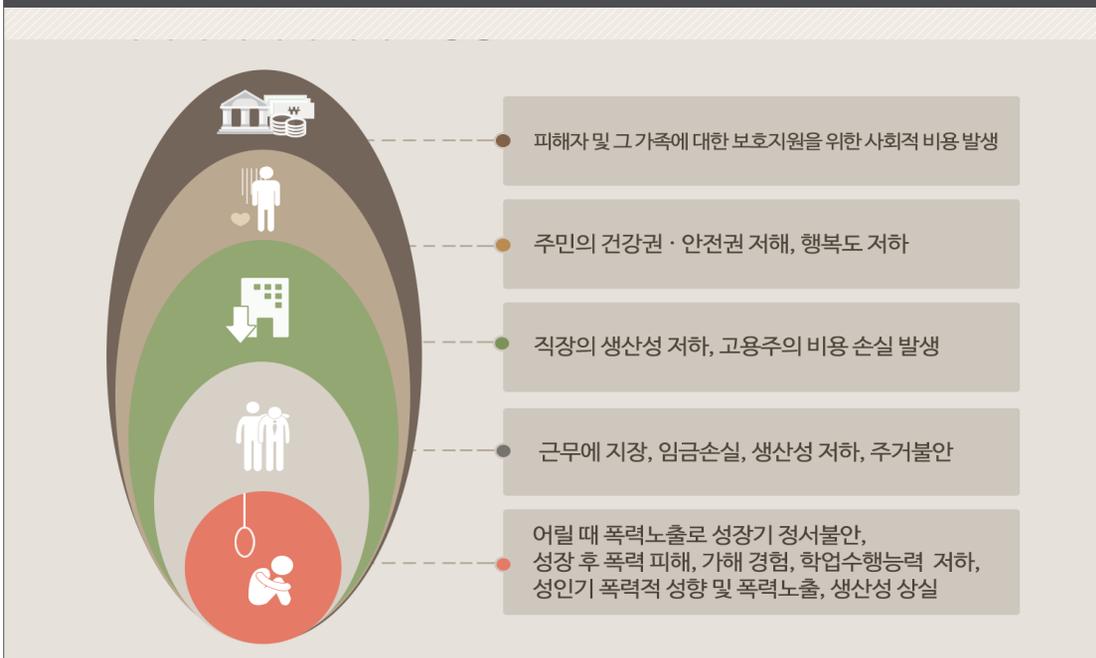
성차별적 사회에서 여성은 잠재적 피해자의 가능성 높고
여성의 삶에서 경험되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성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생애주기에 따라 폭력을 경험하는 것은
한국사회가 여전히 성차별적 사회이기 때문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폭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폭력예방교육 실시 논리적 근거

1. 젠더폭력은 가부장제 사회문화와 남녀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2.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젠더폭력은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여성
3. 유엔은 젠더폭력을 여성폭력이라 명명하고
'93.12.12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선언' 채택(GBV)
4. 1990년대부터 젠더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

젠더기반 폭력의 사회구조적 원인

1. 한 집단에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는 사회적 신념과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구조적 폭력형태로 작용
2. 성불평등을 바탕으로 여성의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 제한
3. 가해자의 힘의 과시와 통제욕구 작동
4. 해당사회의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제도가 차별적인 맥락을 영속화하며 그 차별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이득을 얻는 자가 피해자에 대한 차별과 위계를 유지

젠더기반 폭력

1. 한 집단에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는 사회적 신념과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구조적 폭력형태로 작용
2. 성불평등을 바탕으로 여성의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 제한
3. 가해자의 힘의 과시와 통제욕구 작동
4. 해당사회의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제도가 차별적인 맥락을 영속화하며 그 차별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이득을 얻는 자가 피해자에 대한 차별과 위계를 유지

성별고정관념과 성통념

1. 여성의 침묵은 동의? 여성의 NO는 YES?
 - > 성적 행위는 남성이 리드해야 한다. 여성은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 > 성적인 의사표현이 적극적인 여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적인 상황에서 여성의 NO는 수줍음 때문이다
좋으면서 내숭떠는 것일 수 있다.
 - > 여성은 남성의 말과 요구에 복종해야 한다.
여성들은 남성에게 의존적 존재이므로 따라야 한다



성별고정관념과 성통념

2. 자녀양육과 가사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여성의 책임?

- >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 > 집 청소가 안되어 정돈되지 않고 지저분할 때
- > 밥 반찬이 없을 때
- > 옷이 흩어져 찾을 수 없을 때

폭력예방교육

젠더기반 폭력으로서의 여성폭력

- 남녀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등에서 다수의 피해자는 여성이고, 이는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그룹에 속한 여성에 대한 차별에 기인
- 폭력의 공통기반(차별과 불평등)을 근거로 한 예방 패러다임 필요

폭력예방교육은

- 성차별적 인식, 성편견, 성역할 고정관념 등을 개선
- 피해자 관점에서 판단, 사건 신고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실천인 양성

교육이란

- 인간행동의 계획적 변화
- 인간행동 : 인간의 지식, 태도, 가치관, 성격 등
- 변화 : 육성, 조성, 함양, 계발, 성숙, 발달, 증대
=> 지식증대, 사고력 숙달, 기술습득, 가치관 변화, 의식함양, 문화조성
- 계획적 : 명확한 방향설정, 이론과 실증에 기반한 계획과 과정

교육은 의도적인 목적하에 교육과정(프로그램)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인간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폭력예방교육의 특성



교육

-지식, 기능, 태도에 대한 바람직한 변화
(폭력예방교육의 목적은?)



인식
가치관 전환

-폭력이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인식
→ 극단적 사례보다 경험가능성이 있는 일상속의 사례를 통한 공감



행동변화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 표준강의안 1.0 피해자 관점으로 폭력 바라보기
- 표준강의안 2.0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실천자 되기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12



폭력예방 교육의 기획

- 예방교육의 의의 :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것을 넘어 사회변화를 위해 모든 사회구성원의 적극적 예방 노력 강조
- 폭력의 이해 : 사례를 통해 폭력피해의 심각성 및 2차 피해 예방의 필요성 강조
- 폭력발생원인과 개인, 사회적 영향
 - 구조적 맥락 : 피해자의 낮은 지위, 폭력유지문화 및 성의식
 - 관습과 문화 :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 대한 인권존중 부재
 - 인식적 맥락 :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피해자의 치부로 전환하는 등 개인문제화 하는 사회적 통념에 대한 문제 인식
- 일상에서의 예방과 실천 : 폭력에 대한 감수성 제고 및 인식개선, 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선명구축 등

13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의 내용

- 표준강의안을 기반으로 교육대상 등의 특성에 따라 내용을 구성
- 분야별, 대상별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공감 가능한 사례 활용



⇒ 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에서 기인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제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교육 모니터링 지표 I

성평등, 인권 관점에 기반한 강의 : 차이에 대한 다양성

강사의 성인지 관점 평가 (필수 사항)

성인지 관점 평가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강사는 강의 중에 성인지 관점에 기반한 강의를 수행하였다.	⑤		③	②	①
2) 강사는 반인권적 발언 및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⑤		③	②	①

- * 폭력예방교육은 성인지 관점에서 출발
- * 인권감수성, 폭력민감성에 기반

성인지 관점(gender-sensitivity perspective)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성별에 따른 조건과 특유의 경험을 반영하며, 특정 개념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관점.



성인지 감수성



- 그 동안 우리가 봐 왔던 방식을 의심하기, 누구의 입장에서 보는가에 대한 성찰
- 성차별적, 여성폭력 허용적 인식에 대한 성찰
- 여성폭력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가지도록 노력
-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주체자로서의 인식 필요

<출처: 경찰 대상 여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성인지 관점에서의 접근(가폭)

- 강사의 성인지 관점이 분명하였음. ‘여자답다, 남자답다’는 통념이 가정폭력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했던 점을 지적하여 각 개인의 개성이 먼저 존중되어야 함을 인식하게 함.
- 성인지 관점에서 가정폭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가정폭력바라보기, 관점의 차이 성별 차이에 대한 이해 등으로 구성된 도입부의 강의내용이 매우 좋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교육 모니터링 지표 II

강의 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강의내용은 교육대상(직군 및 특수성고려)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2) 교육생과 해당기관을 정확히 분석하여 강의에 반영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3) 강의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강의 내용이 일치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4) 교육내용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반영되어 있다.	⑤	④	③	②	①

- *세밀하고 구체적인 강의계획서 작성 및 활용
- *교육대상의 특성을 파악 : 학습준비도, 학습요구도 등
- *관련 정부 정책, 법,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교육내용에 반영
- *핵심메시지와 예방을 위한 실천전략은 대상별 맞춤형으로 제시

성인학습자의 특성

- 학습목표와 학습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제시 요구
- 자기주도적 학습자로서의 정체성
- 다양한 선행경험 소유
- 자발적 학습동기 중시
-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에 대한 관심



강의내용(성폭-좋았던점)

▶ 강사경험을 재구조한 강의 구성

- 구금시설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계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짜임새 있게 강의를 진행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였음.
- 강사는 어린이집 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청중에게 적합한 강의를 진행. 영유아를 보호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아동과 성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을 예방/대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아동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성놀이와 성폭력을 혼동하지 않도록 자세한 설명.

▶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 내용 구성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성폭력예방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잘 접근함. '성적 수치심'을 언급하면서 수치심은 피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이 아님을 잘 지적하였음. 또한 아동에게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함을 적절하게 설명하였음. 아동의 특성에 맞춰 실생활에서 반복훈련이 필요하며, 어떻게 훈련시켜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전달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강의내용(성폭-좋았던점)

▶ 일상생활 소재 활용

- 데이트폭력에 대한 이해 및 가해자가 되지 않는 기본 원칙을 설명함으로써 교육대상인 고등학생들이 일상에서 실제로 참고할만한 중요 기준을 제시 했음.
- 성인 남성이 일상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성폭력 관련 행동유형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경각심을 갖게 한 점은 매우 좋았음.
- 고등학생들에게 일상에서 밀착하여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한 피해사례, 데이트폭력 등의 개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짧은 시간에 핵심내용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됨.

▶ 성폭력 관련법에 대해 쉬운 설명

▶ 인권문제로 접근하여 공감과 이해력 증진

- 성폭력 예방에 국한하지 않고 인권 및 자녀양육 전반에 대한 내용 포함
- 해당 강사가 군인으로 근무하면서 체험적으로 인식한 여성 인권의 문제,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강의내용을 잘 풀어냈음.
- 여성인권의 역사와 같은 자료 등을 통해 성폭력은 인권침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킴.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강의내용(성폭-개선사항)

▶ 소통을 통한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강의내용

- (학습자가)친구들 간에 발생하는 경계 침범과 폭력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음. 이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만질 때, 다른 사람의 몸을 허락 없이 만질 때/때릴 때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지에 대해 좀 더 소통하면 좋을 듯 함.

▶ 대상과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강의 실시가 필요

- 인권 및 자녀양육 전반에 대한 내용과 성폭력 예방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면 수강생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 강의 전체의 초점이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됨.

▶ 명료하고 쉽고, 충분한 설명 필요

- 어휘 선택이나 내용에 있어서 아이들의 수준에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느낌이 듦. 예를 들면, 길들이기 설명 시 말씀하셨던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듦. 또한, '상담기관에 신고하라는 언급, '몸을 씻지 않고 병원에 가라'는 등의 설명시 앞뒤 맥락없이 전달되어 내용에 대한 전달력이 떨어짐.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강의내용(가폭-좋았던점)

▶ 폭력예방에 대한 역할을 명확하게 주지시키고 있음

- 가정폭력 해결에서 '민감한 관찰자'로서 지역주민, 교사, 경찰 등 주위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줌.
- 수강자 특성에 맞게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강조함.

▶ 강사의 체험을 녹여내는 강의

- 강사가 직접 체험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생생한 내용 전달, 강사의 경험이 잘 녹아 있는 강의였음.
- 교육내용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반영되어 강사의 현장이해와 충분한 경험이 강의 내용으로 명확히 전달 되었음.

▶ 핵심내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

-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왜 신고해야 하는가를 가정폭력의 은폐성, 반복성, 순환성을 들어 적확하게 설명
- 가정폭력과 다양한 사회문제와의 관련성을 구조적으로 설명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강의내용(가폭-개선사항)

▶ 대상에 따른 강의 제공

-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초점화하여 강의를 구성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 가정폭력 중 부부폭력 중심내용이 많았음. 특히 노인학대에 대한 내용 없었음.(직업군을 고려할 때 가정폭력 유형 균형 있는 설명이 요구 됨)

▶ 적절한 사례선정 및 활용

- 2건의 지역 사례를 지나치게 자세히, 선정적이라 느껴질 정도로 소개한 것이 부담스러웠음.

▶ 폭력예방을 위한 구체적 역할 제시가 필요

- 시민경찰로서 가정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필요함.
- 수강생들이 청소년 관련 종사자로서 그 특성을 조금 더 고려하여 내용을 보완하면 좋겠음. 예를 들어 청소년 관련 상담이나 업무를 할 때 신고 및 상담 등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내용

- 민간사업장 : 조직구성원의 성찰성 및 예방노력 강조
직무관련성과 연계된 교육내용 구성
- 학부모 : 일상속 폭력 예방 및 방관자 되지 않기 강조
안전한 학교와 지역사회 만들기
- 지역사회지도자 : 지역사회 안전파수꾼의 구체적 역할
- 사회복지 및 청소년 수련시설 등 : 폭력피해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 노인 : 노인의 발달단계 및 요구에 기반한 간결한 메시지
여성노인대상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 강조
성평등 및 폭력예방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교육 모니터링 지표 III

강의 기법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교육생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리액션, 공감, 경청)	⑤	④	③	②	①
2) 교육내용을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⑤	④	③	②	①
3) 강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인쇄, 이미지, 동영상 등)	⑤	④	③	②	①
4) 강사는 교육생의 반응에 적절하게 대응했다.	⑤	④	③	②	①

- *교육대상의 수준과 요구를 고려하여 기법을 활용
(개인적인 질문, 선정적 표현 등 주의)
- *강의안의 가독성을 고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 활용.
인용 시 자료 출처 반드시 명기
- *강의 주제나 목적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장시간 하지 않도록 주의

강의기법(성폭-종앗던점)

- ▶ 질문기법 활용을 통해 참여를 이끌고 있음
 - 수강생의 상황에 맞춰 그림그리기, 색종이 접기, 참여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해도를 높임.
 - 학생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여 집중력을 높이고 있음.
 - 모둠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평소 일방적 강의식 수업에 대한 피로감 누적, 학습자 규모, 토론식 수업에 익숙한 직장 분위기(자유로운 의사소통 가능) 등을 잘 고려하여 토론식 수업으로 기획하신 것이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함.



강의기법(성폭-좋았던점)

- ▶ 다채로운 강의자료 및 사례활용으로 이해를 도움
 - 대학생들이 강의내용을 지루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핵심내용을 다양한 강의 자료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전해주었음.(뉴스자료, 포스터 인용,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자기점검 여성가족부 동영상 자료, 학교 내 처리절차 로드맵 등)
 - '자기 결정권'과 심리적 주관성을 설명하기 위해 색띠로 하는 실습도 좋았음. 특히 활동지와 스티커, 방문 모형 등 꼼꼼하고 세심한 교구 준비가 돋보였음.
- ▶ 이미지 PPT제작을 통해 교육효과 상승
 - 60~70세의 노인의 연령을 고려하여 키워드 중심의 구성과 사진으로 강의안을 준비한 것은 매우 프로다운 세심한 배려였음.
 - 강의에 쓰인 PPT의 큰 줄기만을 써 놓아 강사가 유연하게 강의를 이끌어 갈 수 있었고 특히 강사의 스토리텔링이 돋보이는 강의였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강의기법(성폭-개선사항)

- ▶ 학습자의 상황을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함
 - 초반에는 여학생들이 참여하였으나 중반 이후로 거의 참여하지 않음. 수업 내용 상 여학생들의 참여가 있어야 할 내용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음. 이후 수업에서 동일한 내용을 하게 된다면, 가령 이번 질문에는 여학생들만 참가할 수 있다거나와 같이 여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겠음.
 - 교육 마지막에 성폭력예방교육 내용 체크리스트 10문항에 한꺼번에 손가락으로 꼽도록 한 점- 장애로 열손가락을 꼽을 수 없거나, 몇 개 꼽다가 잊어 버리고 다시 다 손가락을 펴는 경향이 있었음. 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여 바로 O, X로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려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강의기법(성폭-개선사항)

▶ 학습자의 맥락을 고려한 강의자료 및 방법 활용

- 동영상의 경우 왜 보여주는지 그 이유가 명확했으면 함. 뉴스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사례를 이야기할 때는 성인지적 관점이 들어가지 않으면 선정적일 가능성이 있음.
- 영상물이 집중도를 높여주기는 하지만 상호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너무 많은 영상을 틀어주는 것은 호기심만 자극할 뿐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수 있음. 또한 영상 하나 하나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도록 강사의 충분한 설명이 들어가야 할 것임.
- 활동지를 했을 경우 왜 하는지 정리가 필요한데, 활동지도 어떤 것만 보충 설명하고 묻고 하여 왜 활동지를 하는지를 알기가 어려웠음. 강의자료가 너무 많을 경우 산만하며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
- 역할극이나 동영상, 강사 선생님의 강의 등이 사용되어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었으나 시간이나 교육 인원수, 장소 등의 제한으로 의도한 강의 방법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였음.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강의기법(성폭-개선사항)

▶ 맥락적으로 흥미를 유발하는 강의자료(영상) 활용이 필요

- 도입부에 영상을 보여줬는데 전체제목과의 연관성이 좀 떨어짐. 도입부에는 팩트있게 성매매에 대한 영상이 나왔으나, 강의내용은 성폭력으로 구성됨(전체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강의를 해야 함).
- 대상자들은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 보이는데 강사가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질문을 하면 잠시 기다려주거나 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질문 후 바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었음.

▶ 토론 및 질문기법의 효과적인 활용법 숙지

- 'ppt를 읽는다'는 느낌. 강사가 개념을 풀어 설명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낱말을 읽어 전달해야 한다는 조바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음.
- 교육대상의 반응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임. 특히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지점(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불신, 내담자 유형에 따른 대처)에 대해서는 의문을 명확히 해소하고, 정리해줄 필요가 있음.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강의기법(가폭-좋았던점)

▶ 다양한 사례 및 강의자료의 활용

- 다양한 사례(본인경험, 뉴스사례, 외국사례, 상담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함. 동영상 웹툰,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함.
- 강의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험과 다양한 사례를 활용한 점이 좋았음.
- 스티커, 동화, 도움 수레바퀴, 퀴즈 등 다양한 활동을 활용하여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함.
- 강사가 상담 현장에서 경험한 실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현실적 이해 및 활용에 도움이 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강의기법(가폭-좋았던점)

강의방(좋았던점)

▶ 적절한 리액션을 통한 생동감 있는 강의 진행

- 교육생들과의 교감, 질의응답 및 교육생들의 대답에 대한 리액션 부분이 매우 잘되었으며, 이러한 부분이 강의전반에 영향을 미쳐 1시간 강의 내내 강의분위기가 생동감 있었음.

▶ 주제에 맞는 동영상 활용을 통한 강의효과 상승

- 주제에 맞는 동영상을 활용한 점이 좋았음.
- 적당한 동영상의 활용이 좋았음.
- 적절한 타이밍에 짧은 동영상을 보면서 강의를 진행한 것은 수강생들이 강의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강의기법(가폭-개선사항)

▶ 분위기 환기를 위한 강의기법 활용이 필요

- 똑같은 톤의 어조로 조용하게 강의를 하니, 처음에는 집중하며 듣던 교육생들이 강의 중반부터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강의도중에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강의기법이 필요 함. 예를 들어, 가벼운 체조를 하면 좋을 듯함.
- 정서적인 안정이 부족한 교육생이므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강의 도중에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강의기법이 필요 함.

▶ 강의효과 증진을 위해 영상활용을 제안

- 영상이 가진 힘이 있고 또한 수강생이 노인인 점을 감안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영상을 틀고 갔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보임.
- 동영상 활용하면 이해에 도움이 되는데 활용이 되지 못해 아쉬움.
- 만약 환경이 된다면 다음 강의에서는 시청각 즉, 동영상도 사용해 보길 추천
- 강의 내용을 확장해서 사고할 수 있는 해당 동영상을 추가하는 것도 좋을 듯 싶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강의기법(가폭-개선사항)

▶ 교육상황을 고려한 강의기법의 활용으로 참여를 증진시킴

- 교육대상이 51명 대규모 집단 강의에서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질의응답, 가족화그리기 활동은 뒤에 있는 교육생이 배제될 수 있음. 전체 거수방식 표현으로 전체 교육생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제안 함.
- 교육대상과 교육인원에 따라 간단한 토론주제를 제공해서 직접 논의하게 하는 것도 좋음.

▶ 강의매체의 효과를 고려한 사용

- 예시가 다소 부족하고 피피티의 글씨가 지나치게 많으며 캡처 사진이 매우 어두워 가독성 부족.
- ppt, vod 제작 및 활용 등의 개선이 매우 필요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교육 모니터링 지표 IV

강사의 태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강의는 고지된 시간(수업)을 지키며 진행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2) 강사로서의 복장 및 태도가 적절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3) 강사의 발음, 속도, 목소리는 적당했다.	⑤	④	③	②	①
4) 강사의 시선처리는 적절했다.	⑤	④	③	②	①

- *교육대상의 반응과 소통 등 상호작용 중요
- *교육내용 뿐만 아니라 강사의 태도에도 성평등, 인권 관점 반영되어야

강의태도(성폭-좋았던점)

▶ 학습자를 배려하는 태도

-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기에 반복적으로 교육의 핵심을 말씀하셔서 좋았음. 어르신들이기에 짧고 명료하게 말씀하셨고, 사례도 적절하였음.
- 노인을 존중하는 언어를 잘 사용하였음.

▶ 차분하고 안정된 강의 진행

- 온화하고 친절한 느낌으로 강의 진행
- 차분하고 안정된 어조와 공감감이 느껴지는 태도로 강의하여 수강생의 몰입도와 신뢰도가 높음.
- 단정한 복장과 웃는 모습으로 편안하게 강의하였음.

강의태도(성폭-좋았던점)

▶ 열정적이며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강의

- 열정적인 태도로 강의를 진행함. 교육대상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함.
- 강사의 솔직담백한 태도가 강의 초반 교육생과 친밀감을 형성하여 강사에게 호의적인 분위기를 형성함.

▶ 학습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

- 강의를 진행하는 내내 밝은 미소를 유지하므로서 강의 전체가 무겁지 않게 진행
- 교육생의 연령 등을 배려하며 강의를 하였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강의태도(성폭-개선사항)

▶ 학습자와 소통하고자 하는 태도 증진

- 학습자에게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
-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 없었으며 질문을 3번 이상하여 부적절
- 대형 강의일수록 정보와 교감할 수 있는 사전 준비가 필요

▶ 학습자들이 강의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필요

- 강의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습자들이 수업을 방해함. 무엇보다 사전에 수업 태도에 대한 사항들을 고지하도록함.
-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강사를 쳐다보고 앉도록 해야 하며, 교육이 잘 진행 되도록 당부하고 중간 중간 교육생의 동향을 살펴 집중하도록 해야 함.

▶ 강의 중 사용하는 용어와 말에 대한 습관 점검

- 억양이나 강의하는 말투가 세련된 느낌이 부족함. 강의도중 '정말'이라는 군소리가 반복 표현되어 귀에 거슬림
- 수강생이 노인이기 때문에 '스킨십' 같은 외국어 사용보다는 노인들에게 좀 더 익숙한 단어 선택을 하면 좋겠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강의태도(가폭-좋았던점)

▶ 편안하게 강의를 진행

- 초등학생 대상 강의를 많이 진행해 보신 노하우가 잘 묻어나는 강의였음. 목소리 크기, 톤, 시선, 몸짓 등 학생들의 관심과 반응을 유도하는 좋은 스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음. 강사의 태도가 좋아 무거운 주제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음.

▶ 학습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

- 교육대상자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호흡하는 능력이 뛰어나신 것 같음. 중간 중간 교육대상자들의 질문을 토론으로 이어가며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주시는 부분이 인상 깊었음.

▶ 자신감과 전문성이 돋보이는 태도

- 오프닝부터 친근하게 접근한 점이 좋았음.
- 한 자리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이동해 뒤에 앉은 교육생들에게도 골고루 시선이 갈 수 있게 한 점이 좋았음.
- 본 강의는 '여성과 사회' 수업시간에 특강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성폭력예방교육이 진행되는지 모르는 상태여서, 강사가 당황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차분하게 강의를 진행하였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강의태도(가폭-개선사항)

▶ 강사로서 전문성을 확립하는 태도 지향

- 학생들을 등지고 강의하기보다는 학생들과 아이컨택이 될 수 있도록 프리젠테이션하는 앞 자리에서 강의하는 것이 좋겠음.
- 줄곧 한 곳에 서서 강의하기보다는 질문이나 참여를 유도할 때 청중 가까이로 이동하면서 진행하면 친근감 있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음.
-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가 복장이므로 세미정장을 권장함.

▶ 자세와 어투에 대한 세심한 선택 필요

- 오른쪽 팔을 교탁에 짚거나 기댄 자세가 강의 내내 관찰 됨. 기댄 팔에 체중을 싣고 강의를 진행하는 자세는 개선이 필요함.
- 과거의 근무지라 친근감이 있더라도 강의 도중 반말을 쓰는 것은 지양해야겠음.
-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보다는 '..입니다, ..여야 합니다.'로 변경
- 자식 또래의 학생이지만 반말은 지양하는 것이 필요함. 어린 학생이라도 경어를 사용해주면 학생들이 존중 받는 느낌과 함께 강사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갈 수 있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교육 모니터링 지표 V

강의효과 및 만족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강의가 교육생의 의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2) 교육생의 교육 참여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⑤	④	③	②	①

인식(태도) 변화, 폭력예방 실천 동기부여가 중요
→ 강사는 폭력예방 퍼실리테이터!

강의효과제고방안(성폭)

- ▶ 강사의 강의내용에 대한 전문성 확보
 - CPTED와 같은 전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좀 더 심화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함. 강의자의 충분한 이해가 없는 지식은 오히려 학습자의 관심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우리의 강의는 새로운 지식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함.
- ▶ 적절한 강의분량과 선별적 제시
 - 너무 많은 종류를 언급하기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이슈를 선택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사례, 해설, 가이드라인을 설계하여 구성하면 더욱 효과적인 강의를 될 것임.
- ▶ 학습자와 요구를 수용하고 소통하는 강의 진행
 - 교육대상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료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질문에 대한 교육대상자의 반응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강의효과제고방안(가폭)

- ▶ **폭력예방에서의 역할 수행에 대해 명확한 설명**
 - 강사가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및 학교, 경찰 등 신고의무자 교육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전문가로서의 활동도 활발히 할 것을 기대함.
- ▶ **대상에 적합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진행**
 - 아동 대상 교육은 가정폭력의 개념 및 도움 요청하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바람직하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힘의 불평등에 대한 것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움.
 - 성인 대상교육에 적합한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내용 및 방법으로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 ▶ **구체적인 사례제시 및 설명이 풍부한 강의진행**
 - ‘가정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교사의 대처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제시 및 그 언급이 풍부해야 함. 가정폭력예방에 관한 수강생의 인식 및 적극적인 실천을 견인하는 계기가 필요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교육 모니터링 지표(분야별)

분야별 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교육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2) 성폭력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을 소개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을 소개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3) 성폭력 실태, 사례 및 발생원인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성인지 관점에서 가정폭력 예방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4)적절한 사례를 사용하고 시사점을 명확히 전달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5)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을 잘 제시하고 있다.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을 잘 제시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강의모니터링 시사점(성폭)

■ 명확한 개념 및 강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 전달

- ➔ 강의내용 선별 및 구성 시 자신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경우 강의효과가 저하되고 개념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한 채 강의를 마무리 되는 상황이 발생
- ➔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구체적 설명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숙지가 필요함.

■ 성인권의식 및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 노력이 필요

- ➔ 성폭력발생원인 설명에 있어 인권차원의 접근이 학습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강사자신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강의모니터링 시사점(성폭)

■ PPT활용 및 영상 활용능력 향상

- ➔ 거의 모든 강의에서 PPT활용이 기본이 되고 있으나, 가독성이 저하되거나 맥락에 적합하지 않은 PPT사용이 강의효과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 ➔ 강의내용의 핵심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미지를 부각하는 PPT 제작으로 강의효과를 상승시키는 부분을 고려해야 함.

■ 학습자 맥락에 적합한 강의방법 선택 및 활용

- ➔ 대부분의 전문강사들은 다양한 강의기법과 학습매체(자료)들을 활용하여 다채롭고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하지만, 학습자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준비한 모든 자료를 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강사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이끌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의방법 활용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강의모니터링 시사점(가폭)

- 가정폭력예방을 위해 구체적 역할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 ➔ 가정폭력예방을 위해 교육생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 폭력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실천의지를 향상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교육의 실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 강의주제의 초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 ➔ 가정폭력강의에 있어 부부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다양한 폭력의 유형과 사례에 대한 설명을 복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 ➔ 다양한 폭력의 유형을 설명하되 대상에 적합한 주제를 일관성있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강의모니터링 시사점(가폭)

- 아동 및 노인학습대상자 강의 시 쉬운 내용으로 구성
 - ➔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아동 및 노인학습자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강의의 효과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함.
 - ➔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개념에 대한 충분한 설명, 영어사용 보다는 우리말 사용, 어려운 용어의 사용 자제,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제시 등 쉬운 내용으로 강의를 구성하도록 해야 함.

- 학습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강의 진행
 - ➔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에 대한 사례를 제시할 때 다양한 가족 구성원으로 구성된 가족의 유형을 설정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 일반적 가족 유형인 엄마, 아빠, 자녀로 구성된 가족 및 한부모가정, 조부모가정 등 다양한 가족유형을 제시하여, 폭력발생 빈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강의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강의모니터링 시사점(가폭)

■ 젠더불평등과 성인지관점에 기반한 강의 진행

- ➔ 가정폭력예방교육 시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에 대한 주제로 강의가 빈번하게 실시되고 있음.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에 관한 주제로 강의가 실시된다고 하여도, 가정폭력의 충분한 이해를 위해 젠더불평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 ➔ '강력범죄자의 경우 어린시절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학대를 예방하자'는 등의 논리적 개연성이 드러나지 않는 불분명한 설명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가정폭력이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접근

- ➔ 가정폭력이 가족 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여 설명 시 학습자들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 ➔ 단순하게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만을 강조할 경우 설득력이 저하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 교육대상 선정 : 전략집단 선정(지역특화)

교육마케팅 전략 수립, 지자체 및 지역자원 활용 등

■ 교육 기획 : 성평등지수, 안전체감도 등

■ 교육내용

■ 강사선정 : 대상특화

■ 강의 모니터링

■ 교육효과측정 및 환류방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GENDER EQUALITY

감사합니다.

FAMILY EQUALITY

SAFETY EQUALITY

HEALTH EQUALITY

WELFARE EQUALITY

WORKPLACE EQUALITY

DECISION MAKING EQUALITY

CULTURE INFO EQUALITY

EDUCATION EQUALITY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가정폭력·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

2017년 경기남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통합 워크숍 자료집

지역사회 여성 안전정책의 쟁점과 사례

| 강은영 선임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지역사회 여성 안전정책의 쟁점과 사례

강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지역사회 여성 안전정책의 추진방향

1)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가. 지역 거버넌스와 지역사회 안전

우리는 지금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전개되는 글로컬리즘(Glocalism)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곧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되고,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 때 지방정부의 경쟁력의 핵심 요소는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자치, 즉 지역 거버넌스(local governance)¹⁾이다.

지역 거버넌스는 범죄예방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함의점을 가진다. 산업화와 도시화, 정보화 등의 영향으로 현대 국가에서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되었으며, 지역사회의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폭력과 범죄로부터의 안전’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sustainable) 지역공동체’는 21세기 국가사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같은 경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방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범죄예방전략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 범죄예방전략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의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 범죄피해자들에게 개인단위 혹은 가구단위의 범죄예방활동 책임을 부과하였다²⁾. 그러나 지역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출발점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 단위의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른 다양한 정책분야와 마찬가지로 범죄문제 역시 지역사회를 기초로 문제해결방식이 모색되어야 하며, 지

1) 지역 거버넌스는 지방정부와 지역 내의 다양한 자발적 조직이 포함되는 정책 네트워크를 말하며, 지방정부에 의한 자치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지역 거버넌스는 개인의 참여뿐만 아니라 단체나 결사, 기관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시민사회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방법으로, ‘지역사회의 의사결정권한 공유’, ‘지역주민들의 자치권과 독립성’, ‘시민참여를 통한 공공재 개발’ 등의 특성을 가진다. 궁극적으로 지역 거버넌스가 추구하는 목적은 민주화와 행정능률성 제고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주민의 효용 즉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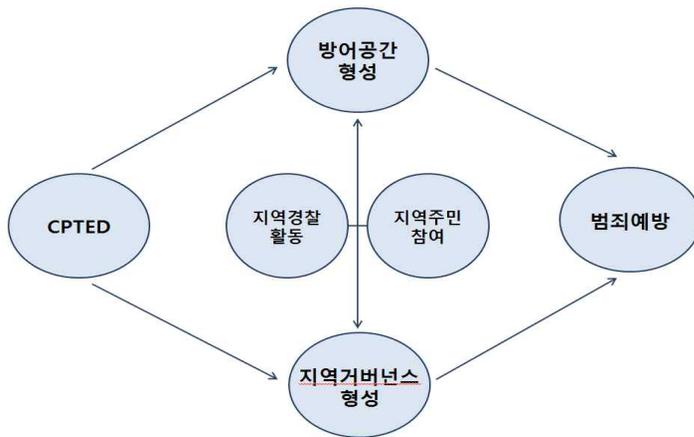
2) 예를 들어 전통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은 아동에게 범죄예방의 부담을 과도하게 지워왔다. 실제 대부분의 사건은 아동의 통제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아동에게 어른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요구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일이다. 아동성폭력은 아동이 아닌 성인의 책임이며, 나아가 지역사회, 다시 말해 지역사회 구성원, 기관, 조직, 사회구조 전체의 책임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아동성폭력을 예방하고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확보할 책임을 가진다. 아동성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역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다각도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국가 차원의 범죄통제와는 달리 지역 거버넌스 차원의 범죄통제는 지역사회에서의 의사결정권한을 공유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치권과 독립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안전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련의 과정을 제공하는데 목표를 둔다. 결국 지역 거버넌스 차원의 범죄통제의 핵심요소는 ‘지역주민 참여’, ‘지역사회의 책임감’, ‘지역사회 유대 강화’, ‘파트너십’ 등이라 할 수 있다.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범죄통제 전략은 지역사회의 범죄발생과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범죄 및 안전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시키고, 범죄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인식을 강화시키며, 사회적·물리적 무질서를 감소시키고,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 지역 거버넌스와 셉테드(CPTED)

셉테드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범죄발생을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셉테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순히 CCTV 및 조명 설치를 통한 기계적 감시강화와 물리적 환경 개선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더 나아가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통하여 안전한 환경을 영구히 지속시킬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 Crowe는 셉테드 전략이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설계하고 관리함으로써 범죄기회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화적 측면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들의 범죄동기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서 셉테드의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협의적 개념의 셉테드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구성요소 뿐만 아니라 광의적 개념인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 차원의 사회적 구성요소들이 상호 결합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셉테드를 지역사회에 적용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문제는 물리적 설계 및 유지관리를 어떻게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 연결시키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셉테드가 특정 지역사회에 적용되어 범죄예방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물리적 수단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를 지원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지역사회 범죄통제 거버넌스(local crime control governance)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셉테드는 지역의 물리적 환경의 변화 및 개선을 통하여 지역사회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고양시키는 등 지역사회 범죄통제 거버넌스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를 위해 셉테드의 전략은 물리적 구성요소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성요소까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 때 사회적 환경은 지역주민간의 교류,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주민간의 동질성 및 만족감, 거주자 참여활동 등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구성요소들은 지역사회 치안차원의 거버넌스 능력(governability)을 향상시켜주며, 특히 이 중에서도 거주자 참여활동은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공동공간과 같은 공용공간에 대한 주인의식 향상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림 1> 셉테드(CPTED), 지역 거버넌스, 지역주민참여

*김영제(2007), CPTED와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p.52, 수정

2) (여성)지역주민의 책임감과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안전은 거주자의 책임감(residents' responsibility)과 지역주민의 참여(residents' participation)에 의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 특히 여성은 지역사회 안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안전사업 서비스의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서비스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여성안전은 단순히 CCTV 등 기계적 감시나 물리적 측면의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역사회의 유대, 응집력, 의사소통, 집합효율성, 비공식적 사회통제 등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내의 범죄에 대한 통제력은 지역주민간의 유대와 지역사회 조직에의 참여를 통해 증대되며, 결국 지역사회 유대와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범죄억제의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주민들간의 인적 교류와 결속이 높은 지역일수록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강하고, 범죄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유대가 강할 때 사람들은 보다 쉽게 외부인을 알아볼 수 있고, 범죄피해를 막는 보호행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지역사회의 통제력 수준이 향상된다.

3) CCTV 등 기계적 감시만으로 여성안전은 확보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하여 기계적 감시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이다. 이같은 기계적 감시가 지역주민들의 범죄체감율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기계적 감시가 실질적인 범죄예방효과가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서구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은 CCTV가 범죄자 검거에는 효과가 있으나 범죄발생 자체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즉 사전예방 효과는 분명하지 않으나 사후대처 효과는 명확하게 입증된다는 것이다. 또한 통합관제센터의 경우에도 모니터에 나타난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행동만을 관찰하여 그것이 일상적인 행위인지 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둘째, CCTV를 통한 범죄예방전략은 범죄자들이 이성적 존재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즉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합리적이며 범죄를 행할 때 따르는 위험(risk)이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CCTV가 위험인식을 고양시켜 범죄실행을 억제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범죄자 중 일부는 합리적 선택을 하지 않고, 특히 충동적 범죄자나 싸이코패시 등 인격장애자의 경우에는 CPTED의 기계적 감시 전략이 무력할 수밖에 없다. 셋째,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기계적 감시, 나아가 CPTED 전략 전체의 가장 큰 한계점은 CPTED 전략이 사적 공간에서, 아는 사이에 발생하는 범죄, 즉 가정폭력이나 가정내 혹은 옥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들어 국가정책과 대중매체의 보도관행은 여전히 여성폭력범죄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공적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에 의해,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부부강간, 데이트강간 등에 대한 국가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고, 2000년 이후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의 많은 부분이 아동성폭력에 집중되는 상황에서도 친족성폭력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터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2010년을 전후하여 추진되고 있는 여성폭력 관련정책에서는 이같은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관찰된다. CPTED의 적용(서울시 여행길 사업, 과천시 신도시 건설, 서울시 저소득층 지역사업 등),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 각종 안전지킴이 운영 등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매년 엄청난 예산을 집중하고 있으며, 여성폭력문제의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 역시 등하교길 안전지도사업, 아동안전학교사업,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사업 등을 통해 가정 밖에서 발생하는 여성·아동 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출발점 자체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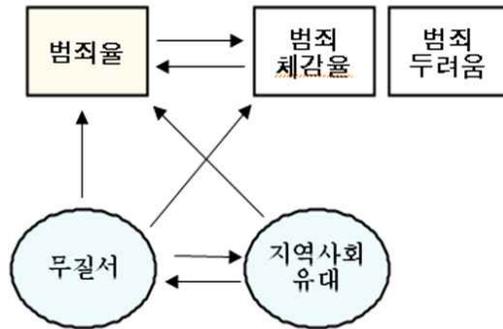
4) 지역사회 내 사회적·물리적 무질서 관리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내 무질서³⁾의 증가는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이웃공동체를 약

3) 무질서(disorder)란 특정 공간의 사회적, 물리적 상태(conditions)와 사건(events) 양자를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무질서는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의 두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사회적 무질서(social disorder)’는 공공장소 주취, 길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 마약 사용, 이웃 소란, 구걸행위, 성희롱, 거리 매춘 등을 말하고, ‘물리적 무질서(physical disorder)’에는 공공기물 손괴, 리터링, 쓰레기 무단투기, 공사 및 폐가 방치, 유기견 문제 등이 포함된다.

화시켜, 결과적으로 ‘범죄’를 증가시킨다.

지역사회 무질서가 ‘지역사회 범죄발생율’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주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범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무력감과 무능감을 느끼게 되고,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증가하며, 자신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도 구하러 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 둘째,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범죄두려움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들이 방어할 책임을 느끼는 공간의 범위가 협소해진다. 지역주민들이 인식하는 영역성이 자신의 집과 가족에만 한정된다면(‘영역성 약화’)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지역사회내 사건에 대해 무관심해지고(‘감시 약화’), 쉽게 외부 침입자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셋째, 지역주민의 범죄 두려움과 범죄 회피행동이 증가하면 할수록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약화되고, 무질서가 더욱 증가하며, 잠재적 범죄자들이 보다 쉽게 범죄행위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 범죄율, 범죄두려움, 무질서, 사회유대

5)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서구의 지역사회안전 프로그램들은 분석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몇 가지 단계를 거친다. ① 지역의 범죄 및 무질서 문제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실시하고, ② 지역협의체는 주민 및 각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③ 지역사회내 각 기관과 단체들은 수립된 전략을 실천하고, ④ 전략수행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점검, 평가하는 단계가 그것이다

지역사회의 안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정기적으로 진단, 조사하는데서 출발한다. 지역내 ① 범죄위험공간, ② 범죄피해 취약집단, ③ 사회적·물리적 무질서, ④ 지역주민의 두려움 수준을 조사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안전은 '객관적 안전'과 '주관적 안전'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안전(지역내 범죄발생율) 확보만이 아니라 주관적 안전(위험) 즉, 지역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두려움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지역공동체 차원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범죄두려움은 실제 발생하는 범죄피해보다 더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범죄두려움 수준은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행위패턴에 영향을 미친다.

7) 지역사회 여성안전 프로그램은 통합적 성격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매년 여성폭력 관련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성폭력추방주간, 가정폭력추방주간, 성매매추방주간 등을 맞아 다양한 홍보 캠페인 역시 진행한다. 그러나 단발적인 교육, 캠페인 등의 행사를 통하여 목표로 하는 성과를 효과적으로 얼마나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자체는 중앙부처의 모든 정책서비스가 집약되어지는 곳이며, 따라서 여성 안전사업은 여성관련 프로그램의 통합체로 진행되어야만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여성 안전프로그램은 단순히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그 세부 사업으로 지역사회 안전진단을 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의식과 성인지 의식을 고양하는 등의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8) 범죄피해 고위험군 아동과 여성에 대한 차별화된 보호전략이 필요하다.

홀로 남은 아동, 부녀가정, 조손가정, 여성 1인 가정, 다문화가족, 빈곤가정 등 범죄피해에 취약한 집단에 대한 보다 강화된 범죄예방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CYs-Net, 교육청 및 학교, 여성폭력관련 민간기관 등의 협력체계를 통해 종합적인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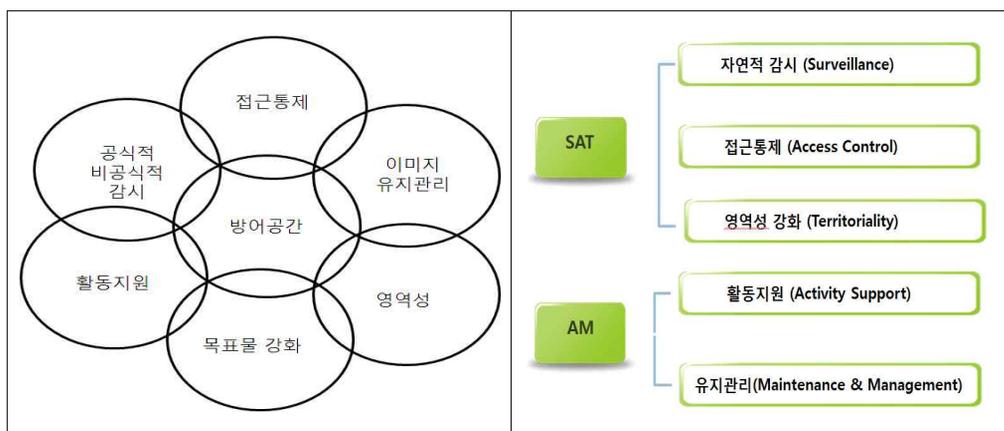
2. 지역안전프로그램과 CPTED

범죄예방 환경설계란(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서구사회에서 가해자 엄벌이나 경찰활동을 통한 범죄예방의 한계에 봉착하자 지역사회의 공간구조와 관리방식의 변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안전(safety)을 확보하고자 대두된 것이다. CPTED는 "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Design)와 효과적인 사용(use)이 범죄의 두려움과 발생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

는 기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범죄예방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1) 1세대 CPTED⁴⁾

- 목표물 강화(target hardening): 범죄에 대한 물리적 장벽을 설치, 강화하거나 혹은 범죄의 표적이 되는 대상물의 약점을 보강함으로써 범죄의 실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
- 접근통제(access control): 인증된 사용자들이 공간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동시에 공간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의 접근을 억제시키는 것
- 감시(surveillance): 감시 기회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건물이나 시설물, 그리고 사람 등을 배치하고, 침입자가 발생했을 때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어 지역주민들이 이웃과 외부인의 행동을 쉽게 인지할 수 있고 범죄의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를 제지하기 위한 원리
- 영역성(territoriality):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장의 영역을 설정하여 주는 것
- (이미지) 유지관리((image) maintenance): 시설물이나 공공장소가 처음 설계된 형태를 유지하고, 설계 목적에 부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함으로써 사용자의 범죄나 일탈행위를 억제시키는 것
- 활동지원(activity support): 활동지원은 공공장소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거리의 눈(eyes on the street)’에 의한 자연스러운 감시를 강화하는 원리



<그림 3> 방어공간의 구성요소

4) 강은영 외,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세부과제 1 학교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의 내용을 부분 인용함

2) 2세대 CPTED: 물리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의 통합

2세대 CPTED는 기존의 CPTED가 갖는 한계에서 출발한다. 서구의 일부 국가에서 CPTED 연구가 확산되면서 도시나 건축물 설계와 같은 물리적 변화나 CCTV 등의 기계적 감시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 생겨났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CPTED에 실망하고 이를 비판하는 논의도 진행되었는데 그 이유는 1세대 CPTED가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켜서 범법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나 실제 범죄는 매우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실행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물리적 요소의 변화만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1세대 CPTED가 영역성과 방어공간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었다면 2세대 CPTED는 개념을 확장하여 지역사회 내에 긍정적인 행동방식 및 이웃공동체에 대한 기준이 공유되지 않는다면 지역 주민들은 영역성의 느낌을 강하게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방어공간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은 실제로 이웃과 지역내 공간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관심의 대상은 공공장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일하고 놀고 생활하는 지역내 모든 공간을 포괄하여야 한다. 즉 범죄예방의 대상은 지역사회 내 사적 영역에 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 지역의 규모, 밀도, 거주지 유형(size of the district, density, and differentiation of dwellings): 공간의 크기는 거주자들의 소외의 정도에 영향을 미침. 네덜란드의 “Gruenfeld 원칙”에 따르면 지역사회가 100개 가구, 300개 아파트 동이 넘을 때 지역주민들이 서로 알기 힘들고 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3000명을 넘어서는 학교라면 구성원 서로를 알기 어려움(Gruenfeld 원칙)
- 도시의 만남 공간(urban meeting places):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 만남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빈공간이 생기고 위험한 공간이 발생
- 청년 클럽(youth clubs): 청년클럽의 활발한 활동은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건축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 청년클럽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후원, 그리고 훈련받은 직원 등이 필요
- 거주자의 참여(residents' participation): 거주자 스스로가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생활에 참여하는 것
- 거주자의 책임감(residents' responsibility): 지역사회 거주자들은 자신의 이웃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만 함. 물리적 환경 변화보다는 범죄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에 주민이 참여하고,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노력이 범죄예방에 더 효과적

3. 지역주민 참여형 안전프로그램의 절차와 사례

1) 지역주민 참여형 안전프로그램의 유형과 절차

최근 지역사회 안전의 핵심적인 강조점은 지역사회 안전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에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경찰, 교정국 등 형사사법기관과 지역주민간의 파트너쉽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간의 파트너쉽을 구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간의 협력관계의 구축, 특히 문제해결 동반자관계(problem-solving partnership)이 중요하다. 즉 범죄예방은 시민참여의 증대나 자치적 주민감시제도의 개발, 그리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의 공동적인 치안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외국의 안전프로그램들을 분석하여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주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크게는 경찰 혹은 교정국과 같은 형사사법기관과 지역주민이 함께 진행하는 안전프로그램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함께 진행하는 안전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⁵⁾, 형사사법기관과 지역주민 공조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주요 활용내용에 따라 감시 및 신고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순찰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진다.

지역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분석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몇 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 단계로 지역의 범죄 및 무질서 문제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실시하고, 두 번째로 지역협의체는 주민 및 각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세 번째로 지역사회 내 각 기관과 단체들은 수립된 전략을 실천하고, 네 번째로 전략수행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점검, 평가하는 단계가 그것이다.

결국 지역사회 안전강화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정기적으로 진단, 조사하는데서 출발한다. 진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지역 내의 ① 범죄 위험공간, ② 범죄피해 취약집단, ③ 사회적·물리적 무질서, ④ 지역주민의 두려움 수준 등이다.

2) 국외 지역주민 참여형 안전프로그램

가. 캐나다 교정국과 지역주민 파트너쉽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프로그램

5) 최근 등장한 거버넌스(governance) 관점은 경찰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과 연결되어져 논의되어져 왔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핵심적인 쟁점은 경찰서비스가 더 이상 경찰력에 의해 독점되지 않고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경찰활동은 조직간 커뮤니티를 통한 다자간 파트너쉽 관계를 형성하여 시민과 경찰과의 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재규정하고 다양한 정보를 가진 조직과 간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최선우 2001:17; 김영제 2007:45 재인용).

이 프로그램은 COSA(Circles of Support and Accountability)⁶⁾라 불리는 것으로 지역주민, 캐나다 교정국, 메노파 중앙위원회(NGO)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캐나다 전역, 영국, 미국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발적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교도소에서 석방된 성범죄자들을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해 고안된 프로젝트로 성범죄자가 출소하여 지역사회로 돌아오면 지역에서 선발된 약4-7명의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을 배정하여 자원봉사자들은 성범죄전과자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년간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사회복지, 고용, 주택, 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고 매일 혹은 매주 만남을 가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주민참여에서 결여되기 쉬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고 조언을 지원하고 조언한다는 점이다.

나. 경찰과 지역주민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프로그램: ‘이웃감시’ 및 ‘신고강화’

① 시민참여형 방법프로그램

경찰과 지역주민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프로그램은 여러 유형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시카고지역에서 시작된 CAPS(Chicago Alternative Policing Strategy)⁷⁾를 들 수 있다. CAPS는 지역주민과 시카고 경찰청, 시카고시, 시카고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범죄예방의 새로운 정책이다. 이 정책의 핵심은 문제해결모델로 시민자문위원회와 순찰구역별 시민자문위원회를 통해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있다. 지역별 시민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는 경찰책임자 및 실무자와 지역주민간의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 범죄현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치안계획과 전략수립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순찰구역별 주민회의(beat meeting)는 지역 도서관, 교회, 병원, 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회합을 개최하여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있다. 각 회의마다 평균 7명의 경찰관과 26명의 주민이 참석하고 있다. 주민회의는 모든 지역주민에게 공개되고, 경찰은 279개 순찰 구역 주민과 정기적으로 매달, 정해진 시간에 학교, 공원, 교회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모여 지역사회 안전에 대해 논의한다.

지역주민활동은 집회, 행진, 마약거래사이트 단속, 범죄신고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프로젝트는 1993년 시작되었는데 지역사회 범죄예방에서 지역주민 역할확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적극적인 홍보 전략, 언론 지원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② 이웃감시 프로그램

주로 미국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과 지방정부, 관할 경찰국 및 관련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내용은 평균 15가정에 하나의 조를 짜 이웃집단을 구성하는데 우리나라

6) www.csc-scc.gc.ca

7) portal.chicagopolice.org

라의 통, 반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들은 1달에 1번씩 모임을 개최하여 지역사회 문제와 관심사를 논의한다. 이웃의 유대를 바탕으로 미심쩍은 방문자나 현장을 발견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데 이를 Block Watch, Home Watch, Community Watch 등으로 부른다.⁸⁾

이 프로그램은 1960년대 말에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LA 경찰은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줄이기 위해 이웃감시 프로그램(Neighborhood Watch Program), 기초 차량순찰 시스템(Basic Car System) 등을 운영하였다.⁹⁾ 이웃감시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가진다는 점을 교육하고, 주민 스스로 범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범죄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범죄예방기법을 교육하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하나인 기초 차량순찰 시스템(Basic Car System)은 지역사회를 19개 지역으로 나누고, 19개 지역은 각각은 다시 8-10개의 차량순찰 구역을 설정하여 순찰차량을 배정한 후 지역사회 단체, 기업, 지역주민,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조를 이루어 24시간 순찰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팀은 3교대 6시간으로 나누어 근무하면서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서비스를 위한 순찰. 순찰팀에 배정된 경찰관은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지역에 익숙해지게 되며 지역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가장 먼저 대응하게 된다.

영국에서도 시민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모임을 조직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고 유인물을 나누어 보며 지역사회 문제를 토의하는 프로그램이 1982년 처음 시행되었다.¹⁰⁾

③ 좋은 이웃 프로그램

좋은 이웃 프로그램(GNP, Good Neighbours/Great Neighborhoods Program)은 여러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는 지역주민, 빅토리아 주 정부, 관할 경찰국 및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가정물품에 대한 기명표시, 사진촬영, 의심스러운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도록 주민교육, 주민의 방법의식 및 참여 강화, 이웃감시가 운영되는 지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설치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범죄예방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의견중재, 조정자, 자문가, 관찰자의 자격으로 이웃감시위원회 참여¹¹⁾한다.

캐나다에서는 지역주민과 지방정부, 경찰국 및 관련기관이 참석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의심스러운 사람, 행동, 차량을 경찰에 신고하고 주민파티/지역파티를 통해 좋은 이웃을 만나고 서로 이웃을 형성해, 지역 주민들이 서로 스케줄을 관리하여 이웃의 아이들을 등하교 시키거나, 이웃을 서로 지켜주고, 지역사회 중고장터를 열거나, 지역축제개최를 통해 궁극적으로 좋은 지역사회를 형성¹²⁾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eighbourhood Watch의 장이 되거나,

8) 이난우.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9) www.USAonwatch.org

10) 이난우.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1) www.aic.gov.au/media_library/publications/proceedings/15/dussuyer.pdf

12) Brampton Safe City. 2012 Annual Report. 2012

다른 지역사회 안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있다.

④ 학교안전 프로젝트(SSP, The Safe School Project)¹³⁾

학교안전 프로젝트 가운데 미국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 경찰국, 학교, 지역주민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고안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주변 감시 및 범죄환경 제거, 시민조직망을 구성하여 주민의견청취, 등하굣길 순찰, 휴가철 빈 주택보호 및 감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호주 빅토리아 주 경찰서와 지역주민이 협조하여 시행하고 있는 가정안전 프로젝트(Safety House Project¹⁴⁾)는 아동이 등하굣길에 위험한 상황을 직면한 경우,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한 집을 지정하고 이 집은 학교에 사전에 알려 학생들이 알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집주인은 아동을 보호하고 경찰출동 요청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와 유사하다.

⑤ 경찰체험 프로그램

경찰체험 프로그램은 여러 형태가 있다. Police Explorer Program¹⁵⁾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버링게임 시 경찰서와 보이스카웃에서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참여자 자격은 14세~21세 남녀 청소년(단, 경찰체포경험전무, 학교성적 GPA 2.0이상, 1개월에 16시간 봉사활동한 자)으로 법집행경연대회, 할로윈 안전길, 크리스마스 점등행사 등 지역사회에서의 경찰 역할과 지역 주민의 요구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캘리포니아 밀브래 시 경찰서와 보이스카웃이 함께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참여자 자격을 14세 청소년(단, 중한범죄경력전무, 매월16시간 봉사경력, 평균C학점이상유지한 자)에 한정하고 있는데 일요일 오전7시~오후6시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1년마다 법집행 관련 대회 참여 또는 관람하며, 매월 2회씩 정기모임을 갖고 교육(보고서 작성, 약물복용 등)과 훈련(범인체포술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⑥ 그 밖의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밀브래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낙서감소 프로그램¹⁶⁾은 밀브래시 경찰서, 레크레이션센터, 마테오 카운티, 중고등학생 등이 참여하여 담장, 벽, 페인팅, 화학적 제거 등의 기술을 통해 기존의 낙서를 제거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안전진단 프로그램¹⁷⁾은 캘

13) 조병인. 경찰활동과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14) 조병인. 경찰활동과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15) 강맹진. 미국의 지역사회경찰활동 프로그램 운용사례: 캘리포니아주 산마테오 카운티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0권 2호. 2010, pp. 306-319.

16) 강맹진. 미국의 지역사회경찰활동 프로그램 운용사례: 캘리포니아주 산마테오 카운티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0권 2호. 2010, pp. 306-319.

17) 강맹진. 미국의 지역사회경찰활동 프로그램 운용사례: 캘리포니아주 산마테오 카운티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0권 2호. 2010, pp. 306-319.

리포니아 밀브래 시와 밀브래시 경찰서,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강도, 절소 감소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공동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방법대상에 대한 안전을 진단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어린이 보호¹⁸⁾ 프로그램은 밀브래시 경찰서, 주민들이 참여하여 익명으로 어린이에게 접근하여 음란물 전파, 유혹행위 등을 단속하고, 인터넷사용요령 홍보, 인터넷상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행동유형을 알림으로써 어린이 보호를 하고 있다.

마약남용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DARE(Drug Abuse Resistance Education)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 가운데 미주리 주 경찰과 학교가 협동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제복 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정규 교과과정 수업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흡연, 알코올, 약물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의사결정 방법, 또래 압력에 저항하는 기술, 마약사용을 대체할 만한 대안적 활동을 가르치고 있다.

National Night out Day¹⁹⁾는 미국 전역에서 경찰, 지역주민, NGO 등이 협조하여 8월 첫째주 화요일을 지정(텍사스 경우 10월 첫째주 화요일)하여 약물예방, 마을감시, 이웃감시 등 커뮤니티 범죄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운동으로 1984년 시작하였다.

다. 경찰과 지역주민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프로그램: '순찰활동'

① 영국의 순찰보조활동

영국에서 경찰과 지역주민의 협동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프로그램은 경찰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수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특징이다.

특별경찰(Special Constables)²⁰⁾은 영국에서 경찰과 함께 일반 시민들이 시간제 자원봉사경찰관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경찰제복을 입고 근무한다. 참여자격은 18세 3개월 이상 50세 이하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한 달에 최소 16시간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주로 경찰서에서 정규 경찰관과 함께 근무하면서 방범업무를 돕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수사나 경비에도 동원되며, 경찰관이나 다른 특별 경찰관과 팀을 이루어 도로나 차량 순찰 수행, 방범, 일제검거, 긴급출동, 영장 집행, 대규모 행사나 축구경기, 미아 및 가출자 수사, 교통사고 처리만이 아니라, 청소년 비행, 주거 침입절도, 폭력, 손괴 등의 범죄예방활동에도 참여하는 본격적인 프로그램이다.

근무방식은 매주 원하는 시간대에 근무하기 때문에 정해진 교대방식은 없고 수갑, 측면 핸들봉, 삼단봉, 가스 스프레이 등을 착용하고, 방탄조끼 및 호신장비를 지급받는다. 2011년 기준으로 18,0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무급 자원봉사였으나 2002년 이후 수당을 지급하고

문지 제10권 2호, 2010, pp. 306-319.

18) 강맹진. 미국의 지역사회경찰활동 프로그램 운용사례: 캘리포니아주 산마테오 카운티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2호, 2010, pp. 306-319.

19) natw.org

20) 조병인. 『지역공동체 내 범죄예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있다.

치안보조관(Police Community Support Officer: PCSO)²¹⁾은 2002년부터 9월부터 시작된 정규 경찰 보조제도로 범죄다발지역이나 우범지역에서 오전 8시에서 밤 10시까지 교대제로 근무하면서 범죄예방 및 범죄진압 활동을 하고 있다. 경미한 반사회적 행위 대한 스티커 발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단속(주류 몰수), 청소년 흡연 단속(담배 몰수), 생명이나 중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주거내 진입 및 주거수색,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차량의 압수, 방치 차량의 제거, 경찰관과 합동 도로검문,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 30분간 용의자 구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치안보조관은 경찰관의 1/3-1/2 수준의 보수를 받는 계약직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15,820명이 활동하고 있다.

공인 지역안전관(Accredited Community Safety Officers: ACSOs)²²⁾은 영국 지역경찰과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다. 2002년부터 전국 43개 자치경찰청의 경찰청장이 지역안전공인제도(Community Safety Accreditation Scheme: CSAS)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 제도는 경찰청장이 자치단체의 근린방범원, 쇼핑센터의 민간경비원, 스포츠 경기장의 보안인력들에게 낙서행위, 오물투기, 차량방치, 반사회적 행위를 단속할 권한을 공인하여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인지역안전관은 비행청소년과 부모에게 노란색 경고장을 발급하여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리고 비행을 방지하는 옐로우 카드제도(yellow card scheme)를 시행하기도 한다.

근린방범원(Wardens)²³⁾ 제도는 2000년에 환경교통지역부와 내무부가 공동으로 시작한 제도로 2002년 이후 약7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CCTV 설치나 범죄, 지역사회 무질서 및 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교부금 지원을 지자체의 입찰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범죄율, 무질서 수준, 빈곤 정도, 도시환경의 낙후성 등을 심사. 심사결과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예산을 교부하고, 근린방범원을 2-10명 이상 배정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주거환경개선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근린방범원은 제복을 착용하고 주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방범순찰, 환경관리(경미하게 파손된 공공기물 보수, 낙서 및 오물 제거, 조경작업 등), 단순 교통통제, 경찰 및 시청에 정보제공, 범죄피해자나 범죄피해 우려 주택에 대한 방문, 이웃 다툼 및 반사회적 행위 대응을 담당하며, 눈에 쉽게 띄는 곳에 있어 지역주민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접근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② 안전도시 프로그램

안전도시 프로그램(Safer Cities Program)²⁴⁾²⁵⁾은 영국 내무부 범죄예방부서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보호관찰소, 경찰, 기업 및 경영주, 소수인종조직, 지역사회조직 등 경찰과 지역사회가 상호협력하여 실제 발생율이 높은 범죄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범죄예방활동 전개하고 지역

21) 조병인. 『지역공동체 내 범죄예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22) 조병인. 『지역공동체 내 범죄예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23) 조병인. 『지역공동체 내 범죄예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24) 조병인. 경찰활동과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25) www.unhabitat.org

주민의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범죄율이 높은 20개 이상 도시지역에 이웃감시활동조를 구성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1988년 시작되었다.

③ 뉴욕의 자원봉사 보조 경찰제도(Auxiliary Police)²⁶⁾

미국에서는 뉴욕주 경찰이 지역주민과 함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순찰활동 등에 참여하는 자원봉사 보조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대상은 만17세 이상으로 건강하고 마약범죄 관련 전과가 없고, 미국 영주권을 가진 영어가능자가 대상이 된다. 특히 여성들의 참여가 돋보이는 제도로 참여하는 시민들은 상인, 간호사, 경비원, 교사, 학생, 컴퓨터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직업과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참여자는 보조경찰 제복을 입고, 도보순찰 및 자동차 순찰, 자전거 순찰을 수행하며, 해당 경찰 부서에 눈과 귀 역할을 한다. 주거 및 상업지역, 지역축제나 퍼레이드, 콘서트, 거리전시회 순찰, 공원 순찰, 지하철 출입구 및 지하철패스 자동구입기 구역 순찰, 교회 및 주택 순찰, 교통통제 등을 담당하고 있다.

④ 시민경찰학교

시민경찰학교는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플로리다 주 지방 경찰국에서는 CPA(Citizen's Police Academy)²⁷⁾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이 13주 동안 매주 1회 3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현장실습(경찰관과 함께 인근지역 순찰 등)을 한 후 활동하는 제도이다. 교육내용은 교통법규집행, 총기사용, 비행청소년 문제 및 경찰관의 안전 등 시민의 주관심사부터 경찰활동 전반에 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 및 교육을 하고 있다. 이는 영국의 Night School에서 착안하여 체계화한 것으로 1980년대 후반에 시작하였다.

COPS(Community-Operated Police Substations)²⁸⁾는 미국 워싱턴 주 스포캔 시 경찰국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활동이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훈련후 시민방범순찰대를 조직하여 학교주변 및 주택가 순찰활동, 불법주차단속 및 마약밀거래를 단속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밀브래시 경찰서에서는 경찰예비대 프로그램²⁹⁾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이 경찰의 업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찰예비대는 10명 내외 자발적 시민들로 구성되어 교육과 훈련을 받고, 관내현장 순찰 및 풀타임 경찰관의 업무보조를 수행하고 있다. 단계별(레벨1, 레벨2) 업무특징이 있는데 1단계(레벨1)는 기본 경찰교육 이수, 현장 훈련교육으로 이루어지고 2단계는 (레벨2)는 1단계에 산마테오 대학의 경찰업무 관련 프로그램 교육 이수가 포함된다.

26) 조병인. 『지역공동체 내 범죄예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27) 조병인. 『지역공동체 내 범죄예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28) 조병인. 『경찰활동과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29) 강맹진. 미국의 지역사회경찰활동 프로그램 운용사례: 캘리포니아주 산마테오 카운티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2호. 2010, pp. 306-319.

⑤ 자원봉사 및 합동순찰조직

미국에서 자원봉사 및 합동순찰조직은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다. SNP(Save a Neighborhood Program)³⁰⁾는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경찰국, 42개 시민조직, 6개 지역사회 공공기관, 10개 NGO이 함께 6개 중점감시지역을 선정하여 도보로 지역주민과 경찰이 합동 순찰조를 편성하여 집 중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이 밖에 빈집철거, 잡초 및 쓰레기 제거, 담장보수 등 도시환경 정화사업 도 함께 하고 있다.

밀브래시 자원봉사 프로그램³¹⁾은 캘리포니아 밀브래시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대상은 밀브래시 주민이거나 가까운 거주지역 주민(단, 신원조사상 문제없는 자)으로 언어에 문제가 없고 서류정리가 가능하며 타이핑과 데이터 입력 능력,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 달에 10시간 이상 봉사하고, 1년간 활동을 지속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기록계, 행정계, 지원계, 순찰계 등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순찰활동은 자원봉사자 2명 이상이 “Volunteer policing” 차량에 탑승하여 진철역, 버스정류장 주변, 학교인근, 주택가, 우범지역 순찰, 교통법규 위반자 고발조치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⑥ 일본의 주요 활동

일본에서는 자주방법활동³²⁾이 활성화되고 있다. 치바현, 야마구치현, 이바라키현 경찰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치바현에서는 고령자 방법자원봉사자(60-70대)를 모집하여 ‘Active · Silver · Safety’라고 칭하고, 독거노인 자택방문을 실시하고 특히 보이스 피싱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쿄에서는 대학생 방법자원봉사단체가 고령자 자택을 방문하여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야마구치현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후 재해지역에 방법자원봉사단체가 투입되어 청색 회전등 장비를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야간방법순찰 활동이나 아동을 돌보는 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이바라키현에서는 방법자원봉사단체가 차량절도 집단 검거한 바 있다.

이 밖에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전국 플랜, 도시재생 프로젝트: 방법대책 등을 통한 도시안전·안심의 재구축, 범죄에 강한 지역사회 재생 플랜 등³³⁾을 통하여 일본 각 지역 경찰과 지역주민이 협조하고 있다. 이 활동은 위법 풍속점 및 손질단속 등을 통해 변화가, 유흥가를 건전하고 매력 넘치는 장소로 재생시키는 활동이 중심이다.

3) 국내 지역주민 참여형 안전프로그램

30) 조병인. 경찰활동과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31) 강맹진. 미국의 지역사회경찰활동 프로그램 운용사례: 캘리포니아주 산마테오 카운티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0권 2호. 2010, pp. 306-319.

32) 조병인. 『지역공동체 내 범죄예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33) 조병인. 『지역공동체 내 범죄예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가. 경찰과 지역주민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프로그램

① 시민경찰 학교³⁴⁾

시민경찰학교는 각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와 지역주민의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 1회, 10-30시간(4-6주 내외)의 교육을 수료하면 시민명예경찰로 위촉하고 경찰 보조업무, 지역치안 모니터링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청소년 선도 캠페인, 유해업소 단속활동, 거리 질서 등의 치안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시작하였다.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 소년단³⁵⁾은 경찰, 학교, 선도단체가 함께 하는 것으로 전국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태권도, 유도, 합기도 및 심신건강 증진 종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경찰서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이 과정을 마친 후 학교폭력방지활동, 왕따 불우학생 및 저학년 어린이 도와주기, 교통 캠페인 및 질서 활동, 경찰서 방문 및 견학, 112 순찰 및 도보순찰 등 지구대(파출소) 현장체험 등의 활동을 하며 활동기간은 해당학교 졸업시까지이다. 매년 4월 학교장 제청으로 선발되며 조건은 학업성적 우수, 체격건강, 모범생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관할 경찰서장이 위촉한다.

② 자원봉사조직

시민경찰자원봉사대³⁶⁾는 경찰, NGO,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선도 강연, 경찰관보조순찰, 질서유지 및 선도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청소년상담센터 부스 운영을 통하여 학교 폭력 신고, 상담, 귀가 등 선도활동과 보호기관 연계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경북 의성 인계파출소에서 관내 24개리 이장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여성아동 안전보호관제도는 아동여성범죄 발견시 즉시 신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여성자율방범대는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3개 순찰조를 구성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연중 수시 야간 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③ 치안올레길

치안올레길은 환경이 좋지 않은 동네의 개선과 범죄발생을 줄이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함께 순찰방식을 변화하여 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환경개선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벽화그리기, 지역정비, 보안등의 보완과 정비 등 종합적인 방안을 도입한 것이다. 치안올레길의 핵심은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개선과 순찰의 강화이다. 치안올레길은 범죄취약지역을 정밀 분석해 범죄 발생 빈도수가 많은 곳을 순찰길로 정해 골목 구석구석까지 순찰하여 범죄의 예방을 꾀하는 것으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다. 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112비상벨

34) www.police.go.kr

35) kid.police.go.kr

36) www.kcps.or.kr

을 설치하고 경찰 종합상황실과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빠와 함께하는 치안올레길 순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민과 경찰이 함께 지역사회안전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나.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프로그램

① 안심마을

안심마을 시범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지원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찾아내 개선하는 주민주도형 안전 개선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수원시 송죽동, 천안시 원성1동 등 10 곳을 선정하여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안전행 정부는 안심마을의 안전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안심마을 1개소당 5억원 정도의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기로 했고, 각 안심마을은 주민 안전네트워크 활동과 함께 우범지역CCTV 설치,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급경사 골목길 안전난간대 설치, 교통사고 유발 장애물 제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표적인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회단체, NGO 등이 참여하는 사업이다. '안심마을'은 주민활동 지원 및 주민들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에 대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관련기관들은 안심마을 내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 전기시설, LPG호스 금속배관 교체, 노후주택 개보수, 우범지역 LED간판 설치 등 대상가구 및 대상지역에 대한 리스트를 확정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기관별로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안전마을 시범사업인 송죽동의 예를 들면 방법서비스지원 사업³⁷⁾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안전행정부, 수원시, 송죽동 주민자치회, 경륜경정사업본부 수원지점에서 공동으로 수행한 사업으로 수원시는 개소당 10만원 보안장치 설치비를 지원하고 경륜경정본부는 가구당 이용료 300만원을 후원하고, 주민자치회는 서비스 신청자 모집, 범죄예방홍보를 담당하였다. 수혜대상은 만18세 이상 만65세 이하 송죽동 무주택여성(전월세 임대차 보증금 9000만원 이하, 외국인 포함) 60가구로 주민등록상 여성 단독이나 다수가구 및 한부모가구로 한정하였다. 서비스내용은 가정 내 비상벨을 누르면 보안요원이 출동하고, 현관이나 창문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외부침입이 감지되면 보안요원이 출동하여 진압하는 시스템이다.

②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 안심귀가 서비스

안심귀가 서비스는 여러 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다. 경상남도 고성군청, 고성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안심귀가 동행서비스³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농촌의 취약한 아동과 여성에 대한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내용은 요보호 아동·여성 일제 조사, 하룻길 지킴이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요보호아동·여성 일제 조사는 읍·면 복지대상자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여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읍·면 아동·여성 보호 업무담당자가 조사

37) 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31024000161

38) 여성가족부, 2012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우수사례집, 2013

를 담당한다. 하꽃길지킴이 운영은 하꽃길 일반 아동 및 지킴이를 선정하여 아동과 동행하는 것으로 요보호 아동을 추가하고 집중교육을 통하여 차별화된 지킴이 교육을 하고 있다. 하꽃길 지킴이 담당 학교 19개교를 지정하였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아동안전지도 활용, 일반 아동 하교지도, 요보호아동 안전한 하꽃길지도, 우수사례 확보, 운영일지 기록, 학교주변 유해환경악, 위해 환경요인 순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요보호 아동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찾아 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아동 안전지도 제작·활용, 학교 주변 유해환경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학생의 행동 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에 별도 지도를 요청하고 있다.

안전한 귀가길 조성 프로젝트³⁹⁾는 여성가족부, 울산시 지역연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아동여성 안전 지킴이단을 운영하는 것이다. 내용은 시범 승강장 주변에 거주하는 아동이나 여성이 심야시간(22:00-02:00)에 지킴이단으로 연락하면, 지킴이단(2명1조)이 집까지 동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여성 안심 귀가 스카우트 제도⁴⁰⁾는 서울시, 종로구, 중구, 성동구, 송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신원조회 거쳐 선발된 ‘스카우트’가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을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 제도로 오후 10:00-오전1:00이용가능하며 봉사자에게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뉴딜형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안산시 자율방범대, 안산시 통장협의회에서는 범죄 취약시간 대 아동·여성을 집까지 동행하여 안전 귀가를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대상은 아동, 청소년(10대여성), 여성 등으로 23:00~01:00시 사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영방법은: 3인 1조 / 1일 2교대로 운영하되 지대별 최소 하루 6명 자원봉사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운영지역은 인적이 드문 지역,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미운행 구간 등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인 중심의 야간 방범 체계 구축으로 주민이 주축이 되고 있으며, 범죄 발생 개연성이 높은 심야 시간에 사업 실시로 야간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에 대한 예방책 마련으로 아동·여성 대상 범죄 및 폭력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안전 수호천사⁴¹⁾는 각 경찰서와 관내 우체국 집배원, 한국야쿠르트, 모범운전자회, 태권도협회 등이 함께 하는 것으로 야쿠르트 수호천사, 달리는 수호천사, 태권브이 수호천사 등으로 명명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③ 청소년 안전 서비스

청소년 안전서비스도 다양한 형태가 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⁴²⁾은대한청소년육성회 각 지회 및 지부, 지역주민이 함께 하고 있다. 거주자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야간 우범지역 순찰활동, 청소년유해물 모니터링 활동, 청소년유해업소 방문 계도 활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

39) news1.kr/articles/1333810

40) www.seoul.go.kr

41) www.police.go.kr

42) www.mogef.go.kr

호법 홍보 캠페인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같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⁴³⁾은 여성가족부, 초중고등학교, 학부모가 함께 하는 사업으로 교사, 학부모가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고발 및 청소년보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 119 안전지킴이⁴⁴⁾는 시흥소방서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시흥시민연대, 시흥민예총, 관내 학교장, 시흥시자원봉사센터, 시흥시가 함께 하고 있는데 관내 중고등학생의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교육 및 현장체험 내용은 자원봉사의 필요성, 조 편성, 소방안전 시청각 교육, 거리 환경정리 및 안전위험요소 모니터링, 화재예방 캠페인 및 현장체험(6시간), 개인별 심폐소생술, 소방관 체험, 우리집 화재예방 자가진단 등이다. 1회 4시간(총5회 20시간)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을 발급하고, 우수학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청소년 안전마을지킴이는 안전행정부, 광주 우산동 주민센터, 우산동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성폭력, 학교폭력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밤길이 안전한 마을 위해 주민과 청소년이 힘을 모은다는 취지로 우산동 관내를 돌며 안전 취약지 파악, 방법활동을 수행한다. 취약지로 분류된 곳은 매주 청소년 안전지킴이와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환경개선을 병행하는데 ‘행복한 창조마을 우산동 잉계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④ 여성안전 서비스

여성안전 서비스활동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조성사업- ‘탁 트인 흥반장 마을 만들기’⁴⁵⁾ 사업은 여성가족부, (사)탁틴내일, 서대문구주민모니터링단(학부모 20명, 청소년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범죄환경 진단, 홍제1동 대상 안전저해 요인 진단, 개선방향모색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주민모니터링단 활동은 셉테드교육을 5회 수료한 뒤, 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리 상태, 주야간 시간대별 빈집과 청소년 우범지역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안심지킴이집 선정 및 운영, 환경개선, 아동안전지도제작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강원도의 여성방범봉사대⁴⁶⁾는 강원도, 강원도자원봉사센터, 정선여성방범봉사대 등이 함께 하고 있는데 장터 관광객 안내, 교통질서유지활동, 에너지절약캠페인, 청소년 선도 및 방법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

평크지킴이⁴⁷⁾는 여성가족부, 익산시, 익산성폭력상담소에서 하는 사업으로 아동범죄와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2010년부터 시작하였다. 등교준비, 동행시 상담 등을 제공하며 대상이 되는 아동은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굿네이버스 등 유관기관이 선정한 지역에서 각 학교를 통해 추천받고 있다.

43) www.mogef.go.kr

44) cafe.daum.net/kbs599

45) www.anews.com/detail.php?number=550498&thread=09r02

46) blog.naver.com/kmu_amb?Redirect=Log&logNo=70171078129

47) 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1111



⑤ 환경개선 사업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⁴⁸⁾이 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Lala,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서울시 25개구에 대해 각각의 골목길을 선정하여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벽화뿐 아니라 꽃과 나무도 함께 식재하는 프로젝트로 전반적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다.

48) www.redcross.or.kr

가정폭력·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

2017년 경기남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통합 워크숍 자료집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

| 배복주 대표 | 장애여성공감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성인권

- 모든 개인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성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에 대하여 성적권리, 성적자기결정권 등 여러가지 용어로 표현할 수 있으나 **인권의 개념을 통합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용어로 '성인권'**

(여성가족부, 장애인 성인권 매뉴얼, 2013)

성적자기결정권

- 성적자기결정권은 자신이 자신의 성적인 행동 혹은 몸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하고 '**선택**'을 하는 것
- 개인이 성적자기결정권 스스로 선택하는 성적실천방식
_성적인 상상, 자위, 스스로 통제, 파트너 섹스 등
- 파트너 섹스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와 '**책임**'에 대한 입장과 상호작용
- '장애인도' 성적 욕망을 가진 주체이며, 자신의 성적인 행동에 대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이 주어져야 한다.

장애인은 성적존재인가?

- **모든 인간은 성적 존재**이다? (장애인, 노인, 미성년자 등)
- **무성적 존재** : 장애로 인해 무성적 존재로 취급 혹은 요구?
- 성적 존재로 인정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장애인 **성서비스** 제도(?)
- 장애인 섹슈얼리티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 :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인정해야 하는 당위에는 공감하지만 결국 **타자화**
- (발달장애인) 성적주체로 인정되는 범위? 우리가 허용하는 성행동?



장애인의 성을 바라보는 주변인의 인식

- 무성적 존재로 여겨지는 부분
- 타자화
- 성행동 범주화 (허용, 인정해주는 주변인)
- 공적인 몸 (사적인 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몸)
- 통제와 보호 중심의 성교육(보호담론/권리담론)

발달장애인의 섹슈얼리티

-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성적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위험'한 존재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적절한 의사소통훈련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 하지만 "성에 눈을 떠서 이것저것 귀찮고 곤란한 일이 생길 바에는, 차라리 모르고 안전하게 사는 게 낫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강하다.(부모,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 이런 생각은 상당히 실질적인 행동의 통제를 가져올 수 있다.
- 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성에 대한 특정한 관점(이성 간 성관계, 성폭력 등)에서 생겨나는 관점.
- 발달장애인의 성적 욕구와 실천을 다른 가치와 모순되는 것으로 보거나 다른 가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보는 것.

발달장애인의 성적권리 고민

1. 발달장애인 성적욕구를 어떻게 해결(해소)해야 할 것인가?

정상화(결혼)?, 성서비스(제도화)?, 욕망조절훈련, 친밀한 관계형성...

2. 성차별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재생산권 제한(자궁적출, 강제낙태, 강제불임술), 성기중심관계에서 비주체

3. 성폭력가해자로 등장하는 발달장애남성의 문제는?

피해경험이 가해로 전환, 성교육 및 정보제공의 부재, 부정적 성경험, 장애특성으로 인한 의사소통 오인, 왜곡, 편견 등

4. 성폭력피해자로 등장하는 발달장애여성의 문제는?

장애학생(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실태

1) 성폭력피해 장애인의 연령(2015)

단위:명

성별	계	7세미만	7-13세 미만	13-19세 미만	19-65세 미만	65세이상	미파악
여	1,534 (100%)	2 (0.3%)	34 (4.1%)	295 (24%)	1,089 (60.1%)	35 (3%)	79 (8.5%)
남	91 (100%)	1	5 (13%)	36 (24%)	33 (45%)	2	14 (18%)
계	1,625 (100%)	3 (0.3%)	39 (4.3%)	331 (23.4%)	1,122 (60%)	37 (3%)	93 (9%)

출처: 전국장애인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인상담소권역 2015년 상담실적 보도자료



2) 장애인피해자와 가해자와 관계(2015)

단위:명

계	친족 및 친·인척				배우자	애인	직장관계자	동네사람	동급생 선후배	교사 강사	종교인	복지 시설 근무자	서비스 제공자	채팅 상대자	모르는 사람	기타
	(의)부 모 형제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혈족	기타												
2,123 (100%)	101 (5%)	71 (3%)	15 (1.5%)	18 (0.7%)	19 (0.8%)	46 (2%)	96 (4.5%)	556 (26%)	162 (7.5%)	21 (1%)	20 (0.9%)	60 (3%)	28 (1.3%)	166 (7.8%)	461 (21.7%)	283 (13.3%)
<p>친밀한 관계 혹은 명소에 알고 있는 관계(57.3%)</p>																

출처: 전국장애인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인상담소권역 2015년 상담실적 보도자료

장애학생 성폭력 피해사례 통해 본 성폭력 피해원인

1) 친밀성의 부재/부족 : 심리적 고립감

- 학교나 또래집단 : 왕따, 괴롭힘
- 가족들간의 심리적 거리 : 폭력과 통제로 갈등이나 문제를 봉합

2) 관계맺음과 관계유지에 대한 욕구 : 관계에서의 취약함

- 장애차별적 사회 : 긍정과 존중을 받지 못함
- 성차별적인 사회 : 성폭력 노출, 스스로 선택할 선택지가 없음
- 몸을 통한 시도와 노력으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태도

장애학생 성폭력 피해사례 통해 본 성폭력 피해원인

3) 보호와 통제

- (성적)욕구를 이해하기보다 금지와 보호
- 생물학적인 수준의 피상적 성교육
- 경험, 정보, 자원의 부족으로 상황파악을 못한 채 선택 차단

4) 낙인과 지원의 일관성 부족

- 삶의 복합적 맥락을 이해하기 보다 문제적인 학생으로 낙인
- 순진한 피해여성 / '성도착'에 빠진 문제아
- 가족,복지관,학교, 담소 등 다양한 지원체계의 비일관적 메시지

지적장애인 성폭력 상담 및 지원의 전반적 특성

- 1) 대다수의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장애유형이 지적장애인
- 2)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진술특성 이해 필요
- 3)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당사자의 비의지적 태도에 대한 이해
- 4) 지적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해야 하는 역할
- 5) 피해자와 일대일 면담과 지속적 상담이 다수
- 6)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주변의 아는 사람이 많고 연령대가 고령인 경우 다수



성교육/성인권/성폭력예방교육은?

1) 성교육

- 협의적으로)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성지식과 성인식에 대한 정보제공
- 광의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성인권)을 포함하여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한 성적권리
- 접근방법) 의사소통. 관계맺기. 자기표현을 중심으로 교육방법 개발필요

2) 성인권 교육

- 성적자기결정권에 이해, 권리적 측면을 강조
- 인권적 관점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섹슈얼리티 내용을 전달
- 접근방법) 교육대상의 수준에 따라 성교육적 접근을 하는 경우가 다수(장애아동.청소년)

3) 성폭력예방교육

- 개인의 성인지 및 성폭력에 대한 통념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식전환 교육
- 교육생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대한 점검과 소통을 주요함

장애인 성교육과 성인권 교육의 방향

1) 욕구표현 및 관계중심의 성교육

- 발달장애여성/남성도 성적주체로 인정
- 성적욕구를 긍정하고 표현하며,
- 다양한 관계에서 주체적인 성적 실천할 수 있어야.
- 내 몸의 주체성과 타인의 몸의 소중함을 관계맺기와 의사소통을 통해 알 수 있도록 교육

장애인 성교육과 성인권 교육의 방향

2) 변화하는 성, 다양한 사회문화적 시각을 반영하는 성교육

- 질병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성교육이 아닌 욕구와 자기표현을 기
반한 성교육이 필요
- 성차별적인 성교육(성역할 강요 등)이 아닌 성평등적인 성교육 필요
-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교육- 장애는 이상한 몸이 아니라 다양한 몸의 한 형
태일뿐. 그 가치가 잘 존중되어야

장애인 성교육과 성인권 교육의 방향

3) 즐거움과 행위 중심의 성교육

- 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기 때문에 성을 수식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황
홀함' '열정' '나눔' '순결' '죄악' '더러움' '수치심' '외설' 등. 이러한 다양한 시각과 혼돈때문
에 아동과 청소년 등 보호의 대상들에게는 성의 위험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성교육
진행
- 하지만 성적금지와 엄숙주의 중심으로 교육이 오히려 성적 위험을 가져올 수 있
다는 점. 다양한 성적주체들을 인정하고 성을 즐거운 경험의 하나로 접근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는 주장.



장애인대상 성교육/성인권/성폭력예방 강사를 위한 가이드(제안)

• 지적장애인 교육시 강사의 태도와 관점

- 1) 지적장애인을 무성적으로 보지 않는다.
- 2) 결혼, 임신, 성욕에 대해 열린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
- 3) 모든 교육의 바탕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교육에서 시작한다.
- 4) 교육에 참여하는 지적장애인들이 가진 힘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상화하거나 피보호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 존재로 인식한다.
- 5) 교육 참여자들에게 한 가지 결론을 강요하기보다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 6) 강사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는 마음과 교육을 통해 교육자도 참여자와 함께 성장하고 변화될 용기가 필요하다.

장애인대상 성교육/성인권/성폭력예방 강사를 위한 가이드(제안)

• 이슈(주제)

- 1) 성교육/성인권/성폭력예방교육 관련 흐름파악, 성폭력예방교육의 주요 포인트를 구성한다. (성폭력예방교육은 인식과 관점의 변화가 중심)
- 2) 장애정도, 성별, 연령별에 따라 주제선정과 접근방법을 다양하게 진행. (참여를 통한 관계 맺기 방법을 중심으로)
- 3) 성폭력예방교육 진행을 위해 선행학습으로 성교육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 특히 성적 욕구 해결에 대한 접근방법(자위, 타인과 섹스, 성적상상 등)에 대해서는 사전정보 충분히 파악.
- 4) 성폭력, 성희롱, 성적착취, 친족성폭력 등에 대한 주제를 복합적으로 다루기보다 좀더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
- 5) 지적장애인이 보다 쉽게 성폭력 피해를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위치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자기방어훈련 포함하는 것도 고려)

장애인대상 성교육/성인권/성폭력예방 강사를 위한 가이드(제안)

• 구성

- 1) 집단을 대상으로 교육할 경우, 집단크기는 중증장애나 행동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5인 이내, 사회적 소통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경우는 10명정도 적정.
- 2)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는 개별교육이 효과적.
- 3) 교육 참여자 중에 성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구성원이 있을 경우에는 혼성보다는 같은 성끼리 진행하는 것이 적절
- 4) 교육대상의 사전정보 파악
- 5) 교육대상이 주변환경 파악
- 6) 교육공간의 쾌적함 유지 요청

장애인대상 성교육/성인권/성폭력예방 강사를 위한 가이드(제안)

• 방법

- 1)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성공적인 것은 비디오, 영화, 그래프, 포스터, 사진 등과 같은 오디오, 비디오 자료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 2) 기술발달은 실제 연습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에 학습자로 하여금 교육자를 모방하여 따라하도록 한다.(예_역할극:안전한 섹스를 협상하는 것)
- 3) 짧은 토론을 하는 것도 흥미를 끌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소그룹) 토론이 불가능한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질의응답 방식으로 상화작용도 가능
- 4) 새로운 아이디어에 도전하자. 지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와 환경적 요소에 따라 학습 능력이 다를 수 있기때문에 교육자는 새로운 내용으로 교안을 구성하는 것도 좋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www.wde.or.kr

법인 이메일 wdc214@gmail.com

성폭력상담소 이메일 was1399@hanmail.net

연락처: 02-441-2384

주소: 서울 강동구 천호동 425-5 대우베네시티411호

가정폭력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

2017년 경기남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통합 워크숍 자료집

인권의 이해와 인권달성의 조건

| 조효제 교수 | 성공회대학교



인권의 이해와 인권달성의 조건

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제4차 전문강사 통합 워크숍
2017.6.9
조효제(성공회대학교)

인권 교육이란?

1. 인지적 교육
2. 도구적 교육
3. 계몽적 교육
4. 민주시민 교육

인권이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똑 같이 귀하다는 **사상**,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

인권의 전제

-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 평화, 민주, 존중, 공감, 배려, 신뢰 등의 가치도 중요
- 인권이 중요하지만 다른 가치들과 공존해야 함
- 특히 자기중심적 “권익”과 인권은 구분해야
- 맥락과 사례별로 어떤 가치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잘 선택하는 안목 필요



그러나 인권만의 특징점

- _ 권리 = 정의 원칙 + 실행 수단
- _ 명확하고 강력한 담론
- _ 만인 평등주의
- _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약자에게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음
- _ 인간의 존재 증명과 자존감을 고양하는데 인권만한 가치가 없음

한자 문화권: “권리”(權利) 용어

| 인권 = human(인간) + rights(권리) = 人權

| Right(s)의 한자 번역

- _ **염직**(廉直=1815). 정직(正直). 라이트. 도리(道理).
당연(當然). 면허(免許). 진직(眞直). 권의(權義). 공평(公平).
공도(公道). 진실(眞實). 조리(條理). 권세(權勢). 통의(通義) 등
- _ **권리**(權利=1885) = “정당한 이익”(rightful interests)

| Rights 번역 다양했던 이유: 단어 의미가 이중적이기 때문

- (1) 도덕적으로 옳다(rectitude)
- (2) 무엇을 요구-주장-관철할 수 있는 자격(entitlement)

1. 인권은 '보편적'

-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됨
- 모든 사람은 본질적 차원에서 평등한 존재라고 가정
- 인권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문제만이 아님

2. 이성과 양심

- 대다수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라고 가정
-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 (reason and conscience)을 타고 났으므로 서로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1조>
- “**양심**이란 어떠한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헌법재판소>



3. 본질적 욕구의 사회적 충족

- 본질적 욕구-필수욕구(needs) =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 욕구

- 생명 보전, 의식주, 최소한의 생계, 자유로운 의사표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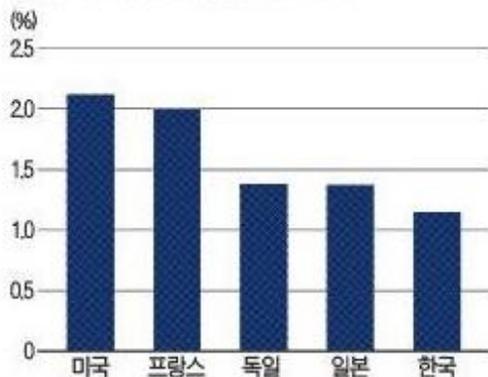
- 이러한 본질적 욕구를 사회공동체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어야 함

-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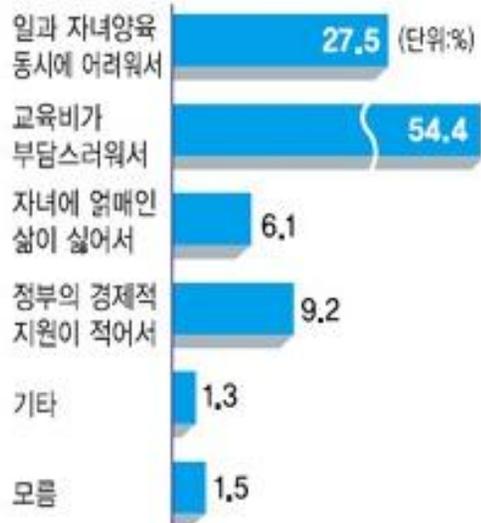
→이렇게 생각하면 반인권적

- **필수욕구의 사회적 충족 책임**은 한국이 선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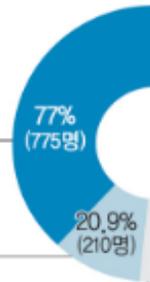


2014년 OECD회원국 자살률

국가	명	국가	명
한국	28.7	*폴란드	15.3
일본	18.7	*체코	14.2
*슬로베니아	18.6	*스웨덴	12.3
헝가리	18	OECD평균	12
*벨기에	17.4	*스위스	12
*에스토니아	16.6	*덴마크	11.3
*핀란드	15.8	*독일	10.8
*프랑스	15.8	*노르웨이	10.8

한국 사회 10년 후의 모습은

중산층은 줄어들고
빈곤층은 늘어나
빈부격차 심해질 것



중산층은 늘어나고
빈곤층은 줄어
빈부격차 완화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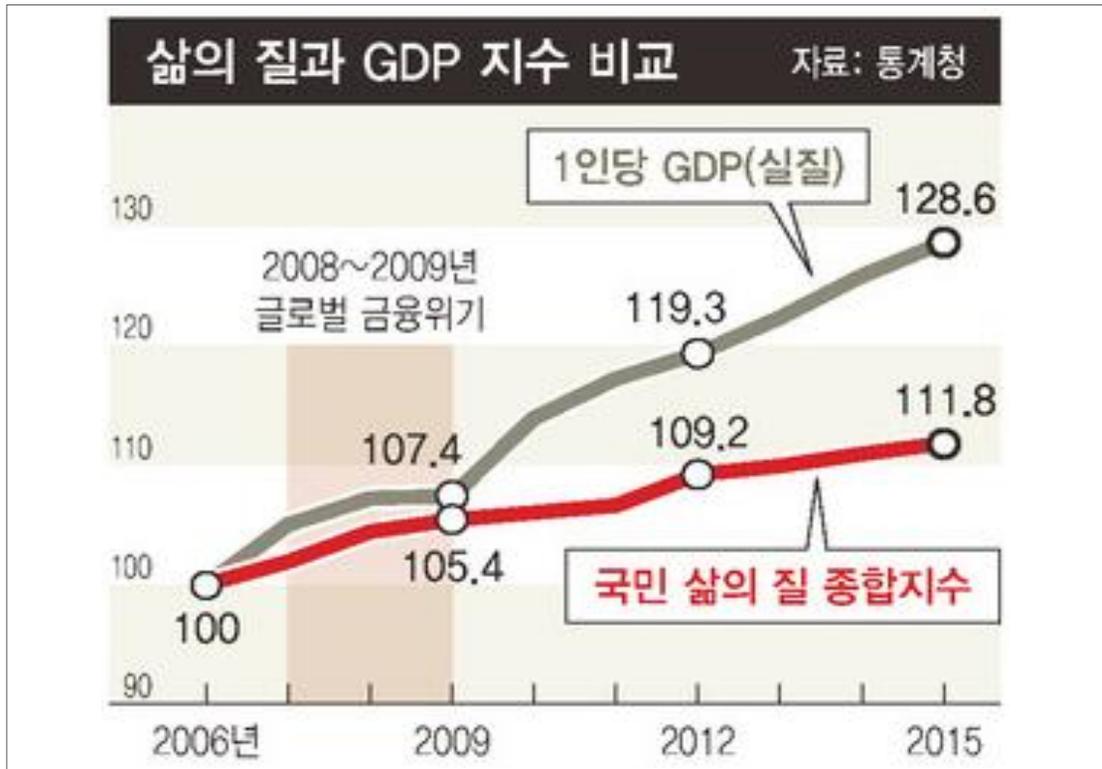
모름/무응답 2.1%(21명)

요즘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복수 응답)



* 전국 성인남녀 1006명 설문조사





4. 차별 금지

- _ 차별 금지=인권에서 특히 중요한 원칙
- _ 인권의 보편성과 연결됨
- _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해 주는 것이 곧 정의
- _ 정의 (Justice) = 공정 (Fairness)

“정의의 여신은 눈에 **안대**를 하고 있다.

인권이라는 특수 안경을 쓰면 앞에 있는 사람이 사람인 것만 보이고, 그 사람의 특징은 알 수 없어야 정상이다.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의미”





세계인권선언과 반차별

| 전문

“인류가족 모든 구성원들의 타고난 존엄성과, 그들의 **평등한 권리** 및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인정**”...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

|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종류의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 미래 인권 발전 방향을 시사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2조 3항: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 **고용,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교육, 훈련 등의 영역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

인권의 특징1: 공적 개념

시민과 국가(공적 주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최근 공적 주체가 다양해 짐

- _ 국가
- _ 지자체
- _ 공공기관
- _ 기업
- _ 국제기구
- _ 요즘은 사적 개인들 간에도 적용하기 시작

인권에 있어 **공사 경계가 약해짐**

- _ 가정보호사건: 가정폭력범죄 보호처분대상 사건

국가의 의무

1. 국가의 의무:

- _ 존중 (respect)
- _ 보호 (protect)
- _ 충족 (fulfil)
- _ 촉진 (facilitate)

2. **개인의 의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세계인권선언 29조)



인권의 특징2: 권리와 의무



인권의 특징3: 불가분성 = 인권의 통합성

- _ 모든 권리들은 서로 연결되고 서로 의존함
 - _ 어떤 한 가지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강조할 수 없음
 - _ 모든 권리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간주해야 함
 - _ 인권은 통합적-전일적으로 이해해야 함
- 인권 목록 중 일부만 강조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떤 권리를 거부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님

인권의 특징4: 최저기준 설정

- 인권의 기준을 정할 때 어떤 최대치를 목표로 하지 않음
- 어느 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 없는 최저기준을 설정 (minimum standard)
 - “적어도 ... 정도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고, 최저기준조차 지키지 않으면 정말 나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인권의 특징5: 권리의 역설

- | **권리보유의 역설** (잭 도널리)
 - “권리가 있으면 권리가 사라지고, 권리가 없으면 권리가 나타난다.”
 - 인권이라는 말을 많이, 자주 쓴다고 해서 인권이 잘 보장된다는 뜻은 아님
 - 인권 선진국에서는 ‘인권’이라는 용어를 오히려 많이 쓰지 않음
 - 인권 용어 사용을 떠나 실제로 인권 가치가 실생활에서 얼마나 구현되느냐가 더 중요



인권의 특징6: 세대별 발전 = 인권의 통합성

| 1세대 인권 (시민적, 정치적 권리)

_ 고전적 권리들

| 2세대 인권 (경제적, 사회적 권리)

_ 의식주, 의료, 사회보장, 노동과 휴식, 교육,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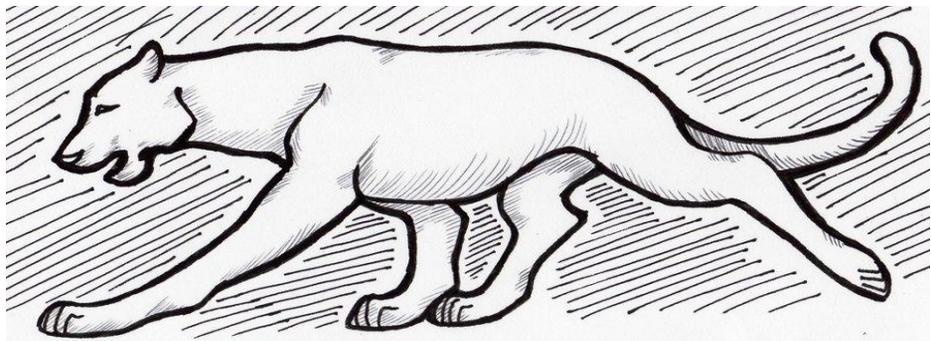
| 3세대 인권 (집단권, 연대권)

_ 환경, 발전

인권친화적 조직을 위한 팬더 원칙

인권 원칙을 일반 조직에서 활용하는 기법

P
A
N
T
H
E
R



팬더 원칙의 특징

- 인권이라는 말만으로 인권 문화와 인권 마인드 생길 수 없음
- 일상적 조직 생활 내에 인권 원칙 스며들어야
- 팬더 원칙은 인권의 내용을 7가지로 세분하여 공사 조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고안된 개념
- 팬더 원칙을 실천하면 '인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내용상 인권친화적 조직을 이룰 수 있음

PANTHER 원칙

P articipation	참 여
A ccountability	책 무성
N on-discrimination	불 차별
T ransparency	투 명성 (청렴)
H uman dignity	인 간 존엄
E mpowerment	권 한강화
R ule of law	법 의 지배



1. Participation (참여)

P
A
N
T
H
E
R



Participation (참여)

모든 사람은 자기존재 증명 욕구

자신의 뜻이 관철되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 자체를 원함

의사표현 자유 + 인정받고 싶은 욕구

조직의 문화가 중요

-참여와 대화의 환경이 만들어져야

-상사부터 적극적 경청을 실천하고 소통 노력해야

-조직 내 집단들이 서로 의견 경청, 타협-양보

-조직 내 자원배분에 대한 발언권 인정(실질적 참여)

2. Accountability (책무성)

P
A
N
T
H
E
R



Accountability (책무성)

- 원래 국가가 시민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개념 =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 안전, 행복추구
-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결정=주먹구구식 결정은 구성원 피해
- 약자, 소수자의 욕구 우선적 고려
- 무능하고 책임회피적 태도는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악영향
- 조직 내 <윤리강령>
- 책무성 = 상사와 직원 모두에게 해당



3. Non-discrimination(불차별)

P
A
N
T
H
E
R



Non-discrimination (불차별)

- _ “모든 제도는 명백히 그렇지 않다고 입증되지 않은 한, 당연히 차별적일 것이다” (조너선 만)
- _ 차별금지하는 모든 인권의 바탕
- _ 차별 당하지 않는 사람: 차별이 보이지 않음
- _ 차별 당하는 사람: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 방법을 모르거나, 문제를 제기할 처지가 못 됨
- _ 차별 당하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함
- _ 차별 문제 제기 앞에서 열린 마음 필요

4. Transparency (투명성)

P
A
N
T
H
E
R



Transparency (투명성)

- _ 조직운영이 불투명하면 부패의 온상 가능
- _ 부패가 있는 조직의 구성원은 직간접적 피해를 입는다
- _ 정보의 공개 및 공유
- _ 내부적으로 '말할 자유'와 '표현 자유' 보장
- _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도 그것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 _ 정보가 어렵고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으면 투명성 원칙 위반
- _ 되도록 모든 언어를 쉽고 평이하게 써야 함
- _ 어려운 말: 의사소통 비용 높이고 권력 행사



5. Human dignity (인간 존엄)

P
A
N
T
H
E
R



Human dignity (인간 존엄)

- _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체면과 위엄을 존중
- _ 모욕적 언사와 경멸적 대우는 인간의 자존감과 긍지 파괴
- (예) 비정규직의 처우: 인간적 차원의 굴욕감?
- _ 눈에 잘 띄지 않는 직군의 처우는?
- (예) 경비, 건물 관리, 급식, 청소, 등
- _ 정당한 명령체계와 인간존중 서로 병행 가능



7. Rule of law (법의 지배)

P
A
N
T
H
E
R



Rule of law (법의 지배)

- _ 인치가 아닌 **법치 원리**가 중요
- _ 조직에서 법의 지배란?
 - 규정과 절차에 따른 업무
 - 모든 클라이언트를 규정대로 공정 대우
 - 업무상 잘못 발생 → 사과 및 적절한 후속조치
- _ 민원과 고충 접수 및 처리과정 있어야
- _ 규정과 절차에 의하지 않은 영향력 행사는 반인권적: (예) 지연, 학연, 파벌, 줄 세우기

나오면서

조직의 인권 마인드와 인권 문화

- 조직 내에서 반드시 통용되어야 함
-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
- 인권친화적 조직운영은 무질서한 행정의

아님

-인권적 조직운영은 인권침해 적발-시정하는 것 이상의 실천 요구

- 모든 조직 구성원의 행복이 공존 가능
- 개인과 조직 모두 발전할 수 있는 방안
- 팬더 원칙을 위한 자체적 방법 개발 필요**

가정폭력·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

2017년 경기남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통합 워크숍 자료집

부 록

- 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각종 양식
- 2017년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추천콘텐츠 리스트(총 216종)
- 폭력예방교육 컨소시엄·협력기관 현황
- 경기지역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일반강사 현황
- 전국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현황



[서식19] 강사카드

찾아가는 성폭력 · 가정폭력예방교육 강사 카드			
「찾아가는 성폭력 · 가정폭력예방교육」 사업참여의사		_____성폭력 _____가정 폭력	
강사명		활동지역	
양평원 전문강사 여부	Y / N	위촉분야	
소속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주교육대상		교육대상별 강의기법	
1. ex) 민간기업 종사자/지역사회성원/학부모/이주민/ 장애인/ 노인/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군인 등		ex) 강의식/참여식/토론식/시각각 자료 활용/역할극/ 외국어 활용/미술치료 등 기타기법	
2.			
3.			
특장점	* 교육대상별 맞춤형 연계를 위한 것으로 특정대상의 현장성 및 경력 중심으로 작성 ex) 노인대상 현장경력/대상별 피해자 지원 경험 등 활동경력과 연계하여 작성		
통합교육 가능여부	*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통합교육 가능 여부 ex) 통합교육 가능 분야 및 관련 강의 경력 등과 연계하여 작성		
강사연계 시 고려사항	ex) 강의실시 가능한 요일/시간대/지역 등		

[서식20] 군 교육 토의사례 활용후기

**2017년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군 핵심계층 성폭력 예방교육 토의사례 활용후기**

강의 일시	(날짜)	지역	
	(시간)		
교육신청기관명		교육대상(계급)	
강사명		소속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교육 시 활용한 사례 요약			
활용(토의) 후기			

폭력예방교육 추천콘텐츠 현황('17년 4월 기준 / 총 216종)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의 '교육자료실' 메뉴에서 교육 유형별·대상별·자료 유형별로 다운로드 가능

□ 성희롱(총 34종)

연번	제목	대상	제목	개발년도	형식
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 꼭 필요한 이유	2016년	동영상
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함께 만드는 사회-성희롱예방(학교)	2015년	사이버교육
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함께 만드는 사회-성희롱예방(공공기관)	2015년	사이버교육
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영화 속 사건들로 본 성희롱예방교육	2015년	동영상
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당신의 직장은 안녕하신가요?	2015년	동영상
6	고용노동부	공공기관/일반국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	2016년	교재
7	고용노동부	공공기관/일반국민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직장 내 성희롱! 마음톡행복쑥	2014년	교재
8	고용노동연수원 청소년고용노동교육	공공기관/일반국민	성희롱 참지 마세요	2015년	동영상
9	러닝뱅크	공공기관/일반국민	성희롱예방교육 「들리지 않는 이야기」	2016년	사이버교육
10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존중」	2015년	동영상
11	(주)러닝뱅크	공공기관/일반국민	성희롱 예방교육 「K상사 이야기」	2015년	사이버교육
12	동국대학교	대학	Live Fresh, Love Fresh	2015년	교재
13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일반국민	성희롱 어디까지 알고 있지	2015년	교재
14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성희롱 방지 인포그래픽 「밝은 직장, 존중과 배려로 함께 만들어요」	2015년	리플렛
15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성희롱 방지 인포그래픽 「성희롱피해!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15년	리플렛
16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일반국민	군대 내 성희롱예방 영상	2014년	동영상
17	(주)러닝뱅크	공공기관/일반국민	성희롱예방교육 「서로가 몰랐던 이야기」	2014년	사이버교육
18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일반국민	성희롱예방교육	2014년	사이버교육
1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나부터 시작하는 성희롱예방교육	2014년	사이버교육
2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	성희롱 성폭력 예방 가이드북 「잘 알수록 서로를 더 잘 지킬수 있어요」	2014년	교재
21	고용노동부	공공기관/일반국민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The First Step to wards a Happy Working Environment	2014년	리플렛
22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2013년도 성희롱예방교육 강의를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관리자(안)	2013년	PPT
23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2013년도 성희롱예방교육 강의를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기본(안)	2013년	PPT
24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2013년도 성희롱예방교육 강의를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심화(안)	2013년	PPT
25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모두가 알아야 하고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직장내성희롱(활용가이드포함)	2013년	PPT
26	(주)러닝뱅크	공공기관/일반국민	성희롱예방교육 「직장in의 조건」	2013년	사이버교육
27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성희롱 없는 공직문화 만들기	2013년	사이버교육

연번	제목	대상	제목	개발년도	형식
28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사레로 풀어보는 성희롱예방	2013년	사이버교육
2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성희롱예방! 3가지 질문?	2013년	사이버교육
3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양성평등과 성희롱예방교육 - 공공기관편	2013년	사이버교육
3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신고의무자	양성평등과 성희롱예방교육 - 교사편	2013년	사이버교육
32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일반국민	성희롱 예방 안내서 「사람사이, 평등과 존중의 디딤돌」	2013년	교재
33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성희롱 없는 밝은 직장 만들기	2013년	리플렛
34	고용노동부	공공기관/일반국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다국어 리플릿」 (베트남,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2013년	리플렛

□ 성매매(총 25종)

연번	제목	대상	제목	개발년도	형식
1	여성가족부 & 한국양성 평등교육진흥원 & EBS	공공기관/일반국민	진정한 남자라면	2016년	동영상
2	여성가족부 & 한국양성 평등교육진흥원	초중고 공공기관/일반국민	좋은 사람	2016년	무빙툰
3	여성가족부 & 한국양성 평등교육진흥원	초중고 공공기관/일반국민	비긴어게인	2016년	웹툰
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난민의 또 다른 위험	2016년	카드뉴스
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함께 만드는 사회-성매매예방(학교)	2015년	사이버교육
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함께 만드는 사회-성매매예방(공공기관)	2015년	사이버교육
7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블랙홀 속의 성매매	2015년	동영상
8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2015년	동영상
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폭력은...	2015년	카드뉴스
1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내 사진, 동영상을 보내 달라고요?	2015년	카드뉴스
1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성매매,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15년	동영상
12	여성가족부, 한국양성 평등교육진흥원, CBS	공공기관/일반국민	성 상품사회에서 더 만족스러운 선택하기	2015년	동영상
1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성매매, 인신매매 과연 성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2015년	동영상
14	(주)러닝뱅크	공공기관/일반국민	성매매예방교육 「Stop! 성매매」	2015년	사이버교육
15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성매매 예방교육 국민의식개선홍보동영상 「공감」	2014년	동영상
1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나부터 시작하는 성매매예방교육	2014년	사이버교육
17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2013년도 성매매방지 홍보 동영상 「성매매, 그들의 일상이 무엇을 만드는가」	2013년	동영상
1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2013년 성매매 방지 영상작품 「클릭」	2013년	동영상
19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2013년도 성매매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성매매편견깨기」	2013년	PPT
20	(주)러닝뱅크	공공기관/일반국민	성매매예방교육 「Click 성매매 바로보기」	2013년	사이버교육
21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성매매 방지의 필요성	2013년	사이버교육
2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성매매 방지, 왜 필요한가?	2013년	사이버교육
23	성매매피해지원 상담소 이름	공공기관/일반국민	별별질문 - 성매매에 대한 20가지 이야기	2013년	교재
24	여성가족부	초중고	2013년도 청소년 성매매예방전국공동캠페인 리플릿 「청소년이행복한세상! 우리함께만들어요」	2013년	리플렛
25	여성가족부	초중고	청소년 성매수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안내	2013년	만화

□ 성폭력(총 86종)

연번	제목	대상	제목	개발년도	형식
1	여성가족부 & 한국양성 평등교육진흥원 & CBS	공공기관/일반국민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반대하기	2016년	동영상
2	여성가족부 & 한국양성 평등교육진흥원 & CBS	공공기관/일반국민	문제는 불평등한 성교육입니다	2016년	동영상
3	여성가족부 & 한국양성 평등교육진흥원 & CBS	공공기관/일반국민	당신은 디지털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겠습니까	2016년	동영상
4	여성가족부 & 한국양성 평등교육진흥원 & CBS	공공기관/일반국민	아이의 성, 어른이 지켜줘야 합니다	2016년	동영상
5	여성가족부 & 한국양성 평등교육진흥원 & CBS	공공기관/일반국민	사랑해도 괜찮게	2016년	동영상
6	여성가족부 & 한국양성 평등교육진흥원 & EBS	공공기관/일반국민	거리의 눈	2016년	동영상
7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사랑을 가장한 범죄, 스토킹(Stalking)	2016년	카드 뉴스
8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사례로 보는 뉴미디어와 여성폭력	2016년	카드 뉴스
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아동성폭력,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2016년	동영상
1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함께 만드는 사회-성폭력예방(학교)	2015년	사이버교육
1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함께 만드는 사회-성폭력예방(공공기관)	2015년	사이버교육
1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데이트 폭력	2015년	동영상
1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Date Violence_영어	2015년	동영상
1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대학	사라지지 않는 권력형 '성(性)감질', Why?	2015년	동영상
1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대학	Power based sexual harassment_영어	2015년	동영상
1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창살	2015년	동영상
17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stop-violence) Bars_영어	2015년	동영상
18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너를 사랑한 시간, 도대체 사랑이 뭐니?	2015년	동영상
1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ONLY YES MEANS YES	2015년	카드뉴스
2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데이트를 망치는 것들	2015년	동영상
21	교육부	공공기관/일반국민	성평등하고 안전한 학교, 교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015년	PPT
22	여성가족부 & 탁틴내일	초중고/특수학교	쉿! 비밀이야	2013년	동영상
23	여성가족부 & 탁틴내일	초중고/특수학교	왕 게임	2013년	동영상
24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군대 성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경수의 권리」(병사용)	2015년	동영상
25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군대 성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인간의 존엄성」(간부용)	2015년	동영상
26	여성가족부	대학	대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용기」(학생용)	2015년	동영상
27	여성가족부	대학/신고의무자	대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책임」(교수용)	2015년	동영상
28	여성가족부, 한국양성 평등교육진흥원, CBS	공공기관/일반국민	내 삶을 바꾼 동티모르에서의 1년	2015년	동영상
29	여성가족부, 한국양성 평등교육진흥원, CBS	공공기관/일반국민	편견에 찬 아저씨에서 멋진 경찰관으로	2015년	동영상
3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No means No	2015년	동영상
3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노출 심한 옷을 입으니 성폭력을 당한다고요?	2015년	동영상
3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따스한 봄! 초등학교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날	2015년	동영상
3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진실	2015년	동영상
3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 어른들은 왜 교육을 받아야 하나?	2015년	동영상
3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아이의 힐러는 누구?	2015년	동영상
3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아저씨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전 어떻게죠?	2015년	동영상
37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제 어머니는 10대 미혼모였습니다.	2015년	동영상
38	(주)러닝뱅크	공공기관/일반국민	성폭력예방교육 「Stop! 성폭력」	2015년	사이버교육
3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초중고	2015 전문가사 우수강의안 「Touch! 스마트폰! Don't Touch! 사이버성폭력」	2015년	교재

연번	제목	대상	제목	개발년도	형식
40	월드베스트	어린이집/유치원	네 기본을 말해봐 : 솔직하게 말해요	2015년	도서
41	월드베스트	어린이집/유치원	재미있는 놀이 : 예의를 지키며 놀아요	2015년	도서
4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그 선생님이 미쳤나봐요	2015년	카드뉴스
4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니가 참 좋아. 안아도 돼?	2015년	카드뉴스
4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더 위, 더 위로 가면 무죄?	2015년	카드뉴스
4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사랑해서 때렸습니다.	2015년	카드뉴스
4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성범죄자인데 처벌할 수 없다고요?	2015년	카드뉴스
47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저는 사람을 좋아해요	2015년	카드뉴스
48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성폭력 국민외식개선 동영상 「허락」	2014년	동영상
49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신고의무자	수사 및 사법기관의 성폭력 2차 피해 교육용동영상 「공감과 지지」	2014년	동영상
50	EBS	공공기관/일반국민	EBS 특별기획 성폭력예방 프로젝트 「너 아니면 나의 이야기」	2014년	동영상
51	EBS	공공기관/일반국민	EBS 특별기획 성폭력예방 프로젝트 「이젠 말해도 괜찮아」	2014년	동영상
52	EBS	공공기관/일반국민	악몽을 그리다	2014년	동영상
53	EBS	초중고	포돌이와 어린이수사대	2014년	동영상
54	동국대학교	대학	벨	2014년	동영상
55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성폭력 편견깨기 동영상	2014년	동영상
5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침묵은 YES가 아닙니다	2014년	동영상
57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노인 성폭력 인식개선 동영상 「황혼클리닉 남과여」	2014년	동영상
58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나부터 시작하는 성폭력예방교육	2014년	사이버교육
59	부산광역시 교육청	초중고/특수학교 신고의무자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성(학교)폭력예방교육-중등학교용	2014년	교재
60	부산광역시 교육청	초중고/특수학교 신고의무자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성(학교)폭력예방교육-초등, 특수학교용	2014년	교재
61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신고의무자	장애인 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성폭력예방교육매뉴얼(기본편)	2014년	교재
62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신고의무자	장애인 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성폭력예방교육매뉴얼(실천편)	2014년	교재
63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성폭력 피해자, 따뜻한 시선으로 지지해주세요 (편견깨기 리플렛 및 포스터)	2014년	리플렛
64	여성가족부	초중고	성폭력 피해 시 대처를 위한 동화책 「해바라기야 도와줘」	2014년	동화
65	여성가족부	초중고	성폭력 피해 시 알아야 할 법의학적 증거 확보 이야기 「은별이를 부탁해」	2014년	웹툰
66	여성가족부	특수학교 공공기관/일반국민	당신에게 던지는 다섯 가지 질문(활용가이드포함)	2013년	동영상
67	여성가족부	대학	대학생용 성폭력예방교육 동영상 「대학생의 성스러운 수다」	2013년	동영상
68	EBS	공공기관/일반국민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캔우드교수총합편	2013년	동영상
69	EBS	공공기관/일반국민	미녀와 야수	2013년	동영상
70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2013년도 성폭력예방교육 표준강의안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공공기관(용)	2013년	PPT
71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2013년도 성폭력예방교육 표준강의안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민간기업(용)	2013년	PPT
72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2013년도 성폭력예방교육 표준강의안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학부모 및 교사(용)	2013년	PPT
73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2013년도 성폭력예방교육 표준강의안 「행복한 변화, 우리의 힘으로!」 지역사회지도자(용)	2013년	PPT
74	여성가족부	대학	대학생 성폭력(성희롱)예방교육 표준강의안 「품격있는 당신의 바른 캠퍼스 생활」	2013년	PPT
7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노인기 성폭력예방교육	2013년	PPT
7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청년기 성폭력예방교육	2013년	PPT

연번	제목	대상	제목	개발년도	형식
77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	2013년	사이버교육
78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우리사회의 성문화특성과 성폭력	2013년	사이버교육
7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성폭력 예방의 이해	2013년	사이버교육
8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함께하는 성폭력예방	2013년	사이버교육
81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신고의무자	2013년 아동안전지도 매뉴얼	2013년	교재
82	경기도교육청	공공기관/일반국민 신고의무자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13년	교재
83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성폭력으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 10계명	2013년	리플렛
84	여성가족부, 교육부	초중고/신고의무자	성폭력예방 홍보 포스터 「성폭력예방가이드」 (유아, 초등저학년용)	2013년	리플렛
85	여성가족부, 교육부	초중고/신고의무자	성폭력예방 홍보 포스터 「성폭력예방가이드」(중고등생용)	2013년	리플렛
86	여성가족부, 교육부	초중고/신고의무자	성폭력예방 홍보 포스터 「성폭력예방가이드」(초등고학년용)	2013년	리플렛

□ 가정폭력(총 47종)

연번	제목	대상	제목	개발년도	형식
1	여성가족부 & 한국양성 평등교육진흥원 & EBS	공공기관/일반국민	민감한 목격자	2016년	동영상
2	여성가족부 & 한국양성 평등교육진흥원 & EBS	공공기관/일반국민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모르는	2016년	동영상
3	여성가족부 & 한국양성 평등교육진흥원 & EBS	공공기관/일반국민	3명 중의 1명	2016년	동영상
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함께 만드는 사회-가정폭력예방(학교)	2015년	사이버교육
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함께 만드는 사회-가정폭력예방(공공기관)	2015년	사이버교육
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달콤살벌 부부 우리 부부가 변했다	2015년	동영상
7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달콤살벌 가족 우리 가족이 달라졌다	2015년	동영상
8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우리부부가 변했다. 우리가족이 변했다_영어	2015년	동영상
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훈육vs학대	2015년	동영상
1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가정폭력은 범죄다	2015년	동영상
1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2015년	동영상
1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공공기관/일반국민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하는 아동학대 예방요령	2016년	동영상
13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공공기관/일반국민 신고의무자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2016년	동영상
14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공공기관/일반국민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 홍보자료	2016년	동영상
15	러닝뱅크	공공기관/일반국민	가정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예방지침서	2016년	사이버교육
16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신고의무자	가정폭력 자기인식점검 「가정폭력인권의식교육」 - 법원·검찰직무용	2015년	교재
17	EBS	공공기관/일반국민	사랑이라는 이유로	2015년	동영상
18	성남여성의회전화	공공기관/일반국민	Blue House	2015년	동영상
19	성남여성의회전화	공공기관/일반국민	So What	2015년	동영상
20	성남여성의회전화	공공기관/일반국민	갈 길이 멀다	2015년	동영상
21	성남여성의회전화	공공기관/일반국민	왜 때려	2015년	동영상
22	성남여성의회전화	공공기관/일반국민	폭력의 이면	2015년	동영상
2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일까요?	2015	동영상
2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2015	동영상
2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2015	동영상
2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사랑의 매는 없다	2015	동영상
27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자녀에게 어떤 미래를 선물하시겠습니까?	20185	동영상
28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폭력을 멈추는 가장 쉬운 방법, Don't skip	2015	동영상
29	(주)러닝뱅크	공공기관/일반국민	가정폭력예방교육 「Stop! 가정폭력」	2015	사이버교육
3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공공기관/일반국민	꽃으로도 풀이로도 때리지 마라	2015	교재
3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아동학대 특례법 1주년, 그리고 두 살아이의 비극	2015	카드뉴스

연번	제목	대상	제목	개발년도	형식
3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폭력을 멈추는 가장 쉬운 방법, Don't skip	2015	카드뉴스
33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가정폭력 국민의식 개선 동영상 「관심」	2014	동영상
34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가족	2014	동영상
35	보건복지부	공공기관/일반국민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 할 아동학대 예방	2014	PPT
36	(주)러닝뱅크	공공기관/일반국민	가정폭력예방교육 - 「No More! 가정폭력!」	2014	사이버교육
37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나부터 시작하는 가정폭력예방교육	2014	사이버교육
38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	2014	사이버교육
39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안내 리플릿 「가정폭력 예방은 당신의 작은관심에서 시작됩니다」	2014	리플렛
40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가정폭력예방 홍보 국정만화 「가정폭력피해 이렇게 도움 받으세요」	2014	만화
41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가정폭력 예방교육 홍보 동영상	2013	동영상
42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2013년도 가정폭력예방교육 표준강의안 「No More! 가정폭력!」 - 공공기관(용)	2013	PPT
43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신고의무자	2013년도 가정폭력예방교육 표준강의안 「No More! 가정폭력!」 - 교사 및 청소년지도자(용)	2013	PPT
44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2013년도 가정폭력예방교육 표준강의안 「No More! 가정폭력!」-일반국민(용)	2013	PPT
4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가정폭력예방, 왜 중요한가	2013	사이버교육
46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신고의무자	가정폭력 예방지침 핸드북 「가정폭력! 아는 만큼 멈출 수 있어요」	2013	교재
47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신고의무자	가정폭력 현장대응 사례집 「더 이상 NO」	2013	교재

□ 통합교육(총 24종)

연번	제목	대상	내용	개발년도	형식
1	여성가족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EBS	공공기관/일반국민	전염병을 막는 방법	2016년	동영상
2	여성가족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CBS	공공기관/일반국민	독일인이 이야기하는 한국의 양성평등	2016년	동영상
3	여성가족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CBS	공공기관/일반국민	젊은 세대의 양성혐오를 읽는 몇가지 코드	2016년	동영상
4	여성가족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CBS	공공기관/일반국민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2016년	동영상
5	여성가족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CBS	공공기관/일반국민	아내는 제게 늘 걱정거리입니다	2016년	동영상
6	여성가족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CBS	공공기관/일반국민	엄마사람으로 용기있게 사는 법	2016년	동영상
7	여성가족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CBS	공공기관/일반국민	소녀에서 엄마로 살기까지	2016년	동영상
8	여성가족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CBS	공공기관/일반국민	기생충으로 본 남녀관계	2016년	동영상
9	서강대학교 성평등상담실	대학	성희롱 예방, 어~렵지 않아요	2016년	리플렛
10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CBS	공공기관/일반국민	폭력적인 시선에 굴하지 않고 괜찮은 여자로 사는법	2015	동영상
11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CBS	공공기관/일반국민	큰 물에서 놀아봐야 진짜 나를 만난다	2015	동영상
12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CBS	공공기관/일반국민	품위 있는 삶을 가로막는 것들	2015	동영상
13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CBS	공공기관/일반국민	평등채널 e 1편 '인간이라는 이유로'	2015	동영상
14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CBS	공공기관/일반국민	평등채널 e 2편 '누구라도 침묵하게 해서는 안된다'	2015	동영상
15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세상을 바꾸는 생각 그리고 행동	2014	동영상
16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세상을 바꾸는 생각 그리고 행동	2014	PPT
17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일반국민	폭력예방교육의 필요성과 의미	2014	사이버교육
18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일반국민	2013년도 통합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폭력예방의 통합적 이해」(총론 + 각론 -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 가정폭력)	2013	PPT
19	여성가족부	특수학교 공공기관/일반국민	장애 비장애 통합학급 성교육을 위한 교사용지도서 「함께 어울리는 탁 트인세상」	2013	교재
20	여성가족부	특수학교 공공기관/일반국민	장애 비장애 통합학급 성교육을 위한 부모, 교사지침서 「함께 어울리는 탁 트인세상」	2013	교재
21	여성가족부	특수학교	장애인 성 인권 교육 매뉴얼 - 지적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경도장애학생을 중심으로)	2013	교재
22	여성가족부	특수학교	장애인 성 인권 교육 매뉴얼 - 지적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중복장애학생을 중심으로)	2013	교재
23	여성가족부	초중고	초등학교 고학년용을 위한 성교육 워크북 「함께 어울리는 탁 트인세상」	2013	교재
24	여성가족부	초중고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핸드북(학습·교수안포함)	2013	교재

☞ 여성가족부 '교육정보'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korea/view/support/support02.jsp>) 추천콘텐츠 자료 다운로드 가능 (일부 콘텐츠 제외- 별도 표기)



□ 2017년 폭력예방교육 컨소시엄▪협력기관 현황

가정폭력상담소				
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이메일	소장
1	광명여성의전화 부설가정폭력상담소	02-2060-0245	kmwhl@hanmail.net	박은경
2	김포여성의전화 부설가정폭력상담소	031-986-0137	kpwhl@hanmail.net	최미란
3	성남여성의전화 부설가정폭력상담소	031)751-2050	snwhl@naver.com	신연숙
4	수원여성의전화통합상담소	031)232-7795	suwonhotline@daum.net	이지희
5	안양여성의전화 부설가정폭력상담소	031)442-5385	awhl96@hanmail.net	이소정
6	가톨릭여성상담소	031)415-0127	helpwoman@hanmail.net	김은량
8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031-459-1311	sunlst@hanmail.net	최영수
9	사)정해복지 부설하남행복가정상담소	031-794-4111	park2020257@hanmail.net	박희숙
10	여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031-885-7651	mee4736@hanmail.net	김미영
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부천시부 부설부천가정폭력상담소	032-667-2314	bucheonlaw@hanmail.net	박미애
12	(사)양평가정상담소	031-775-4983	yposos@hanmail.net	이미정
13	사)시흥여성의전화 부설가정폭력상담소	031-496-9390	shwhl@hanmail.net	안혜순
14	화성가정상담소	031-296-1055	family1075@hanmail.net	이영화
15	용인가정상담센터	031-282-1360	lianhwaa@naver.com	최연화
17	한국가정법률상담소수원지부 부설가정폭력상담소	031-243-4600	suwonlaw@daum.net	박윤선
18	사)시민참여복지회 부설안산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031-419-0202	cpwa1366@hanmail.net	유해선
19	이천가정성상담소	031-638-7200	gss2000@kg21.net	이영실
20	광주열린상담소	031-766-3395	kyw8130@naver.com	김영화
21	안산가정폭력상담소	031-486-4366	ansanwmc@hanmail.net	최은봉
22	(둘이하나)가정사랑훈련학교	031-391-4862	frend03@hanmail.net	신명화

23	한국가정법률상담소성남지부 부설성남가정폭력상담소	031-707-6661	legaac@hanmail.net	유향순
24	(용인)(사)해피패밀리가족상담센터	031-281-8891~3	happy-2008@hanmail.net csb5308@hanmail.net	조성복
25	(성남)굿패밀리상담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031-733-0675	goodf0819@hanmail.net	이봉의
26	안양YWCA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031-427-1366	ayywca1366@hanmail.net	조미영

성폭력 상담소				
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이메일	소장
1	(사)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여성폭력상담소	031)755-2526	withus3663@hanmail.net	정은자
2	군포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031)396-0236	kpsangdam@hanmail.net	김묵순
3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032-328-9711	bwhotline@hanmail.net	정종숙
4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032)655-1366	qhdk1997@naver.com	최종희
5	수원여성의전화통합상담소	031)232-7795	suwonhotline@daum.net	이지희
6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031)751-2050	snwhl@naver.com	오남정
7	안양여성의전화 부설성폭력상담소	031)442-5385	awhl96@hanmail.net	이소정
8	(사)사람과평화 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	031)281-1366	ywcccc@hanmail.net	김경숙
9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031-413-9410	anycounsel@hanmail.net	최승희
10	가톨릭여성상담소	031)415-0126	helpwoman@hanmail.net	김은랑
11	하남ywca부설성폭력상담소	031)796-1213	friends-1213@hanmail.net	한영애
12	평택성폭력상담소	031)618-1366	pt1366@hanmail.net	김정숙
13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031-676-1366	mh3131@hanmail.net	진민현
14	의왕행가래로 가정·성상담소	031-452-1311	sunlst@hanmail.net	최영수
15	(사)씨올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031)797-7031	ssialwomen@hanmail.net	류복연

□ 2017년 경기지역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현황

1	강님	(사)광명여성의전화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	강민준	국방부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3	강선희	경원사회복지회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4	강영화	법무법인정석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5	강현숙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6	고명진	EG평생교육원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7	고영미	안산시청,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8	고옥경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백양초등학교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9	고은채	수원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0	고정희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1	곽금	여성긴급전화1366경기센터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2	곽원	법무부 안양교도소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3	권선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강사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통합교육	경기도
14	권순현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5	권양순	본오중학교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6	권용주	안산시청, 안산 YWCA 여성과 성상담소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7	권학순	해당없음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8	김경모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 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9	김경숙	가르침과 배움의 협동조합 성장과비전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20	김경숙	연성대학교	양성평등교육	경기도
21	김경숙	사)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 소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2	김경아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3	김경애	안산시여성가족과	양성평등교육	경기도
24	김근국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안양교도소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5	김금남	사회복지법인 신애원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26	김동심	두레방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 시설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7	김명순	코리아성교육센터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8	김명진	사)행복터부설용인가정상담센터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9	김명희	한국여성의전화/김포여성의전화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30	김미경	(사)일하는여성아카데미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31	김미라	기아자동차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32	김미영	여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통합교육	경기도
33	김미옥	대야종합사회복지관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34	김미희	사)에코젠더평생교육원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35	김범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36	김보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37	김보성	안양여성의전화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38	김삼순	안양나눔여성회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39	김서현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40	김설희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양성평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41	김성룡	전 우정공무원교육원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42	김세연	군포탁틴내일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43	김소향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44	김수정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45	김수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화성시청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46	김수희	6군단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47	김순천	군포탁틴내일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48	김신현	전)병영생활전문상담관, 효예전문강사, 현)파주심리상담소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통합교육	경기도
49	김양순	남양주한마음가족상담소	성희롱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50	김영랑	(사)수원여성의전화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51	김영애	덕양가정상담센터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52	김영화	광주열린상담소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53	김용숙	송실대학교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54	김은경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55	김은랑	가톨릭여성상담소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56	김은선	성평등교육강사협동조합 '와'	양성평등교육	경기도
57	김은영	대야종합사회복지관 성교육체험관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58	김정녀	경기도교육청신성고등학교(퇴직)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59	김정숙	안양YMCA/비전리더십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60	김종호	해병대사령부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61	김주현	대원중학교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62	김지명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사회복지과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63	김지숙	평택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64	김지혜	국방여성정책연구소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65	김해수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66	김해정	안산여성노동자회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67	김현숙	부천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68	김현영	성평등교육센터 와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69	김현주	신리초등학교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70	김현택	국방부 해군 해병대2사단 포병연대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71	김효순	광명ywca부설성폭력상담소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72	김희지	장애인식개선센터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73	김희진	인권침해예방활동연구소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74	노영옥	행복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75	노유성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76	도은경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77	라길찬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수원구치소 사회복지과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78	류복연	(사)씨알여성회성폭력상담소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79	류선엽	국방부/5군단	성희롱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80	마소현	시민광장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81	문경은	소통과치유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통합교육	경기도
82	문수경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성평등교육	경기도
83	문숙남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84	문정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사)시흥여성의 전화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85	박경진	마음교육상담센터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86	박광신	재단법인 진실의 힘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87	박기혁	여성과장애인권익성장센터/의정 부장장애인성폭력상담소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통합교육	경기도
88	박미란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매매예방교육	경기도
89	박미애	한국인재양성연구소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90	박미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천지부 부설부천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91	박미옥	서울예술대학교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92	박병수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				
93	박사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별 영향분석평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94	박상희	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	양성평등교육	경기도
95	박선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굿네이버스(경기2본부)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96	박성석	의왕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양성평등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97	박순남	화성시맘톡톡성폭력상담소	양성평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98	박순향	국방대학교/국가인원위원회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99	박은경	광명여성의전화	양성평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00	박은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청 이천사동초등학교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01	박인경	한국심리상담연구소/수원여대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02	박재형	국방부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03	박제일	용인대학교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04	박찬웅	백석대학교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05	박창숙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06	박춘화	미래사회교육개발원(주)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107	박태연	한국심리상담센터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08	박현선	공군작전사령부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09	박현숙	안양YWCA꿈이있는집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10	박혜경	한국심리상담연구소, 한국작가회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11	박희숙	(사)정해복지부설하남행복한가정 상담소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12	박희화	젠더리더십트레이닝센터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13	배국자	인구보건복지협회	양성평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14	배서현	사)한국여성지도자연합부천시회부 설 새부천성폭력상담소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115	배순선	김포여성상담센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16	배윤화	(사)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17	배의숙	해병2사단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118	배진경	성남여성의전화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19	손경오	안산시청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교육	경기도
120	손명진	하남YWCA부설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21	손승연	용인대학교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22	손종미	(사단)사회복지심리사협회	양성평등교육	경기도
123	손지연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24	손효숙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125	송은영	수원여자대학교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26	송주연	이천가정·성상담소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27	신동순	한국미래정책연구원/수원시 여성발전위원회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128	신란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통합교육	경기도
129	신명화	21가정사랑훈련학교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30	신순희	수원여성의전화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31	신승철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수원남부경찰서 정보보안과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32	신연숙	성남여성의전화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33	신혜영	(사)정해복지부설하남행복한가정 상담소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34	심상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해솔학교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35	심은서	단국대학교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136	안명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37	안미영	경기남부경찰청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38	안필순	(사)부천,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39	양지원	하음심리상담센터 상담연구소	양성평등교육	경기도
140	양해경	사)사람과평화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41	엄정숙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 / 서원대학교	성매매예방교육	경기도
142	염미진	경기도교육청 성남여자고등학교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43	오선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법무부 수원비행예방센터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144	오성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고림고등학교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45	오애리	계명대학교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146	오종윤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47	오지혜	그루터기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48	우명순	젠더십향상교육원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통합교육	경기도
149	우영희	안양나눔여성회	양성평등교육	경기도
150	유선경	수성초등학교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51	유순옥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52	유영미	미래꿈하우스(여성가족부 특별지원 아동청소년보호시설)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53	유중원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청소년수련 관)	양성평등교육	경기도
154	유지윤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성매매예방교육	경기도
155	유향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부 부설 성남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56	유혜영	경기남부경찰청	양성평등교육	경기도
157	윤미라	안산 YWCA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58	이경미	7군단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59	이경복	명지대사회교육원 사회복지학과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60	이경은	성평등교육강사협동조합'와'	양성평등교육	경기도
161	이명옥	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양성평등교육	경기도
162	이미영	시민사회단체	양성평등교육	경기도
163	이미정	양평가정상담소	성희롱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64	이미혜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65	이상기	(사)국방여성정책연구소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66	이상협	수원탁틴내일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167	이상훈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68	이수연	성남여성의전화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69	이수현	씨알여성회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70	이슬기	행복뜰상담소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71	이승이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육군본부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72	이어연	사회보장정보원	양성평등교육	경기도
173	이영수	김포대학	양성평등교육	경기도
174	이옥희	누리마루여성센터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75	이은경	의정부지역사회교육협의회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76	이은미	성남여성의전화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77	이은숙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78	이은실	안양나눔여성회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79	이은희	두원공과대학교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80	이인숙	안산YWCA 여성과성상담소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81	이재은	여자라이프스쿨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182	이정구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83	이정자	행복가정상담센터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84	이정화	ACE에듀컴퍼니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85	이정희	성남여성의전화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86	이정희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87	이종욱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88	이지영	프리랜서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89	이지현	(사)부천여성노동자회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190	이진희	화성가정상담소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91	이향숙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92	이혜숙	안산시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교육	경기도
193	이홍희	국방부 근무지원단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94	이화용	여성기급전화1366서울센터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95	이화운	경기대사회과학연구소/여울림 성 인권강사 아카데미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96	이희연	경기도 군포시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97	임미영	(사)씨알여성희성폭력상담소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98	임미영	경기도파주문발초등학교	성인지인권통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199	임복희	씨알여성회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00	임소영	안산시청	양성평등교육	경기도
201	임수경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02	임아름	행가래로외왕가정성상담소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03	임연희	성매매피해자상담소'with us'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04	임정숙	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05	임정임	공군사관학교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206	임정희	(사)경원사회복지회 with us상담소	성매매예방교육	경기도
207	임지은	성희롱예방교육강사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208	임춘희	(사)수원여성의전화통합상담소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09	임태연	경기해바라기센터(아동)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10	임형태	KBS한국방송	양성평등교육	경기도
211	임혜진	휴고상담소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12	임호순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북부센터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13	장경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인구보건복지협회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통합교육	경기도
214	장수진	장수진 법률사무소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15	장정현	이레유치원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16	전명순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17	전보경	(사)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예방교육	경기도
218	전정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19	전준석	경찰청	양성평등교육	경기도
220	정기수	기아자동차	양성평등교육	경기도
221	정민규	한국지도자인재개발원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경기도
222	정선경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223	정순옥	사)시흥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24	정애숙	(사)안양여성의전화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25	정영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성희롱예방전문강사협회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26	정영주	군포탁틴내일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27	정용철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육군본부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28	정은자	(사)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29	정인숙	여성긴급전화1366경기북부센터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30	정종숙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31	정지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전교육지원청 이천중학교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32	정진경	경기도교육청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33	정현주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34	정혜정	꿈나무지역아동복지센터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35	정희연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36	정희정	의왕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양성평등교육	경기도
237	조미영	안양YWCA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38	조선희	국방부 공군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39	조성복	(사)해피패밀리 가족상담센터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40	조여옥	수원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241	조용연	국방부/대한남자간호사회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42	조현필	굿모닝산업보건센터(주)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243	주경심	의정부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44	차숙자	수원지방경찰청 안산지청 상담실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경기도
245	차애영	광명교육지원청	성매매예방교육	경기도
246	채옥희	하나여성회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47	천해리	남양주 가정과성상담소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통합교육	경기도

248	최달수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49	최병일	안양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50	최선희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51	최성화	전 민주노총 여성부장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252	최수진	(사)고양파주여성민우회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53	최연화	용인가정상담센터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54	최은봉	안산가정폭력상담소	성희롱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55	최은영	서울여대가족상담연구센터	양성평등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56	최종희	육군 교육사령부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통합교육	경기도
257	최지숙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용인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58	최현주	부천새시대여성회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259	최혜영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양성평등교육	경기도
260	한경순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61	한명은	행가래로 의왕가정성상담소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62	한미화	양주에쓰병원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63	한영애	하남YWCA부설성폭력상담소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64	한완수	한국성건강센터/서정대학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65	한유정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설봉초등학교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66	한지영	국립암센터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267	한희숙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청 송일초등학교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68	한희영	경기도교육청 덕정고등학교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69	허성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270	홍경남	안산시/수원여성의전화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71	홍우정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성희롱예방교육	경기도
272	홍인선	사단법인 에코젠더 /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양성평등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경기도
273	홍혜숙	양주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교육	경기도
274	황난숙	진안초등학교	가정폭력예방교육	경기도

□ 2017년 경기남부지역 폭력예방교육 일반강사 현황

1	김연실	굿패밀리상담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	팀장	경기남부
2	김옥련	나우보건연구소	강사	경기남부
3	김인애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일반강사	경기남부
4	박인숙	나우보건연구소	책임연구원	경기남부
5	배정미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일반강사	경기남부
6	신성순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일반강사	경기남부
7	안영미	(사)김포여성의전화	사무국장	경기남부
8	윤혜영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일반강사	경기남부
9	이나경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경기남부
10	이인성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일반강사	경기남부
11	임영옥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일반강사	경기남부
12	최미란	(사)김포여성의전화	소장	경기남부
13	최종희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소장	경기남부

전국 시·도 폭력예방교육 담당자

지역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서울	여성정책담당관	배성신	02-2133-5037
경기남부	가족여성담당관	조동준	031-8030-3115
경기북부	여성가족과	이화영	031-8008-4421
부산	여성가족담당관	이옥경	051-888-1522
대구	여성가족정책관	김연희	053-803-4031
인천	여성정책과	이종문	032-440-2759
광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김양미	062-613-2282
대전	여성가족청소년과	조성례	042-270-4672
울산	여성가족청소년과	심미숙	052-229-3483
강원	여성청소년가족과	이금순	033-249-2510
충북	여성정책관	조형숙	043-220-3934
충남	여성가족정책관	황은성	041-635-4986
전북	여성청소년과	문소영	063-280-2524
전남	여성가족정책관	성미숙	061-286-5951
경북	여성가족정책관	김미선	053-950-3950
경남	여성가족정책관	박순갑	055-211-2255
세종	여성가족과	이미경	044-300-3714
제주	여성가족정책과	신은재	064-710-2887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폭력예방교육과

TEL : 02-2100-6444

E-MAIL : yschoyou@korea.kr

전국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지역	교육기관	연락처	이메일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02-810-5040	2016thesafe01@seoulwomen.or.kr
경기남부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031-797-7188	thesafe02@naver.com
경기북부	에코젠더	031-952-8052	thesafe03@naver.com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051-330-3423	sunnypia@bwf.re.kr
대구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053-745-4508	thesafe05@naver.com
인천	한국심리협회 인천지부 부설 인천폭력예방교육 전문기관 하모니	032-861-2706	thesafe06@naver.com
광주	광주여성재단	062-670-0537	sumic@hanmail.net
대전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042-254-3039	thesafe08@naver.com
울산	울산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052-271-1318	thesafe09@naver.com
강원	속초여성인권센터 속초성폭력상담소	033-637-1980	2016thesafe10@naver.com
충북	충북 청소년성문화센터	043-258-8006	cbsay8001@naver.com
충남	천안YWCA	070-5015-4783	2016thesafe12@naver.com
전북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063-227-2044	thesafe13@naver.com
전남	전남여성플라자	061-260-7340	thesafe14@naver.com
경북	경상북도 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	054-858-7179	thesafe15@naver.com
경남	좋은삶가족복지상담연구소 부설 경남성교육센터	055-244-8884	thesafe16@naver.com
세종	세종YWCA 성인권상담센터	044-862-9193	thesafe17@naver.com
제주	제주 YWCA 통합상담소	064-748-3040	thesafe18@naver.com

폭력예방교육 중앙지원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부 폭력예방센터

TEL : 02-3156-6147,6146

E-MAIL : start@kigepe.or.kr



(사)씨올여성회에서 하는 일

씨올은 생명의 기본원리로 스스로 자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초월합니다.

씨올사상은 인간의 자주성을 짓밟는 모든 폭력에 저항하는 것으로 씨올여성회는 이러한 씨올사상을 이어받아 가부장제 사회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과 함께 합니다.

상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성매매와 관련된 전화, 면접상담 및 연계사업 - 성폭력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 성폭력 가해자 상담, 성인지 치료 성교육
교육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및 워크숍 - 성교육전문강사 양성교육 및 워크숍 - 성폭력예방교육(아동, 청소년, 장애인(시설), 학부모, 직장인, 노인, 다문화, 민간기업, 소상공인 등) - 여성의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을 위한 의식교육 - 한국어 교육 양성평등교육 한국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 - 부부교육, 자녀양육교육
소그룹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사례 워크숍 모임 - 성교육 전문강사 워크숍 모임 - 독서 토론반 모임 - 성교육 인형극 반 모임
연대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여성연대 활동 - 경기 여성연대 활동 -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활동 - 여성단체, 시민 단체들과의 교류 및 연대 활동 - 인권단체 및 외국인 노동자 센터들과 연대활동
여성 인권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 인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이슈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활동 - 여성정치 참여 및 의정 방청 활동 - 취업알선 및 연계
문화, 홍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올 여성회 소식지 발간(연2회) - 씨올여성회 안내장 발간

부설 기관

성폭력 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피해자 상담, 치료프로그램 및 법률, 의료적 지원, 쉼터연계 및 수사동행(경찰서, 검찰청, 병원, 법원 등) - 성폭력예방교육과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 성교육 인형극 전문강사 양성교육 -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과 성평등 확산 홍보 및 10곳 읍면동 찾아가는 지역캠페인 활동 - 폭력예방교육지역지원기관 운영 - 찾아가는 성폭력예방 성체험관 운영 - 찾아가는 성폭력예방 인형극 공연
이주여성 인권교육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상담, 가족상담, 치료프로그램 및 법률, 의료지원, 쉼터연계 및 동행 (경찰서, 검찰청, 병원, 법원, 출입국 사무소 등) - 한국어교육, 한국전통문화교육 및 체험, 외국문화이해교육 - 가족교육, 부부교육, 자녀양육교육, 가족캠프 등 - 다문화 자녀 공부방 운영 - 국적별 자조모임(월1회) - 국적별 문화 공연팀 운영(전통춤, 합창단, 의상쇼)

2017년 경기남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통합 워크숍 자료집

발 행 일 2017년 5월

발 행 인 유복연 소장

편 집 인 심고은 사업담당

발 행 처  (사)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기남부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12739)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29번길 13(순흥빌딩 3층)
씨알여성회 폭력예방교육사업팀

전 화 031)797-7188

F a x 031)797-7037

E - m a i l thesafe02@naver.com

홈페이지 www.ssialwomen.org

가정폭력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

2017년 경기남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통합 워크숍 자료집



(사)씨올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기남부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